《일당기사》 간행에 즈음하여 이 후작에 관한 소회를 김 군이 청하였으니, 의리상사양할 수 없어 몇 마디를 적는다. 내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897 년부터다. 1898·1903 년에 유람한 뒤 1904 년부터 경성에 머물렀고, 이어 대한제국 정부에고용되어 재무에 관여하였다. 1907 년 한일 신협약이 성립되자 궁정의 일을 맡아 그 뒤 7년간 한국에 머물렀으며, 자주 후작과 가까이할 기회를 얻어 그 인품을 추앙하게되었다. 나는 그를 깊이 흠모하였다. 내가 해외로 뜻을 두고 의관을 벗어 반도를 떠날때, 후작은 "평생 배운 바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후생이 이 마음을 알게 하라"라는 구절을 내게 주었다. 나는 이를 가슴에 새겼다. 이는 곧 후작 자신의 심사를 밝힌말이어서. 그를 떠올릴 때마다 이 구절이 되살아난다.

후작은 한일병합이라는 대사를 맡았다. 의혹이 분분한 가운데 서서 생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히 단행하였다.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참으로 한국 일류의 인물로서한일 양국의 역사에 길이 흔적을 남겼다. 그때의 처지는 메이지 유신기의 가쓰 가이슈에비길 만하되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비하면그 기개가 한층 높아 보인다. 그는 동방의 대국면이 한일이 한 집이 됨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를 학무 방면에서 발탁하여 총리로 추대한 것은 이토의 예지와 식견을 보여 준다.

국운이 기울던 세월에 여러 차례 생사를 넘나들었고, 자객의 난을 당했을 때 나는 그흥보를 듣자마자 즉시 저택으로 문안을 갔다. 상처가 심하여 숨이 막 끊어지려는 듯하였다. 범상한 사람이라면 회복을 바라기 어려웠겠으나, 후작의 강철 같은 의지와호걸다운 기개에 명의 기쿠치의 의술이 더해져 회생할 수 있었다. 그의 인격과 역량은하늘이 준 바에 더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더욱 단련된 것이었고, 남의 힘에 기대 출세한군인이나 관료들과는 격이 달랐다. 임종 직전 도쿄에 올라와 왕세자 전하의 저택에서관영기 남작과 함께 좌담하였는데, 그것이 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한일병합에 큰관련이 있던 송백이 세상을 떠나고, 곧이어 후작도 승천하셨다. 이토, 소네, 데라우치,하세가와의 제선배와 아카시 군도 모두 타계하였다. 당시의 소장파였던 우리 몇 사람,나 또한 헛된 웅지를 간직한 채 늙어 가니, 불과 이십 년을 되돌아보아도 회억의 정이더욱 절실하다.

"이는 『천자문』의 제 4 쪽이다." "주(珠)와 검(劍)." "이는 저자가 만 열아홉에 첫 탄일 의식을 맞아 써서 증정한 것이다." "'야광(夜光)'이라 일컬음." (의례적 한문 파편은 OCR 손상으로 번역 생략.) 또 다른 일본어 서문들은 이완용이 시대의 대세를 통찰해 병합에 담연히 조인하고, 이후 중추원 부의장으로 시정을 보좌했으며, 병중에 국화대수장을 받았고, 서거 1 주년에 김명수가 《일당기사》를 풍부하고 정확한 사료로 편찬했다고 적는다.

후작은 한때 조선사 편찬을 결심하여 초고를 모았으나 끝내 출판에는 이르지 못했다. 말년에는 추억을 삼아, 적어도 조선인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을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그것 또한 이루지 못하여, 만년은 적막 속에 흘렀다. 편자 김명수는 후작의 생질로서 날마다 출입하였고, 내각 시절 서기관 겸 총리 비서관으로 일을 도왔다. 나는 내각과 뒤이어 중추원에서 그의 동료였으므로, 그의 학문과 문필, 후작과의 친근, 전직상의 관련을 보아 이번 편찬의 적임자라고 믿으며 완전한 저작을 기대한다. 서거한 지 이미일 년, 이 거사로 후작의 생애를 세상에 소개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이는 외형의 경력일 뿐, 그 실질은 아는 이에게 맡겨야 한다. 붓을 거두며 조선과 더불어시작하여 마친 사람—그의 성격·학문·재간·공적·정의가 차례로 떠올라, 한 시대의 위인이었음을 새긴다.

고 이완용 후작에게서 나는 근대 대정치가의 전형을 보았다. 파란 속에서도 강의와불굴의 신념이 끝까지 침로를 바르게 했다. 정치가를 시험하는 것은 군중에 아부하거나속론에 영합하는 일이 아니라, 순풍이든 역풍이든 일관하여 최선이라 믿는 바를실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인정받고 데라우치 마사타케의신임을 얻었다. 일단 결심하면 비난과 압박은 일고의 가치도 없었다. 한일병합(1910)에 이르는 고심은 막말의 가쓰 가이슈를 방불케 한다. 병합에서의 공적은 국가적으로불후할 뿐 아니라, 2 천만 조선인을 어두운 정치에서 벗어나 황실의 일시동인한 인정속에 들게 한 인류적 위업이었다. 이씨 왕조 종언 뒤 통치의 난점을 생각하면 그의인격과 공업을 추모치 않을 수 없다. 인척이자 전 비서인 김명수가 70 년의 사업을충실히 기록하고 유문을 모아 《일당기사》로 엮었으니, 청을 받아 이 글을 적는다.

그는 구한국 명문 출신으로 일찍 정계에 들어 학부·외부 참정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이 되어 시정 개선에 힘썼다. 헤이그 사건에는 몸소 나서 처리했고, 대정 천황(당시 동궁)의 한국 제실 방문 때에는 극진히 영접과 경호에 힘썼으며, 이은 전하의 교육에도 마음을 기울였다. 메이지 43 년(1910) 병합이 시행되자 한국 대표로서 원만히 수행하고 그 뒤 시정의 익찬에 전념했다. 그의 정견을 반대한 자객의 습격이 몇 차례 있었으나 처음 뜻을 바꾸지 않았다. 1919 년 소요에도 민중의 취할 바를 굳건히 보였다. 만년에 명망이 높아 조선귀족회장이 되어 귀족을 이끌었다. 일상은 겸양·온화·온유·순정하여 선풍도골이 있었고, 편정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대국을 보며 정정당당히 주장했고, 특히 호매·과단하여 일단 확신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동양 제일류의 정치가로서 영풍의 진경을 보여 주었다.

나의 근무로 말하자면, 1906 년 통감부 서기관으로 처음 건너갔다. 3 월 이토가 경성에 들어와 개혁이 시작되었다. 나는 학제 개혁을 맡고, 미토 츄조는 교과서를 맡았으며, 학부대신은 이완용이었다. 당시 조선의 교육은 미숙하여 경성 밖에는 서당뿐이었고

선교 학교의 내용도 빈약했다. 일본 학제를 본떠 보통학교에 일본어 필수를 제안하자, 학부와 민중의 맹렬한 반대가 "국치"라며 일었다. 나는 조선인의 복리를 늘린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고, 격론 끝에 이완용 대신이 최종 결단을 내려 시행되었다. 그의 명지와 쇠 같은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뒤 기초가 확립되어 20 년 후 보통학교약 1,100 개가 깔렸고, 대학 건설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품성을 드러낸 두 순간이 더 있다. 첫째, 고종의 선양 때 총리 겸 궁내대신으로 궁중에 버티며 폭동과 위기 속에서 즉위 예식을 완수하고 지연을 막았다. 이토는 친히 중무장 호위 아래 궁에 들어가, 뒤에 그를 구출하여 가족과 상봉케 했다. 둘째, 병합에 관해 그는 세계 열강 속 조선의 형편을 보아 일본과의 병합만이 복지를 증진할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고, 사를 버리고 일신의 성패를 도외시한 채 결행했다. 이는 "대의를 위해 몸을 멸함"이었다. 이제 그가 없어 반도에 한 줄기 광명이 사라졌으니 통탄스럽다. 그래도 이 글을 권두에 삼가 올린다.

끝으로 평가의 말 한마디. 우리 동방 조선은 비록 작으나 인문의 맥이 끊이지 않았다. 현세의 대표적 인걸로 일당의 이완용 후작을 들 수 있으니, 그는 문필가이자 이재가이며 혁신 정치가였다. 세계와 동양의 큰 흐름을 읽고 사명을 위해 명예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바를 실행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의 결단의 스케일과 일관된 행보는 보통의 범주를 넘는다.

세간의 비방과 칭송은 지극히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후작에게 어떤 짐이될 까닭은 없다. 논의가 걸출한 인물에게 집중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기이함을 전하고이설을 떠도는 시류의 기호는 사실을 그르치고 허망한 것에 짖어 대거나, 심지어는 중상과 악평을 조작하여 즐기는 경향이 있어도, 식자에게는 추호도 값하지 않는다. 후작이 서거하신 뒤 우리는 여러 공적인 자리든 그 밖의 기회든 어쩐지 깊은 적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누구나 이 감정을 함께하는 듯하다. 후작이 조선의 위대한 대표적 인물이었음은, 이런 잠깐의 순간에도 늘 드러난다.

다이쇼 14 년(1925) 1 월, 당시 군 사령관 스즈키 대장, 정무총감 시타오카 씨, 후작 등과 함께 한 번의 아취 있는 연회를 가진 일이 있었다.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념의 서계를 써 주었다. 후작이 서거하신 날, 나는 향을 피우고 그 서계를 걸어 두고, 그 앞뒤로 후작이 주신 수많은 시문과 서화를 펼쳐 놓고 한동안 묵상 기도하였다. 후작의 글과 시타오카 씨의 글이 공교롭게도 위아래로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두 분 모두이제는 고인이시니 절로 창연해졌다.

시타오카 씨에게는 조선을 위하여 아직 이루어 주어야 할 일이 많았다. 다이쇼 14 년도 예산 편성과 행정 정리의 대강에 관해서는 내가 퇴관한 뒤에도 거듭 의견을 구해 왔고, 내 소견도 말했다. 그분의 두뇌는 명석하여 잘 결단하는 것이 경복할 만했다. 후작에게도 공사(公私) 양면에서 조선을 위하여 마무리해 주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생전, 특히 조선인을 위하여 적어도 몇 가지 일이라도 더 묶어 두고자 하셨으리라 짐작되니, 얼마나 유감이었겠는가. 할 일이 많은 자가 먼저 가고, 할 일이 없는 자가 허송세월하는 것이 세상이다—이는 결코 망자에게 치우친 평이 아니다.

내가 조선에서 보낸 십 수 년의 관료 생활 동안 정치인으로서의 후작과 직접 교섭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사인(私人)으로서, 또 문우로서 지난 십 년 간은 서로 친히 알았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서로 지극히 간단한 일본어나 조선어 외에는 통역에 의지해 말할 수밖에 없었고, 표정·태도·문필로 말 밖의 정조를 통하는 것이 고작이라 늘어딘가 모자람을 견디지 못했다. 후작이 이문회의 회두이기도 했으므로, 회우들은 그달 22 일 총독관저에서 추도 시회를 열었다. 총독 고수이의 원작에 "그대를 생각하나 뵙지 못하니 흰 구름 깊네, 다만 눈물 자국이 옷을 적실 뿐. 학의 등마저 하루아침 선화했으니, 이제는 낭랑한 음성을 듣기 어렵도다."라 하여, 나는 "이 문회의 뜻은 깊기만 한데, 다만 화려한 눈물이 옷을 적심을 볼 뿐. 남은 눈과 찬 안개, 봄 이월에, 낭산에서 길이 그 낭랑한 음성을 듣노라."고 차운하였다. 낭산은 후작의 묘지가 있는 곳이다. 후작은 시가에도 능하여, 이문회의 아회에서 술 서너 순이면 그 낭랑한 음성이들리곤 하였으니, 결구가 자연히 거기로 미쳤다.

다이쇼 9년(1920) 초겨울에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후작은 다음 시로 나를 위로하셨다. "인생 일세는 문득 뜬거품과 같고, 만사를 사량하면 봄꿈이 아득하네. 그대의 단절을 근심하지 말라, 고금을 다 씻어도 큰 강물은 흐르노라." "한밤중 그대의한 곡을 듣노니, 사아(紗綾) 속 마음은 더욱 처연하네. 달이 지고 산은 텅 비고, 사람은 적적해졌으니, 어느 곳이 황천이랴." 아, 어느 곳이 황천이랴. 영웅과 가인도 모두 한잔의 흙이 되나니, 나 또한 애련히 하늘 한쪽을 바라본다.

이제 인척이자 오래 비서관으로 모신 김명수 군이, 후작의 행장·일기·시문 및 기타 공사(公私)의 사실을 망라하여 《일당기사》를 편술하고, 나에게 그 감수를 청해 왔다. 전할 이는 조선 근대의 위인이고, 전하는 이는 그 위인에게 시종 친히 접한 비서관이다. 후작의 공사 양면의 면모가 역력히 살아나, 때로는 당년 기이한 정교(政交)와 서로 비취보고, 때로는 우국경세의 기상과 정밀한 사려, 영단의 국면이 당시의 예상을 앞섬을 보여 주기에 족하다. 이 책이 상자됨을 기뻐하며, 감히 추억을 곁들여 몇 말을 서두로 삼는다.

《일당기사 서문》 [주: 편자의 집필 방침 진술] 역사에는 기전체의 법이 있으니, 모두 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다. 생전과 사후의 언행·출처에 관해서는 그 상세를 다하려하여, 혹 누락되어 후인이 알지 못함을 두려워한다. 세상에 가장·비명 등의 글 또한 그하나다. 그러나 귀신을 아첨하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식자들이 비난하니, 나 또한취하지 않는다. 나와 일당후의 관계를 말하면, 친족으로는 생질이고, 벼슬로는 막료였다. 내가 귀후의 일생의 일을 귀목으로 본 것을 기록함은 본디 남에게 양보할바가 아니다. 후작이 서거한 뒤 유적을 주워 모아 후세에 전해야 할바를 맡는 것도사양할 수 없는 의리라 생각했다. 우매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후작 칠십 년간의 일을 한필로 요약하여 분류·편찬하여 한 책으로 이루고, 이름하여 《일당기사》라 한다. 글은비록 간략하나 일은 자세하고, 뜻은 보존하려 함이요 말은 아첨하지 않는다. 훗날의고증에 만분의 일이나 보탬이 있기를 바란다. 쇼와 2년 소춘 상완, 생질 김명수 삼가씀.

개국 504 년 을미 8월 20일 새벽, 궁중에 일이 일어나 후작은 잠시 경성 주재 미합중국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앞서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옥사가 있었을 때, 후작의 백씨가 경무사로서 그 일을 다스렸으므로, 대원군이 후작의 백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은 자연스러운 형세였다. 후작은 스스로 헤아려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않음을 보아 당분간 시국을 떠나 장차 올 형세를 관망하려 하였는데, 마침 그날 대원군이 궁중에 들어가 정사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곧 형제와 함께 미 공사관으로 피했다. 공사 알렌은 전에 후작이 사신으로 임명되어 그 나라에 주재하려 하던 때부터 막역했던 인연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후작은 각종 정령의 공포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당일, 칙명으로 내각이 구성되었다. 군부대신 안규수,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이범진, 경무사 이윤용. 23 일에는 특별한 성지로 상(上) 이품 안규수와 종(從) 이품 이완용을 징계(강등)하였고, 24 일에는 칙명으로 정일품 어윤중을 탁지부대신, 일품 박정양을 중추원 의장으로, 정이품 안규수와 종이품 이완용을 중추원 1 등 의관으로 임명하였다.

국상을 거행하였으나, 후작은 곡반(哭班)에 나아갈 수 없었고, 다만 밖에서 한없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10월 15일의 칙.

개국 504 년 8 월 20 일 묘시, 왕후 폐하께서 곤녕합에서 붕어하셨다. 어찌 애도하지 않겠는가. 빈전은 태원전으로 한다. 백관의 곡반소는 경유문 밖으로 한다. 조문하는 자는 곤녕합에 나아가 슬픔을 표할 것이다. 동궁과 동궁비궁에는 오늘부터 삼전의 인삼엽죽을 달여 바칠 것이다. 혼전은 문경전으로 삼는다. 오늘부터 상복을 갖추기 전까지는 별도로 입직부를 마련하여 입직케 한다. 총호사는 궁내부대신 이재면이 겸임한다. 22 일에는 대행왕후의 성복을 거행한다. 그 뒤로 이어진 정쟁은 생략하고, 다만 당일 사건의 전말만을 약록한다.

이때 이주회 등과 흥선대원군이 상호 체결한 전문:

- 1. 태공은 대군주를 보필하여 전적으로 궁중 사무의 정리에만 임하고, 일체 정사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경고문'의 취지에 따라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궁내부의 세력을 확장하여 국정에 침식하는 일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태공은 정부 관원의 인사와 모든 정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 2.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삼씨를 주로 삼고, 기타 개화파 인물을 등용하여 요로에 세워 정무에 전임케 한다. 고문관의 의견을 듣고 대군주의 재가를 거쳐 정사 개혁을 결행하여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 3. 이재면을 궁내대신으로, 김종한을 동협변으로 복직시켜 궁내부 사무를 맡긴다.
- 4. 이소용을 3 년간 일본에 유학시켜 재능을 기르게 하되, 매년 하계 귀성은 방해하지 않는다.

이 초안 성립 후, 당시 기쿠치 조후의 수기 요지:

민비 주위에는 총애를 받은 신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가장 사랑과 신임을 받은 정모는, 설령 대원군파가 궁중에 난입하더라도 민비의 신변은 염려할 바 없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장정의 한 무리가 건청궁에 다가서자, 민비는 창황하여 궁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난입자 가운데 한 조선인이 민비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평소 총애를 받던 환관과 궁녀들은 서로 앞다투어 달아났다. 늘 가까이 모시던 이학균마저 난입자에게 붙들려, 목숨을 보전하려 민비의 소재를 지시·인도하였다. 다만 궁내부대신 이경식만은 민비의 만일을 염려하여 미친 사람처럼 좌충우돌로 찾아다니다가 끝내 흉인(凶刃)에 순사하였고, 핏자국에 물든 민비의 시신은 석유를 끼얹어 불태워졌으니, 통탄할 일이다. 이 작전이 계책대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미우라 공사는 궁중에 들어가 정사를 대원군에게 위임할 것을 주청하였다 등등. [주: 이 대목은 당시 서술에 의거하며, 명칭과 사실관계는 사료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사건 전파로 민심이 들끓자, 대원군은 진정 포고를 내렸다. "근일 군소한 자들이 총명을 가리고 간인을 등용하니, 유신의 대업이 도중에 폐할 뻔하고 오백 년 공업이 하룻밤에 위태로울 지경이다. 종친의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차마 좌시할 수 없으니, 이제 입궐하여 대군주를 보필하고, 속히 무리를 쫓아내어 유신의 대업을 잇고, 오백 년의 종사를 받들어 백성을 편안케 하겠다. 너희들은 각기 집과 업에 편안히 있으라. 감히 경거망동하지 말라. 백성·병변 중에 나의 행사를 저지하는 자가 있으면 큰일이 있을 것이니 후회하지 말라." 개국 504 년 8 월.

폐후 조칙:

"임금으로 즉위한 지 32 년이 지났으나 교화가 미치지 못하였다. 왕후 민씨가 친당(親黨)에 의지하여 좌우에 배치하고 총명을 가로막으며, 백성을 해치고 정령을 어지럽혔으며, 관작을 매매하고 탐학이 지방에 퍼져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종사가 위태롭다. 극단임을 알면서도 벌하지 못한 것은, 비록 집(朕)의 총명이 미치지 못한 탓도 있으나, 그 당여를 고려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를 억제하고자 11 년 12 월에 종묘에 서약하여, 후일의 종친이 정사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민씨는 옛 악을고치지 않고 몰래 당여와 군소를 끌어들여 짐의 동정을 엿보고 국정대신의 인사를 막았으며, 짐의 군대를 해산하자고 말하고 짐의 뜻을 가장하여 난을 일으켰다. 일이나자 짐을 떠나 몸을 숨겼으니, 임오의 변을 답습한 것이다. 비록 찾아 구했으나 즉시나타나지 않았으니, 왕후의 덕이 없을 뿐 아니라 죄악이 이미 가득하다. 선왕의 종묘에 참여할 수 없으니, 부득이하여 옛 가례에 따라 왕후 민씨를 서인으로 폐한다."

11월 14일, 법부가 6건의 재판 선고에 관하여 주청하였다.

피고 박선·이주회·윤석우 등의 모반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로 심리한 결과, 금소시(內人)의 고발에 따르면: 피고 박선은 삭발하고 양복을 입어 일본인이라고 가장하였고, 거동이 수상하였으며, 개국 504 년 8 월 20 일 새벽 사건이 일어나 난도들이 갑자기 광화문으로 들어올 때, 연대장 홍계훈이 문을 막자 칼로 그의 팔을 쳤고, 곧바로 전각의 곤전에 이르러 간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차례로 낱낱이 진술하였다. 피고는 일체 부인하였으나, 내속 등 여러 사람이 목격하였고, 증인의 단언이 명백하였다.

피고 이주회는 금년 8월 20일 새벽 변란 시에 영추문으로 들어가 곧장 장안당에 이르러 동궁 전하와 동궁비 전하를 호위하여 즉시 퇴거시켰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초공에서는, 궁내에서 갑자기 포성이 일어남을 듣고 평상복으로 광화문으로 향했으나 단단히 폐쇄되어 있어, 방향을 바꾸어 영추문으로 들어갔더니 지키는 병정이 없고 적막하였으며 여러 문이 가로막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의 난의 작해(作爲)가 이처럼 허술하니 그 말이 이치에 멀다. 또한 재공에서는, 궁내 난입 중 진의문에 이르니 무감 십여 명이 난병에게 구축되어 포열 사이에 위급함을 보았고,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드니 그들이 '무감을 어느 곳에 풀어주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고 하였다 하니, 무리가 창궐한 때에 피고가 어찌 고작 한 번 손짓과 한마디로 그 흉도를 억제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동정을 따져보면 그 흉도와 결탁한 정적을 덮기 어렵고, 또 삼공에서는 흉도들이 피고의 호령을 달갑게 받아 해산하였다고 하니, 그 동심(同心)한 정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어 "이때는 나의 절명지추(絶命之秋)다"라고 자복하였다.

피고 윤석우는 금년 8월 20일 오전 4시, 대대장 이두황, 중대장 이범래 및 남만리의 야조 명령을 받아 병을 거느리고 동별영에서 태화궁으로 가서 지키고, 이어 춘생문으로 전진하여 강녕전 뜰에 이르러 병정을 각처에 배치하고 광화문과 건춘문을 순행했다고 하였다. 낙산 아래에 이르러 시신 한 구가 소각되는 것을 보고, 하사 이만성에게 물으니 '내인의 시신을 소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익일 궁중의 전설을 들으니, 당야 변란 때 곤성 폐하께서 피란할 겨를이 없었고, 또 궁녀 피해자가 없었다 하니, 낙산 아래의 화재는 아홉 아(疑)라 의심스럽다 하였다. 이에 대대장 우범선과 이두황에게 아뢰고, 그소각 잔해를 몰래 오운각 서봉 아래에 장사하였다 하였다. 피고가 당야 병을 거느리고 궁에 들어간 것은 장령을 받은 바였으나, 그 정적에 의심할 만한 점이 많고, 또 낙산 아래의 시체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충분히 묵회(默會)하였으면서, 지중무상의 존엄한 곳에서 경솔히 손을 대어 사사로이 옮겼으니, 스스로 큰 불경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상 피고 등의 소범 사실은 피고 각자의 진술과 금 소시의 고발을 대질하여 진술한 바와 이갑순·김명제·이민홍의 공술로 함께 증명되어 의심할 바가 없으므로, 모반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개국 505 년 4 월 18 일자(병초 6 일) 법부 주청:

피고 이희화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로 심리하였다. 피고는 개국 504 년 8 월 20 일 변란 시, 궁을 범한 자들과 동시에 직책 없이 곤녕합에 들어갔고, 변이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대군주 전하 앞에 사사로이 들어가 성단(聖斷)에 의하지 않은 조칙류를

초서하였다. 피고의 자백과 각 증거에 의해 명백하니, 당시 흉기를 들지는 않았으나 변을 꾸민 자들의 정을 알았다는 형적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어전 사입(擅入) 조문과 모반조 지정자(知情者) 조문을 대비하여 중한 모반조 지정자 조문으로 처단한다. 또한 각 피고는 8월 20일 역변 및 10월의 무옥에 관련되어 구금 심판 중이었으나, 대군주전하께서 친히 각 해당 공안을 열람하시고 관홍(寬弘)한 대덕으로 각 피고에게 중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시고, 법부에 명하여 서주보 등 10인에 대하여 대략 자신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셨다.

노관(露舘) 행재소의 명을 받들다:

후작은 미관(美館, 미국 공사관)에 피재하였으나, 뜻밖에 대군주 전하의 소명을 받고 경성 주재 러시아 공사관 내 행재소에 배알하였다. 때는 개국 505 년 2월 11일(음력을미 12일)이다. 후작은 창졸간에 시국을 피하여 미국 공사관으로 갔고, 잠시 기류한 뒤 멀리 미국으로 건너가려 하였으나, 국세를 관망하기 위하여 몇 달 동안 머물렀다. 하루는 그 공관에서 갑자기 소명이 있어, 연유를 모르고 백씨와 함께 배알하였다. 이때 시좌한 자는 전 농상공부대신 이범진 한 사람뿐이었다. 당일 신내각을 조직함에 있어, 전하께서 친히 성단하시어 대명을 내리셨고, 후작 역시 배명하였으니, 아래와 같다.

임관 조칙:

김병시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이재순을 궁내부대신으로, 박정양을 내부대신으로, 이완용을 외부대신으로, 조병직을 법부대신으로, 윤용구를 탁지부대신으로, 이윤용을 군부대신으로, 안사수를 경무사로 임한다. 내부대신 박정양은 총리대신과 궁내부대신 사무를 겸임하여 서리하고, 이재정은 탁지협판으로 서리한다. 외부대신 이완용은 학부대신 및 농상공부대신 사무를 겸임 서리한다. 군부대신 이윤용은 경무사를 겸임하되, 곧 겸임을 면한다. 후작과 제대신이 함께 입대하여, 각종 윤음(綸音)을 흠봉하고 거행하였다.

입대 시의 조칙:

12월 28일, 짐은 동궁과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 주어하였고, 왕태후와 동궁비는 경운궁으로 이거하였다.

토역(討逆) 후의 조칙:

"8월의 변은 만고에 없던 일이다. 차마 말하기 어렵다. 난역의 무리들이 명을 쥐고 오로지 자의적으로 날조하고 비방하여, 왕후 붕어의 조칙까지도 석 달이나 저지하는 데 이르렀다. 고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다행히 하늘이 토벌하여 거괴가 형에 처해졌고, 국례가 거행되어 국체가 간신히 보전되었다. 생각하면 골이 떨리고 입이 더듬어진다. 만약 천종(天宗)의 가호가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는가. 또한 역당에 물들어 허언을 퍼뜨리는 자가 한둘이 아니니, 겉은 양(陽)이나 마음은 음(陰)인 자를 누가 먼저 알겠는가. 더욱이 가가(家家)의 경계와 여상(礪霜)의 신계를 요한다. 너희 신서(臣庶)는 이 뜻을 알라." 이날 역괴 김홍집과 정병하는 법에 복하였다.

교조(矯詔) 소각의 조칙:

"8월 22일의 조칙과 10월 10일의 조칙은 역배가 가장한 것이므로, 모두소각(소멸)한다."

노관 임어(臨御)의 조칙:

"슬프도다! 군은 다만 민의 표준이다. 민이 군이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므로 인군의 일거일동은 반드시 민에게 명시함을 귀하게 여긴다. 엊그제 일을 차마 말하기 어렵지만, 역괴 난당의 흉모와 위계는 숨길 수 없다. 방알(防遏)·제복(制伏)이 혹 느슨할까 염려하여, 외국의 사례에 의거하여 잠시 권도를 써서, 동궁과 함께 대정동 러시아 공사 주관에 임어하고, 왕태후와 동궁비를 거느려 경운궁으로 가행하셨다. 유사에게 명하여 제범(諸犯)을 구납케 하고, 그 구속됨을 기다려 즉시 환어할 것이다. 무릇 범인이 구속될 때마다 우민이 폭동하여 급히 살해하니, 잔범이 모두 목숨을 도망한다. 군정이 점차로 분분히 흉용하여 그쳐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때에 노(露)가 주재한 곳 또한 뭇 사람에게 밝게 고할 수 없었다. 이제 궁정에 일이 없고 민심이 예와 같으니, 이는 노의 경행이다. 머지않아 환어할 것을 밝히니, 너희 서민들은 의혹을 풀고 업에 편안하라."

8월 사건 후 강원도 등 지방에서 복수를 위하여 의병이 봉기하였으므로, 특별히 최일·최도현에게 선논대원을 명하여 가서 선논케 하였다.

선논 조칙:

"아, 너희 대소 민인들아, 짐의 고(誥)를 잘 들으라. 이번 너희가 의를 일으킨 것이 어찌다른 뜻이 있겠는가. 다만 국가를 위하여 난적을 성토하겠다는 것뿐이다. 이는 너희의자연적 의성에서 나왔고, 또한 우리 조종의 배양·작성하신 은택에 힘입은 것이다. 스스로 행함에 허물이 없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본다면 또한 가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천도는 음란을 재앙하고 난신은 형벌에 처하며, 잔괴는 이미 도주하였다. 참으로하늘의 조종의 묵호에 의지하여, 국초(邦祚)가 만만년 길게 이어지고, 신인(神人)의분함을 시원스레 씻었으니, 어찌 경사롭지 않겠는가. 너희 민인들이 바깥 고을에 살아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믿지 못하여 아직 해산하지 않는 자가 있는까닭에, 내부에 칙하여 관원을 보내어 자세히 너희 민인들에게 알리게 하였다. 지금의시세 형편을 알고, 짐의 고충을 살피며, 곧바로 서로 거느리고 퇴거하여 옛 업에 편안하라. 조정은 인의의 도로써 너희 민인들에게 요구하니, 너희는 마땅히 기꺼이 이말을 들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머뭇거리며 의병의 초심을 변치 않고, 감히 약탈의패습을 행한다면, 이것이 너희 절명의 가을이다. 왕사가 향하는 곳에는 마땅히 관용이없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화가 자신의 몸에 있음과 같음을 생각하고, 군부(君父)의근심을 남기지 말라."

후작은 외부대신을 배수하고, 익일 2월 12일 경성 주재 일본 공사 오무라를 일본 공사관에서 방문하였다.

후작의 백씨가 염려하며 말하였다. "목하 형세가 불온한 때에 방심하고 일본 공사를 찾는 것은 가할 수 없다." 후작이 말하였다. "나는 털끝만치도 일본 공사를 꺼릴 점이 없다. 바로 시사의 여하를 좌우할 긴급 안건에 대하여 상의할 이유가 있어, 나의 행차는 결연히 지체할 수 없다." 마침내 갔다.

근일 내가 백씨에게, 그때 후작이 일본 공관으로 급행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때 일본 공관에서 돌아와, 이튿날 러시아가 모 지역 철도 부설권을 요구하였고, 우리쪽은 이를 거절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일본 공관 왕래가 이를 협의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건이 있었는지는 확지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소명을 받고 러관으로 가서 후작이 외상을 배명하였을 때의 물의를 들어보면, 노사(露使)가 마음속으로 바란 바는 그 요구 건에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러시아 교련사 연빙(延聘)의 부인:

경성 주재 러시아 공사는 조선의 군제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국 교련사를 초빙하려 하였으나, 후작은 이를 부인하였다.

백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주경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군부대신 서리 심상훈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조선의 무예를 개정하여 순전한 러시아식으로 교련하려는 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를 가부 결정을 위하여 임시 심사회를 설치하여 각대신으로 하여금 회의케 하고, 각 심사서를 모으게 하였다. 당시 나는 농상공부대신으로 재임하여, 정부에 심사서를 제출하여, 이 문제는 전면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요청한 교관수를 4 분의 1 감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불합으로, 맡은 직을 사임하였다.

백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후작의 의견은 지금도 기억하는 바이다. "현 국세를 미루어 짐작하건대, 얼마 안 되어 일·러 간에 풍운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이는 예로부터 마음속에 두려워하던 바이다. 오늘 우리 군제에 러시아식을 쓰게 되면, 후일 동양 형세에 큰 관계를 낳을 것이니, 이를 멀리하여야 한다. 하물며 지금 내가 외상의 직에 있으니, 차라리 몸을 국외로 물려도 이 안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러시아 공사에게 부인 답문을 발한 뒤, 몇 달 안 되어 외상을 그만두었다.

러시아 공사의 조회(번역) 제 26 호:

"본 대臣은 군부대신 서리 심상훈에게 제출된 바, 조선 군병 정리를 위하여 외국 교련사관 등을 청구하는 건이 이미 조선정부의 회의를 거쳐 본 대臣에게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러시아 교련사관 3 원, 판임 교련사 10 원, 연소학도학교 교사 1 원, 합계 14 명의 교련사 외에, 군기창 기관(기술) 사관 1 원, 악사(지휘) 1 원, 기공 3 원, 보좌 의원 3 원을 청구한 것을 열람하였다. 본 대臣도 조선 군병안을 개정하고 무예를 훈련하는 데 긴요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상기 청구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 조선을 원조할 것을 구하고자 하니, 함께 서식을 갖추어 조회한다. 귀 대臣은 조회하신 뒤 군부대신 서리에게 전조회해 주시기 바란다."

외부대신 이각하의 조복(照覆) 제 19 호:

"귀 관에서 4월 25일자 조회를 접수하였다. 조선 군병 정리를 위한 외국 교련사관 청구 건은 이미 우리 정부의 회의를 거쳐 본 대臣에게 제출되었고, 러시아 교련사관

3 원, 판임 10 원, 연소학도학교 교사 1 원, 합계 14 명의 교련사 외에, 군기창 기관 사관 1 원, 악사 1 원, 기공 3 원, 보좌 의원 3 원을 청구한 것을 열람하였다. 본 대臣도 조선의 군병안을 개정하고 무예를 훈련하는 데 긴요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상기 청구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본 건에 관하여 조선을 원조할 것을 구하고자 하니, 함께 서식을 갖추어 조복한다. 귀 대臣은 조회하신 뒤 군부대신 서리에게 전조회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준찰하건대, 각 외국과 관련된 일체의 교섭 안건은 예컨대 본 부에서 전지하여 각 공사관에 조회하는 것이 종래의 응행 규정이다. 이번에 우리 군부가 본 대臣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회를 진행한 것은 이미 공격(公格)이 아니다. 또한 귀 공사관도 공에 의거하여 본 대臣에게 정식 통지한 바가 아니다. 이에 서식을 갖추어 조복하니, 귀 공사께서 준찰하시기 바란다."

당시 각 대신의 심사 보고서(발췌):

"군부대신 서리의 러시아 교련사 연빙 건에 관하여 심사한 바: 러시아 교련사관을 고용하여 군인을 교육함으로써 실효를 속성(速成)하려 함이나, 일에는 완급이 있으니 졸렬하면 중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 수량을 살피니, 육군 보병 하사 97명, 보병 사관 18 명이라. 현금 국계가 불여의(不如意)한 상태라 봉비도 내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과 중 이미 교련한 인원이 30 여 명이니. 현재의 병졸을 이들로 충분히 교련할 수 있다. 따라서 연빙은 잠정 중지하고 추후 다시 의논함이 가장 편의에 맞을 것이다. 또 포대 소속 사무관 1명, 대포 화공 6명, 포방화 2명, 포대 편집 등 속 사무관 1명, 대포 견마 공인 4 명이라. 포대의 일은 지금 재정이 곤궁하여 실로 창의하기 어려우니, 추후 다시 시행함이 매우 온당하다. 포대 사무관이 부적합하면 '교사'라 칭하여 포공 사관 1 명과 하사 1 명을 채용함으로 족할 것이며, 대포 화공 6 명과 포방화 2 명은 과다하니, 대포 화공은 2명 전용으로 하고 견마 공 4명 역시 많으니 2명을 채용한다. 또 살피건대, 기병대 편집 사관 1 명과 하사 4 명도 많으니, 기병 사관 1 명과 하사 1 명만 채용한다. 기계창 장반(掌辦) 별택관 1 명은, 본창에 1 명이 없을 수 없으나 '사무 장반'이라 칭하지 말고 '기계 교사'만 채용한다. 치匠 및 안匠 2명, 기타 별임 치匠, 보좌 의사, 안匠 3명, 기타 각종 별무 하사 4명 등, 이들 공匠도 필요하지만 수가 지나치니 전부 채용하기 어렵다. 장공(匠工) 고용은 임명칭호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업에 장애가 있으므로, 치匠 2명, 안匠 2명, 복장 제조 봉공 2명, 구두공을 채용하여 우리 군인으로 하여금 각기 그 기예를 익히게 하라. 살피건대, 판임 사관학교 교장 1명. 연소학도 및 상임 사관학교 교장 1명, 교련 수사 1명에 관하여는, 군제의 정련함과 군율의 엄명함은 장재(將材)에 말미암으니, 사관 양성은 참으로 급선무에 속한다. 우리 사관을 성취한 후에는 우리 사…"

관리를 써서 우리 병졸을 훈련시키면 그 효과는 보통이 아닐 것이다. 소견을 말하자면, '상임' 장교 교사 1 인을 2 인으로, '하임' 장교 교사 1 인을 2 인으로 증원하고, 직명을 교장이라 하지 말고 '교사'라 할 것. 영관 1 인과 부관 1 인은 현재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채용할 필요가 없다. 수의사(首醫師) 1 인·의사 1 인·보좌의사 4 명은

필요하지만, '수의사'라 하지 말고 의사 1 인과 보좌의사 1 인만 채용할 것. 악장 1 인과 취고(취타) 3 인은 감축하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청의서에 실린 인원은 160 명이나, 내가 방금 열거한 인원은 27 명이다. 수량을 비교하면 4 분의 1을 넘게 줄이더라도 각종 교련 사무는 구비될 수 있다. 봉비를 적게 들이고 교육을 이룰 수 있으니, 양득이라 하겠다. 위 증감 인원 총수를 별지로 첨부하니, 거듭 심정(審定)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로써 보고한다.

건양 2 년 4 월 25 일.

의정부 찬정 겸 농상공부대신 이윤용.

의정부 참정 겸 내부대신 남정철 각하.

(별지)

연소학도 및 상임 사관학교 교사 2 인, 하임 사관학교 교사 2 인, 기병 장교 교사, 하사 교사, 치장(공장), 안장장이, 제화공, 포병 장교 교사, 포병 하사 교사, 기계창 교사, 대포 교사, 대포 견마 공인, 교련 교사, 보좌 의사 교사, 약장, 취타(취고). [주: 별지 목록은 OCR 난독으로 항목·수량 표기가 일부 파손되어 있음.]

한일병합사에서 본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론.

러시아의 목적은 조선에서의 정치적 세력을 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빼앗아 자기 손에 넣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인의 해용(解傭)과 함께, 일본식 군제를 버리고 러시아식으로 군대를 훈련할 것을 조선정부에 권고하였다.

협상이 성립된 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러시아 장교 3명·하사 10명·군의 1명을 육군 교관으로 조선정부에 고용케 하였고, 익년 4월에 이르러 러시아 공사 웨베르는 러시아 장교 28명·하사 95명 및 기타 37명, 도합 160명의 고용을 더욱 제의하여 한국 조정을 압박하였다. 조정이 아직 결답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러시아 장교 3명과 하사 10명은 7월 하순 벌써 경성에 도착하였다. 이윽고 공사가 교체되어, 웨베르는 면직되고 슈페어가 대신하였다. 슈페어의 공으로, 조정은 위 러시아 장교 및 하사 13명을 임기 3년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왕실 친위대 5대대는 전적으로 러시아군인에 의해 훈련되었고, 모스크바 의정서 제 2조의 대취지는 거의 유린됨에 이르렀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 장교 고용 문제를 러시아 정부에 문의하였으나, 도쿄 주재 러시아 공사 로젠의 전문에 의거하여 문제가 즉시 낙착되었다.

한일협상조약에 대하여.

광무 9 년 11 월 17 일, 한일협상조약 문제로 어전회의와 정부 회석에 전후 참석하였는데, 서로 분쟁이 있었고, 마침내 성안이 귀결되자 물의가 등등해졌으므로, 당시 수의(收議)의 전말을 개진하여 변명한 바가 있었다.

개략은 이러하다. 일본국 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내경하였을 때, 아동과 주발(走卒)까지도 반드시 일대 사건이 있으리라 알았다. 과연 11 월 15 일 재차 배견 후 비상사안을 제출하자, 폐하는 곧바로 재단하지 않고 정부에 위임하셨다.

익일 16일, 의정부 참정 한규석,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신중현·김근택·이완용 등이 대사의 국청(國請)에 따라 해당 관저에 집회하고, 경리원 경 심상훈도 좌중에 있었다. 이재순은 영사청의 국청에 따라 홀로 그 관저에 갔다. 모두 전일 제출된 건에 관해 거듭 문답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밤이 되어 파귀하였다. 소명을 받아 배대하여, 그 문답한 바를 상세히 아뢰고, 또 내일 일관에 가서 회견할 것이며, 만일 그들의 요구가 오늘의 담과 같으면 오늘의 답변과 같이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아뢰고, 퇴출하였다.

17 일 오전, 우리 여덟 사람이 한꺼번에 일관(日舘)에 모였더니, 과연 같은 안건이었고 다툼이 한둘이 아니었다. 신중현이 말하기를, 만약 대사가 폐하께 아뢰고, 또 공사가 외부에 조회하더라도, 우리는 외부에서 정부에 제의한 문건조차 접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결정을 바로 시행할 수 없고, 또 중추원의 신규칙에 의하면 그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본 측은 말하였다. "귀국은 본래 전제정치다. 입헌의 모범을 본떠 대중의 뜻을 수렴한다고 하나, 대황제의 무한한 군권으로 한마디에 친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번연히 더딜 수 없다. 이미 궁내대신에게 전보하여 즉시 배견을 청해 두었다. 제대신들은 궁중으로 들어가라." 이로써 우리가 만단으로 거절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아. 부득이 먼저 정부 내 대기소로 가서 기다렸다. 일본 측이 관원을 거느리고 뒤이어 휴게소로 왔다. 잠시 후 우리가 입대하여 경과를 상주하니, 성짐이 번민하시어 장차어떻게 처치할지 누차 문의하셨다. 우리는 다만 단연 허락할 수 없다고만 답하였다. 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무 강경하지 말고 완화하라." 이에 내가 아뢰었다. "이는 나라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폐하의 전에 북면하는 자로서 감히 허락하자고 누가말하겠습니까. 신하는 군과 자부(父子)와 같으니, 회포가 있으면 숨김없이 진달해야합니다. 대사가 래빙한 것은 전적으로 이를 위해서요, 공사가 대기하는 것도 또한 이를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의 귀착은 이미 미간에 박두하였습니다. 군신 간 상하의문답을 '불가' 두 글자로 한마디에 덮을 수 있으나, 일을 세세히 논하면 타당함이 없지는 않으되, 이는 다만 형식상으로 논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덟 사람이 이를방색(防塞)하는 것은 쉬우나, 오늘 사자로 하여금 폐하를 뵙기를 청합니다. 만일 성심이확연히 '불가'하시다면 국사에 참으로 만행이겠으나, 만에 하나 관홍의 양량으로 용허가불가피하게 이른다면 어찌하오리까. 이러한 점은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폐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고, 여러 대신들도 함묵하였다.

내가 다시 아뢰었다. "신이 미리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옵고, 만일 용허가 부득이한 지경에 이르면, 조문 중에 증감 개정해야 할 대관계 사안이 있으니, 미리 잘 상량하여 장에 임하여 구차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교: "이토도 또한 이 약정 중 어떤 구절을 가감할 일은 반드시 협상할 도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전부 거절하면 이웃의의(隣誼)를 보전하지 못할까 두렵다." 이로써 미루어 생각할 때, 조문 내 구절을 변동하는 것은 그의 희망이 없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학부대신의 소는 매우 당연하다.

신중현이 아뢰었다. "지금 학부대신의 소는,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고 아뢴 것이 아니라, 요컨대 가설의 의문을 만들어 여유 있는 준비를 하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성교: "이는 모두 의정의 상례이니 지장이 없다." 이때 여러 대신의 소는 대략 신중현의 말과 같았다.

성교: "그 약장 초고는 어디 있느냐. 특히 무엇을 고치려 하는가." 이하영이 품속에서 일본 측이 준 약장을 꺼내어 좌중에 봉진하였다.

내가 아뢰었다. "신의 우견으로는, 제 3 조의 '통감' 아래에 '외교' 두 글자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장차 무궁한 번을 낳을 것입니다. 또 외교권의 분배는 조만간 우리 국력의 충실을 기다려 환환(還還)될 것이니, 지금 경홀히 연한을 정할 바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호하게 간과할 바도 아닙니다."

성교: "옳다. 또 고쳐야 할 곳이 있다. 표제 중의 '전연 자행' 네 글자는 마땅히 삭제해야 한다."

신중현이 아뢰었다. "제가 외부에 있으면서 일본 천황의 친서 부본을 보았는데,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조금도 손상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약관은 양국에 크게 관련되는데, 이에 미치는 한 구절도 없으니, 만일 부득이 가감함에 이른다면 특별히 한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교: "과연 그러하다. 농부대신의 말이 참으로 좋다."

이에 여러 대신 가운데 성교를 지당하다고 하는 자도 있고, 완용의 의에 찬성하는 자도 있고, 중현의 의에 찬성하는 자도 있고, 이를 아울러 찬성하는 자도 있었다. 좌상(筵上)의 주진이 끝나려 할 즈음, 우리 여덟 사람이 함께 아뢰었다. "이상 아뢴 바는 실로 준비를 강구할 따름이니, 우리가 물러나 일관에서 상대할 때는 '불가' 두 글자로 대답할 것입니다."

성교: "과감히 이제 이미 지시하였으니 그에 따라 조치하라."

한규석과 박제순이 아뢰었다. "우리가 수석으로서 주임이나, 감히 성교를 받들기 어렵습니다." 이에 여덟 사람이 함께 퇴출하였다. 한규석과 이재순은 다시 명에 따라 환입하고, 비밀 조어를 받들어 함께 휴게소로 갔다. 일본 측이 물었다. "어전회의는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한규석이 답했다. "황제 폐하께서 '협상 판(辦)'으로 내려주셨으나, 우리 여덟 사람은 모두 '불가'로 아뢰었습니다."

공사가 말했다. "귀국은 전제국이다. 황상 폐하의 대권으로 '협상 판'이 있으면, 나는 이것이 순성될 것을 안다. 그런데 제대신들은 정부의 책임을 피하고 한두 구령으로 군명(君命)을 거역하는 것을 주로 삼는가. 이런 대신은 결코 묘당 위에 둘 자가 아니다. 정사를 깊이 해치는 자는 파면함이 가장 적당하다."

한규석이 일어나 말했다. "공사가 이미 이 같은 말을 하니, 내가 안정하고 좌석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여러 대신이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공사의 말로 정사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일이 만만히 평온치 않다." 한규석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이토가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함께 달려오고, 헌병사령관과 군사령부 부관도 따랐다.

일본 측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대사는 궁내대신 이재극으로 하여금 배견을 주청케 하였는데, 이재극이 성지를 회전하여, "이미 제대신들에게 '협상 판'하라는 허락이 있었고, 지금은 인후를 앓아 접견할 수 없으니, 잘 협상하라"고 하셨다고 전하였다. 이재극이 또한 정이하 각 대신에게 이 성지를 전했다.

대사는 이에 의정에게 개의를 청하고, 여러 대신에게 각기 의견을 진술하라고 하였다. 먼저 의정에게 말하기를, "여러 대신은 다만 어전회의의 경과만 서술하라"고 하였다.

한규석이 말하였다. "나는 다만 '부(否)' 자로 상주하였다."

대사가 물었다. "왜 '부'라고 말하였는가. 설명이 없을 수 없다."

한규석이 말하였다. "설명할 것이 없다. 다만 '불가'일 뿐이다."

대사가 외부대신에게 물었다.

이재순이 답하였다. "이는 명령이 아니라 교섭이니, '가부'의 논의가 없을 수 없다. 내가지금 외부를 맡고 있는데, 외교의 이거(移去)를 감히 '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사가 말하였다. "이미 '협상 판'하라는 성지가 있었으니, 이는 명령이 아닌가. 외부대신은 '가'의 측이다."

민영기에게 물었다.

민영기가 답하였다. "나는 '부'다."

"절대적으로 '부'인가?"

"그렇다."

대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탁지대신은 '부'의 측이다."

이하영에게 물었다.

그가 답하였다. "지금 세계 대세와 동양 형세, 그리고 대사가 여기에 온 뜻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귀국이 이러한 간섭을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바이다. 그러나 작년에 성립한 의정서와 협정서가 있는데, 이제 또 외교권을 이거하려는가. 우리나라에 큰 관련이 있으므로, 승낙하지 않는다."

대사가 말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대세와 형세를 안다—이는 '가'의 측이다."

나 이완용에게 물었다.

나는 답하였다. "이미 '협상 판'하라는 성지가 있었으니, 이 안의 귀착은 이미 판단되셨다." 그리고 좌상에서 아뢰었던 바, 이러이러한 것만을 진달하였고, '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사가 말하였다. "고칠 바를 고치면 그만이다. 이것도 '가'의 측이다."

신중현에게 물었다.

그가 답하였다. "좌상 때 학부대신에게 동의하였고, 다만 특별히 논한 바가 있으니, 이는 황실 존엄 안녕의 구어(句語)이다. 그런데 '가부' 두 글자 사이에는 충역이 판가름되므로. 정부의 수의 자리에서는 한 '부'로써 단정하였다."

대사가 말하였다. "황실 존엄 안녕 등의 글자는 반드시 첨입해야 할 구어다. 그러니이것도 '가'의 측이다."

김근택에게 물었다.

그가 답하였다. "좌상에서 학부대신에게 동의하였고, 수의 자리에서는 충역의 분으로 말하였으며, 한마디로 농상대신과 같다."

대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역시 '가'의 측이다."

이지용에게 물었다.

그가 답하였다. "좌상에서 또한 학부대신에게 동의하였다. 또 내가 지난 봄 하야시 공사와 의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조목 중에 독립 공고·황실 안녕·강토 보전 등을 명기하였으니, 더는 이 안에 대해 '가부'를 물을 바가 아니다."

대사가 말하였다. "이 역시 '가'의 측이다." 그리고 이재극으로 하여금 전주케 하기를, "이미 '협상 판'의 성지를 받았으므로, 각 대신에게 물어보니 논하는 바가 같지 않으나, 실제를 궁구하면 '부'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중 순전히 '부'라고 한 자는 오직 의정과 탁지대신 둘뿐이니, 주무대신에게 성지를 내려 속히 조인케 하라."

이때 한규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었다.

대사가 이를 제지하며 말했다. "울 필요는 없다."

잠시 후 이재극이 성지를 회전하여 전하였다. "협상에 관계한 것이니 더 번거롭게 하지말라." 또 이하영에게 전지하여, "약관 중 증감할 곳은 법부대신이 대사 및 공사와 교섭하여 귀정하라"고 하셨다. 이때 여러 대신 가운데 오직 한규석과 이재순만이묵묵하였고, 이지용·신중현·이완용·김근택·민영기·이하영 등은 모두 자구 증감에 관해

변론하였다. 이때 한규석은 몸을 피하려 하여 관조차 쓰지 않고 급히 밀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외인에게 들켜 다시 돌아왔다. 피차의 분의가 조금 정리되자, 대사가 친히 붓을 들어 우리가 말한 바에 따라 약고를 수정하여 다시 어람에 올려 비췌(洞燭)를 받았다. 장차 "우리나라가 보통 강성해진 뒤에는 이 약정이 무효에 돌아간다"는 구절을 더하라는 성지가 전해졌고, 대사가 또 친히 붓을 들어 이를 첨기하였다. 다시 어람을 거쳐 마침내 조인에 이르렀다. 당좌의 사실은 다만 이것뿐이다. 우리가 정부에 있으면서 나라의 손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막지 못한 것은. 신분으로 헤아리면 어찌 감히 자해(自解)하겠는가. 그러나 탄핵하는 자들은 그 약의 이면도 묻지 않고. 당야의 정황도 알지 못하며, 다만 우리를 '매국적'이라 하고 '오국적'이라 하니, 이는 큰 그르침이다. 만약 그 죄를 정부에 돌리고자 한다면, 여덟 사람이 모두 그 책임이 있거늘, 어찌하여 다섯 사람에게만 이를 지우려 하는가. 한규석을 말하자면, 수반에 있어 과연 지주(砥柱)의 기망과 보천(補天)의 수단이 있었다면. 설령 한 몸일지라도 몸을 던져 홀로 맞서 밤을 지새우며 굳게 지키고, 백반으로 이를 저지했을 터이니, 반드시 그 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좌상 때에는 상재(上裁)를 청하였고, 외사와 문답할 때에는 '협상 판' 네 글자로 성지를 내세워. 전제(專制)를 빌려 여러 대신의 천언만어를 모두 무력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빈말로 '불가'를 칭하고, 혹 울고 혹 피하려 하여, 오로지 명예를 낚을 계책을 힘썼다. 대의가 이미 결정됨에도, 약고를 비쇄하고 인신을 물릴 수 없었다. 이는 우리 다섯 사람과 더불어 논할 바가 아니다. 또 외사가 물러가 뒤. 정부로 돌아가 성규(成規)에 따르지 않고, 홀로 자초(自草)하여 장(章)을 지어 우리 죄를 말하였으니, 그 본심을 궁구하면 스스로 죄를 면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 무릇 한규석의 실을 논하면, 결코 우리 다섯 사람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밖에 '불가'를 말한 대신들도, 처음에는 '불가'를 말했어도, 뒤에는 자구 수정에 진력하였으니, 이것 또한 우리 다섯 사람과 같은 수고일 뿐이라 경중의 차이는 없다. 어찌하여 다섯 사람만을 들어 무실의 죄명을 덧씌워, 우리를 하늘 아래에 설 곳 없게 하는가. 우리 다섯의 생명은 스스로 불쌍히 여길 겨를이 없지만, 당당한 제국의 허다한 민중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해득·분석하는 자가 없고, 한 마리 개 그림자에 만 마리 개가 짖어댐과 같이 시끄럽기가 그칠 줄 모름을 생각하면, 어찌 한기가 들지 않겠는가. 또 탄핵의 장초에는 확감할 증거가 없으니, 그들이 과연 무엇을 증거로 삼는가. 허공에서 사람을 사죄(死罪)에 몰면, 스스로 율을 거스름에 이르니, 실로 조종의 구전(舊典)과도 같다.

위 조목은 폐하께서 깊이 통찰하실 바일 것이므로, 특별히 실제(實貸)를 더하사, 참고로도 우리에게 죄를 더하지 않으셨다. "사직하겠다" 하면 사직하라 하시고, "자인(自引)하겠다" 하면 자인하라 하시니, 이는 참으로 우리가 진토를 털고 군국에 보답할 때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성지의 계유를 알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떠들어 치안과 정령의 저체를 돌아보지 않으니, 실상 무엇을 도모함인가. 바라건대 폐하께서 나라를 깊이 근념하시어, 사법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리시어, 만일 이와 같은 무리가 군기하여 날조하는 일이 있으면, 일체 경중을 나누어 율로써 안제하여 징계케 하시고, 이로써 우리 다섯이 범함이 없음을 밝히게 하소서—이것이 어찌 우리 다섯만의 다행이겠습니까.

비답:

"조약의 자취를 모두 요해하였다. 경 등(卿等)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정성이 있어, 과감히 험한 일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모든 신료가 누가 이와 같지 않겠는가. 이는 혹 때로 부득이한 바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물의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사정을 해득하지 못함이다. 현재의 위급한 형세에서는 다만 동임이 육력하여, 위태함을 전환하여 안으로 돌리는 데 있을 뿐이다. 경 등은 각기 면려하여 속히 구제책을 도모하라."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하게 하기를 원하며, 한국의 부강의 실을 인정하는 때에 이를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좌의 조관을 약정한다.

제 1 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 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서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전(全)하는 임(任)에 당하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유(有)하는 아무런 조약 또는 약속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관하에 1 명의 통감(Resident-General)을 두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 내조(內調)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Resident)을 둘 권리를 가진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 있는

일본 영사에게 속하였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 4 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모두 그 효력을 계속한다.

제 5 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우는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각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날인한다.

이 협약은 일로(露) 휴전 후의 영일동맹 조약과 일로 강화조약에 원인하여 성립된 것이다.

영일동맹 조약 제 3 조:

"일본국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대불열전국(영국)은 그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다만 그 조치는 항상 열국의 상공업에 대한 기회균등주의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포츠머스 조약 제 2 조:

"러시아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있어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짐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를 저애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 신민은 다른 외국 신민 또는 인민과 전혀 동일하게 대우받으며, 즉 최혜국 신민 또는 인민과 동일한 지위에 놓임을 안다."

양 체약 동맹국은 모든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하여, 러-한 간 국경에서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특진관 이근명, 비서감 독리 이우면, 군부 협판 이한영, 외부 협판 윤치호, 의정부 참찬 민영휘, 의정부 찬사 이상설, 육군법원장 신태휴, 정녕사사 조병식, 심사국장 박용화, 정 2 품 박기양, 사직 제조 박봉주, 전 시독 강원형, 종 3 품 안종화, 중추원 의장 민종묵, 전 비서원승 윤두병, 종 1 품 이유승, 종 2 품 박제빈, 시종원 서상…, 학부 편집국장 이종태, 비서 정홍석, 양성소 교관 정명섭, 비서랑 고정주, 규장각 직각 신성균, 법부 주사 안병찬, 특진관 조병세, 중추원 참의 민영규, 종 3 품 홍우철, 규장각 학사 이용태, 장예원 경 김완수, 시강원 시독 박제횡, 종 3 품 윤병일, 종 1 품 이근수, 중추원 참의 홍순횡, 표훈원 총재 박정양, 최재학, 상방사장 이명상, 전 비서원승 이위래, 전 정원전령 강개, 시종무관장 민영환, 종 1 품 김종한, 평리원 재판장 엄주익, 성균관 교수 이상영, 전 주사 노봉수, 전 찬정 최익현, 영정녕사사 심순택, 종 2 품 이남규, 경연관 곽종석, 제주 송병선, 전 우, 중추원 참의 이건하, 시종무관장 이종건, 외부 교섭국장 이시영, 경무사 구완희, 참모국장 권태익, 종묘 제조 윤태흥, 이재완, 이도재, 김병수, 오병서 등. [주: 관직 명칭은 원문 순서대로 번역했으며, 일부 글자 탈락은 맥락으로 보정.]

위 인물들은 모두 진소·논핵을 올렸고, 그 밖의 한산 유림 가운데 언사한 자들은 일일이들 수 없을 정도였다.

종 1 품 이용식은 상소를 올려 영정녕 조병세의 유적을 진진(進進)하였고, 특진관이근명은 백관을 거느려 뜰에서 청하니 칠차 연원(聯願)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처분이 있었다.

의정 조병세, 시종무관장 민영환, 홍만식, 윤두병, 참의 이상설, 제주 송병선, 이한응, 학부 주사 이상철, 병정 김봉학 등.

위 사람들은 모두 비분하여 자결하였으며, 그 밖의 사상자는 헤아리지 않는다.

나인영·오기호 등의 각 대신 암살 계획이 발각되었고, 정부와 통감부 사이의 협의 결과, 한·일 경찰을 파견하여 각 대신의 저택과 출입처를 경비하게 하였다.

이상은 암살단의 불평에서 비롯된 계획이었다.

상소인 등을 구금하라는 조칙.

조서에 이르되: "그 말한 바는 진실로 대동 공의에서 나온 것이다. 연이어 장차와 거듭된 서찰을 어찌 이치 없음이라 우려하랴. 그러나 궁중에 머물러 이미 하룻밤 또 하룻밤을 묵으니, 이는 국초 이래 없던 준거(浚擧)라 할 만하다. 누차 신유(申諭)하였어도 아직 물러가지 않으니, 그 신분이 어찌 이와 같은가. 소수 이하를 모두 잡아들이고 법부에 명하여 구납(拘拿)하여 징변하라."

의정대신 및 외부대신 대리를 명하다.

조서에 이르되: "이완용을 명하여 의정대신 사무를 대리케 한다. 내일 음…." 조서에 이르되: "이종용을 명하여 외부대신 사무를 대리케 한다." 12월 13일(음력 11월 17일). [주: 인명 일부는 OCR 흔들림.]

이는 외부의 잔무를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이로부터 경성에 주재하던 각국 공사는 각각 성명을 받고 잇달아 퇴거하였고. 본국 외교관들도 전후(電訓)에 따라 차차 철환하였다.

당시 통상하던 각국:

일본국—개국 485 년 병자 2월 2일 조약(서력 3월 26일)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대만…, 이탈리아, 칠레, 뉴질랜드, … [주: 조약 연혁표는 OCR 훼손으로 일부 국명·일자가 파손.]

위 각국 중 공사를 파주(派駐)한 곳은 불·청·일·미·영·독·노(러) 등 7 개국이요, 겸주(兼駐)한 곳은 오스트리아(독일 겸임), 벨기에(프랑스 겸임) 등 4 개국이었다.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하자 외부는 자연히 쇠미해졌고, 동시에 의정부에 외국(外局)을 두었다. 광무 10 년 2 월 1 일부터 일본 정부는 통감을 경성에 두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의 직에 있어 주재하였다.

내각의 신개혁.

광무 11 년 5 월 22 일, 제 4 차 내각 조직의 대명을 배수(拜受)하고, 차례로 국무를 집행하였다.

이토 통감의 추천에 따라 위 대명을 삼가 받들었는데, 이토는 나에게 "일체의 조직 관계는 모두 각하의 뜻대로 하되, 다만 각원 중 두 사람만은 본 통감이 천거하겠다. 한 명은 조중응, 한 명은 송병준이다."라고 하였다. 조씨는 당시 통감부 농사과 촉탁으로 재직 중이었고, 송씨는 전 오타니 기쿠조 소장의 통역이었으며, 현직으로는 일진회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다. 본디 '송병준'이라는 명칭도 이토 통감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각원의 일원으로 조씨를 임용한 것도 진실로 예기 밖의 사실이었다.

칙: "학부대신 이완용을 명하여 의정부 총재대신으로 삼는다." "성균관장 임선준을 명하여 내부대신으로, 육군 부장 이병무를 명하여 군부대신으로, 중추원 부의장 이재곤을 명하여 학부대신으로 삼는다." "경리원 경 고영희를 명하여 탁지부대신으로, 정 3 품 조중응을 명하여 법부대신으로, 정 3 품 송병준을 명하여 농상공부대신으로 삼는다."

의정부 관제 개정을 진주(進奏)하였다.

의정부를 고쳐 '내각'이라 칭하고, 조칙에 이르되:

"짐이 생각하건대, 경국의 요체는 그 관직을 정하여 각 기관이 제자리를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제 수괴(수석)를 간발하고 각원을 조직함에, 오로지 각국의 밝은 제도를 본받아,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국정을 유신하게 한다."

관제 개정에 따라 다시 내각총리의 대명을 받고, 돈덕전에 나아가 칙론을 흠봉하였다.

칙: "정 2 품 이완용을 명하여 내각총리대신으로 삼는다."

칙: "짐이 생각하건대, 내각은 만기를 친재함을 보필하고 서무를 평장함을 요로 삼는다. 이제 그 조직을 개선하여 제대신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책임을 맡게 하고, 내각총리대신으로 하여금 독려케 하며, 관수를 명백히 하고 사사로움을 제거하며, 선발을 정밀히 하고 재능을 기다리며, 번교(繁交)를 덜고 체체(滯滯)를 통하게 하며, 잉비를 절약하여 급요를 들어올리고, 규율을 엄히 하여 관기를 숙정하는 것—이것이 시정 정리의 요무이다. 여러 신하는 각기 뜻을 떨쳐 허화를 버리고 실무를 힘써, 중흥의 업을 융창케 하라."

소명을 받고 돈덕전에 배알하여 칙을 받들었다.

내각 인장의 개주(改鑄)를 진주하였다.

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삼가 아룁니다. 내각 인장은 이미 주성(鑄成)하였고, 따로 감본을 갖추어 공손히 어람에 비치하오니, 삼가 상주합니다." 봉지: "주대로 하라."

중추원 관제 개혁을 진주하였다.

나는 중추원의 종래 정원 외에 고문 6 인을 두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각 고문들의 칙지를 진정하여, 전 대신 박제순·이지용·민영기·이하영·권중현·이근택 제씨를 모시고 입견한 뒤 차례로 칙을 받게 하였다.

행정관청에 한 일 관리를 병용하는 건을 실시하였다.

금년 7월에 체결한 신협약에 따라 시행하였고, 각 부의 대신은 전적으로 한국인으로 하고, 차관 이하 각과에는 한·일인을 병용하며, 지방관제도 중앙정부의 예에 따라 시행하되. 장관은 한국인을 등용하기로 하였다.

병합(1910) 이전 한국 제도의 연혁.

명치 40년(1907) 5월, 내각은 이완용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는 본래 학부대신이었는데 총재대신에 친임되었고, 타 각원은 전부 교체되었으나, 이는 다만 각원 사이의 이동에 그쳤을 뿐, 새 각원을 한 명도 보태지 않았다. 한국 종래의 정치는 이 점에서 일소되었다.

돌아 중추원을 보면, 역시 종래의 함서(濫敍)가 심하였기에, 명치 38년(1905) 관제 개정에서 주로 정원을 한정하고 임용 자격을 정하여 그 폐단을 교정할 수 있었다.

명치 40 년 6 월 내각 관제의 개정에 잇대어 다시 중추원 관제를 고치고, 종래 정원 외에 고문 6 인을 두어 군국의 중요 사항을 여흥(與興)하게 하였다. 40 년 개정으로 증치된 6 인의 고문은 친임 직으로, 1 년 이상 정부 대신의 친임직을 거친 자를 임명하며, 내각에서 자문한 군국 사항이 있을 때 의장은 고문을 회동하여 수의(收議)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마침 38 년 협약 체결 전후부터 지속하던 박제순 내각의 경질이 있었고, 전 대신들은 중추원에 들어가 고문이 되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그 밖에 행정 각부에 있어서는, 명치 40년 7월 체결의 신협약에 따라 한국의 시정 개선을 지도하고, 종래의 감독적 고문 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용하여 직접 책임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다.

먼저 각 부 관제 및 지방관제의 개정에 착수하였고, 이는 대개 그해 말까지 공포되었다. 종래의 제도에서는 자칫 기관의 중복이 있어 사무의 지체를 가져오고, 기타 여러 폐해가 있어 썩 신발 위를 긁는 듯한 한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 협약 체결 이후로 기관은 통일되고 직무는 명확해져, 시정 개선 사업이 더욱 민활해질 수 있었다. 새 관제를 대조해 보면, 겉으로는 기관이 크게 팽창된 듯하나, 이는 다만 종래의 고문 제도에 따라관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설치되어 있던 각종 기관과 이원을 관제에 게재하였기때문이며, 사실상은 주로 옛 상태를 계승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번 개정 역시 행정조직의 대강에서 크게 바꾼 바가 적고, 그 목적은 종래의 용빙자를 한국 관리에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행정 조직의 통일과 각 기관의 연락상필요한 정리를 기하려는 데 있었다.

황제의 선위에 관하여.

황태자의 대리.

황실의 비상한 사정과 시국의 중대한 문제가 돌연 일시에 전후하여 병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케 하였다. 나는 궁내부대신 서리를 명받아, 전후에 발한 조칙을 흠봉하였다.

당일(음력 정미 6 월 초 9 일), 광무 11 년의 아침에 그 의식을 거행한 뒤 서리가 풀렸고, 이에 이상… 등의 감처 조지(詔旨)를 집행하였다. [주: 인명 일부 훼손.]

광무 11 년 6 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될 때, 전 찬정 이상설, 전 판사 이준, 전 서관 이장종 등 세 한국 사절이 갑자기 친임장을 지니고 나타났으며, "한국 보호조약은 한국 황제의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각국 대표에게 일봉의 친서를 제출하였다.

그 문에 이르되: "생각하건대 외시국이 대변하였고, 강린의 침박이 날로 심하여, 우리 외교의 권을 빼앗기고 자주 정치를 손상하는 데 이르렀다. 임금과 온 나라 신민이 분개하여 하늘땅을 진동시키지 않음이 없다. 바라건대 강이 약을 돕는 의리를 생각하고, 널리 제 우방과 의논하여 법을 세워, 우리의 독립 국세를 보전케 하시어, 온 나라 신민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고. 만세토록 그 덕을 칭송케 하소서…"

이와 같이 호소한 밀사들도, 결국 일본 대표의 활동으로 아무런 효과 없이 돌아갔고, 일행 중 이준은 분사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남승 사건이 돌발하였다. 이는 처음에 로경(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하던 전 공사 이범진의 주선으로, 그해 4 월경 이상설과 이준 두 사람이 조선을 떠나 러시아로 건너가 이 공사와 협의하였고, 러시아의 후원으로 그 아들 서관 이장종이 헤이그에 동행하였음이 판명된 것이었다. 당시 한황이 로제프(러시아 황제)에게 보냈다고 일컬어진 서한의 대개는 다음과 같았다.

"짐의 오늘 형우가 매우 간난하여, 사방을 둘러보아 호소할 데가 없고, 폐하께 이 한가지만 번진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후정을 베푸소서. 우리 나라의 진흥은 전적으로 폐하의 고려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니, 그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당한 바가 실로 이유 없음(부당함)임을 성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러·일 개전 전중립을 선언하였음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또한 세계가 공화(共和)할 곳입니다. 현하의정세가 깊이 분개를 금하지 못합니다. 폐하께서는 특히 우리 나라가 까닭 없이 입고있는 정상을 생각하시고, 그 회의가 개최될 즈음에 우리 사절로 하여금 국형세를 설명케하시어, 만국의 공론을 일으키게 하시면, 이것이 곧 우리 본권(원권)의 회수를 희망할바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이는 참으로 짐과 우리 한국 전민이 감격하여 폐하의은덕을 잊지 못할 일입니다. 전 주한 공사가 돌아갈 때, 얼굴을 맞대고 심중을 진술하였으며, 겸하여 그 공사에게 부탁한 바가 있으니, 너그러이 살피소서…"

이 일이 일단 신문에 보도되자, 일본 당국자 사이에 물의가 등등하였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그 사실이 어떠한지 모르면서도,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한국 황제의 친서 초고라 일컫는 것을 입수하였고,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당시 수상인 나를 찾아와 말하였다. "금번의 조치는 한·일 협약에 위반됨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정히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선전(官戰)을 포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답변해야 할 이치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이 일이 내각에서 관계하지 않았음을 첫째로 해명하고, 가급적 무사히 해결하기를 기약하며 간절히 부탁하였으나, 이 중대한 기회는 쉽게 해결될 바가 아니었다.

이토 공은 대답하였다. "나도 각하와 같이 이 사건의 책임에 관해서는 본국 정부에 신명을 바칠 뿐이다. 나는 다만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이니, 어찌 사람을 용서할 권능이 있겠는가." 나는 그저 전전긍긍하며 사퇴하였다.

이때 갖가지 전설이 분분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 각 신문이 "지금 일본 조의(朝議)는 조선 개전을 결정했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일진회에서 "일본은 한국을 전공(全攻)하여 황제를 일본으로 납치할 것이며, 황제는 일본 천황에게 사죄하러 건너간다"고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이용이 통감의 후원으로 귀국 도중 동래 온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언이 잇달아 "금번 일본은 황제를 일본으로 납치하고 이용으로 하여금 위를 계속케 한다"는 설까지 난무하였다. 이러한 유언은 자연히 하늘에 닿아, 신심을 불안케 하였다.

사태가 이와 같았으되, 중대 사건의 해결에 묘안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에 내가 한 계책을 제출하였다. 즉 황태자로 하여금 황위를 대행케 하여, 일본에 대해 변해(辨解)할 방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제 각원은 물론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폐하의 평상 뜻은 모두가 아는 바이므로, 누가 감히 이를 어전에 상달하여 실행하겠는가—이 또한 일대 문제라 할 만하였다. 그러나 이 책임은 나 자신의 몸에 지울 밖에 다른 길이 없었고, 이에 관한 각의는 해산되었다. 그날 밤 나는 어전에 배알하였으며, 어전에서의 문답은 대략 위의 뜻과 같았다.

동월 6일, 다시 각의를 열어 상의하고, 전후의 사유를 갖추어 정식으로 어전에 진주하여, 황위를 선양케 하여 국보(國步)의 간우(艱虞)를 해결하시기를 아뢰었더니, 폐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더욱 진노를 더하시어, 예기치 않은 칙어를 내리심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이토 공은 한정(韓廷)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부득이 일본 정부에 전청하여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를 출장케 하였다. 이는 상정(常情) 아닌 계책에 따른 것이었다. 하야시 외상이 경성에 도착한 것은 동월 18 일이었고, 날짜까지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때 좌우로 분주하던 나는 이틀 전에 다시 어전에 상세히 아뢰어 성심을 돌리려 하였고, 17 일에 이르러 어전회의를 열어, 각원이 한 목소리로 시세가 급박함을 아뢰고, 성재단행(聖裁斷行)하실 것을 애걸하였다. 18 일 하야시의 입경에 즈음하여 내외가 한층 긴장하였고, 이날 오후 이토 공이 잠시 알현하였으며, 오후 8 시부터 제 3 차 어전회의가 열렸다. 이에 폐하께서는 최후의 성재에서, 민영휘·민영소·서정순·신기선·이중하·이윤용·박제순·성기운(박영효·이도재·남정철은 칭병 불참) 등의 원로를 소견하시고 자문하였으나, 역시 아무 묘안이 없었다. 폐하께서는 부득이 뜻을 일결하시고. 19 일 오전 1 시에 윤허의 칙을 내리셨다.

"아아, 짐이 열조의 비기를 이어 지켜 이제 44 세에 이르렀다. 여러 차례 많은 난을 겪었으나, 치지(治志)가 부합하지 못했고, 기용이 혹 그 사람이 아니었으며, 소화(騷訛)가 날로 심해지고, 시조(施措)가 많이 시의에 배역하고, 간우가 바야흐로 급하며, 민명(民命)의 곤쇠와 국보의 급박이 예부터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으슬으슬 두려워 깊은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 다행히 원량(元良)에 의지함에 덕기가 천성되어, 기거의 틈틈이 비익이 심히 많았다. 시정을 개선할 법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은밀히 생각하니, 일에 권태하여 전선(傳禪)하는 것은 스스로 역대에 이미 행해 온 예이며, 또한 우리 선왕조의 성례이니 마땅히 이어야 한다.

이제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케 한다. 의절은 궁내부 장예원으로 하여금 연마하여 거행케 하라."

광무 11 년 7 월 18 일.

황태자의 상소(첫 번째).

"엎드려 아뢰옵니다. 소자는 감히 노이(儲貳)에 거한 지 30 여 년이오나, 인심을 유지할 영문영예가 없고, 침선(寢膳)을 모시는 틈에도 또한 정사를 가까이하며 경전을 읽지 못하였으므로, 나이 서른에 이르렀으나 동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용 사이에는 다만 부황 폐하의 교회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양구(陽九)의 운을 만나 험을 겪고 간을 밟았으나, 일체의 책략 한 가지도 발하여 폐하의 부담을 덜지 못하였습니다. 정사 기무에 망연하여 그 모양이 어떠한지도 살피지 못하였는데, 천만 몽미 밖에 홀연히 대리의 칙을 받들었나이다. 소자는 명을 듣고 놀라 오장육부가 떨렸고, 곧바로 땅에

엎드리려 하였으나 그러지도 못하였습니다. 대사는 비록 천명을 경유하나, 하루도 만기와 민국의 안위에 관계하지 아니함이 없사옵니다. 태평한 때에도 오히려 감히 승당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만만간난의 즈음에 어리석은 소자에게 위임하심이리까. 장차 국사를 어찌하오리까. 부황 폐하께서는 홀로 오백 년 종지의 무게와 이천만 민명의 의탁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소자는 물러나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단장을 진열하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부황 폐하께서는 속히 성명(成命)으로 국사를 다행케 하시어, 이로써 사분을 편안케 하옵소서."

비지: "이 광전(曠典)은 실로 우리 열조의 고사를 따른 것이다. 이제 이 급박의 즈음에 임박하여 대국을 유지하고 종사를 공고히 하여 기초를 무궁히 드리우는 것은, 참으로 네가 해야 할 길이다. 그 사양의 아름다움은 지금 논할 겨를이 없다. 깊이 양해하고 다시 번청하지 말라."

재소; 비지.

"엎드려 아뢰옵니다. 소자가 어려움의 정정을 무릅쓰고 감히 진술하여, 꾸짖음을 입기를 바랐는데, 비지를 받들 때 인유(允配를 입지 못함은, 소자가 가장 박애하여 둘 데가 없사온 바, 천지의 크다 하더라도 유감이 없지 아니하옵니다. 무릇 서무를 대리하는 일은 우리 가의 고사가 없지 아니하오나, 이는 모두 근로에 권태한 뒤의 일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황 폐하께서는 춘추가 오르셨으되, 총명신무가 조금도 평소보다 덜하지 아니하시고, 소자는 나이가 장성하였다 하오나 전몽하여 나이만 다를 뿐이오니, 하물며 만기의 번다함을 대청할 수 있겠습니까. 백번을 사량하여도 만만히 명을 받드는 희망이 없사옵니다. 이에 감히 감히 충곡을 폭로하오니, 부황 폐하께서는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이 매우 비상의 명을 거두어 돌려주시기를, 천만 간절한 지성에 맡겨 아룁니다."

답: "효는 뜻을 따름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의는 어려움을 구제함보다 큰 것이 없다. 이미 심복의 비유가 있으니, 마땅히 이를 양해할 것이다. 또 여기서 다시 거듭 아뢰는 것은 효의와 그 마땅함을 알지 못함이다. 천만의 이치로 들을 바가 없으니, 다시 번청하지 말라." 황태자의 대리는 당일 길일을 택해 거행하고, 행례의 절차는 권정례로 삼도록 하였다. 이 칙명을 받들어, 또 행례 당일 다음 조칙을 내려, 공손히 받들어 당일 반포하였다.

"요가 노동에 권태하여 순에게 정사를 섭하게 한 것은 《서경》 개편의 첫 뜻이다. 역대로 이래로, 저잣거리(=세자)가 혹은 선수를 곧바로 받들고, 혹은 서무를 조결(條決)케 하여 심법을 전수하고 부탁할 사람을 얻은 것은, 실로 종사를 중히 여기고 나라의 터전을 길게 하는 상경통의요, 사책에 전하는 미담이자 대담이다. 또 우리 가의 숙·영·순조는 모두 만년에 세자를 명하여 대리케 하여, 우리 억만년 무궁의 휴(休)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우리 가의…"

법으로 삼아야 마땅한 전범이다. 내가 임어한 지 네 주기가 되었으나, 많은 고난을 겪고도 치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늘 근심과 두려움을 품어 왔음은 이미 앞선 조서에서 소상히 진술하였다. 정력이 한계가 있어 번거로움을 감당하기 어렵고, 병환이 오래 침습하여 양생을 방해하였다. 다행히 황태자가 있으니, 예의 있는 자태는 하늘이 준 것이요, 총명과 효우로 동궁에서 덕을 쌓았다. 나라 사람들이 삼십여 년 동안 목을 길게 빼고 바람을 걸었으니, 군을 어루만지고 나라를 감독하는 일은 스스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다.

하물며 내 기력이 쇠한 때에 청문을 대신하고 노고를 맡는 것을 어찌 사양하겠는가. 이에 대리 명을 함께 내리고, 우리 조종의 헌에 좇아 정치에 밝아져 사해를 번성케 하기를 바란다. 또 짐을 나누어 직무를 맡아 내가 틈틈이 물러나 양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선종의 복이요 국가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금년 유월 초열흘부터 군국의 대사를 황태자로 하여금 결재케 하라.

동일한 날 새벽, 천지와 종묘·사직에 지고하였다. 상서로운 날을 맞아 큰 은택을 베풀고자 하니, 다음 사안을 형편에 맞게 시행한다.

- 1. 역대 제왕의 능침, 오악·사독, 명산대천, 신실단의 편액과 구조가 무너진 곳이 있으면 내부에 보고하여 수보한다.
- 2. 나라를 편안히 하고 근본을 굳게 하는 일은 오로지 백성과 가까운 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중 순량한 자와 탐오한 자를 해당 관찰사가 자세히 내부에 보고하여, 경양과 출척의 전형을 시행한다.
- 3. 민간의 완화된 금지기구 가운데 시세에 꼭 필요한 것은 해당 관찰사가 널리 수색하여 내부에 보고하고, 선발을 기다리게 한다.

- 4. 반란·살인·강도·절도·강간, 외인과 결탁하여 정리를 참해하는 자, 공채 도피자 등을 제외하고는, 기결 미결을 불문하고 일괄하여 내각이 회의하여 방면하여, 인휼을 보인다. 또한 이를 고하라.
- 5) 서울 밖 재판소의 감옥이 해이하고 혼잡하여 몇 달씩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다. 대소·경중을 심결하여 억류하지 말라.
- 6) 노약병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성심으로 보호하라.
- 7) 민생의 위생에 관해서는, 남북의 건습이 각각 그 마땅함이 다르니, 관찰사와 지방관은 수토의 적의를 구하여 집집마다 알리어 스스로 보호하게 하라.
- 8) 도로의 황무와 교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서 잡초를 매고 도보를 수리하여 왕래를 편하게 하라.
- 9) 유민과 이주를 강요당한 자에 대해서는, 관찰사와 지방관이 끝까지 구휼하라.
- 10) 도적을 금압하여 각 경내를 편안히 하고, 만일 표탈과 낭자(亂雜)를 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 관찰사로 하여금 주벌을 주청하게 하고 논핵하라.

향기로운 예기와 진탕의 술이 정제되고, 거듭 성훈이 밝게 내려왔다. 바른 사람을 가까이하고 바른 말을 들으며, 널리 구제함에 힘쓰라.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면 예와 악이 일어남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밝히 알린다. 마땅히 자세히 알 것을 바란다. 박영효 등 체포의 주청.

(연월 같음) 십구일.

내각과 법부가 주청하였다. "지금 수수된 예전은 대성인의 경일(精一) 심법에 좇은 것으로, 종사가 만억 년 공고해지는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신민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사온데, 각 유사는 마땅히 그 직임에 급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궁내부대신 박영효, 시종원경 이도재, 홍문관학사 남정철은 그 직책이 지극히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피하는 행실을 하였으니 정상을 덮을 수 없습니다. 법부로 하여금 체포·심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하였다. 박영효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기타는 생략한다.

이상고 등 징치의 조칙.

이상고·이위종·이준 등이 무슨 급박과 무슨 은밀한 뜻을 품어 몰래 해외로 나가 스스로 밀사라 칭하고, 사람을 현혹하여 방교(邦交)를 해치려 하였는가. 그 소행을 궁구하니,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법부로 하여금 율에 비추어 엄히 국문케 하라.

황제 수선(受禪)의 식.

이미 대조(大朝)의 처분을 삼가 받아 황제의 대호를 진칭하고, 연호의 개정을 아뢰었다. 이에 隆熙 원년 8월 27일에 돈덕전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동시에 '대업에 근면하라'는 조칙을 흠봉하였다.

내각과 궁내부가 주청하였다. "금월 18 일 태황제의 조지를 삼가 받들어, 우리 폐하께서 군국의 서정을 대리하시니, 이미 '조(詔)' '칙(敕)'이라 칭하였습니다. 태황제를 존봉하는 의절은 이미 연마되었고, 큰 덕에는 반드시 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조칙'과 '주상'의 글자와 '대리'의 칭호를 고쳐, 황제의 대호로 진칭함이 진실로 천의와 민정에 부합합니다."

조: "대조의 처분을 받아 힘써 따르겠다."

개원 연호는 '隆熙'로 의정하고, 들어가 지시를 받았으며, 주청에 따른다.

隆熙 원년 8월 27일 음선시에, 상이 돈덕전에 임어하여 황제위에 즉하셨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북면 사배한 뒤, 나는 표안 앞에 나아가 굽히며 축하 표문을 읽었다. 끝나자 악을 연주하였다. 폐하께서 내전으로 환어하시고 대원수의 정장으로 갈아입으신 뒤다시 출어하셨다. 악이 그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하사(賀詞)를 읽고, 이어 외국 영사관 총대표가 하사를 마쳤다. 나는 탑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애국가연주가 있은 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만세를 부르니 백관이 이에 화답하였다. 다시 두손을 이마에 대고 만세를 부르니 백관이 이에 화답하였다. 다시 두소을 이마에 대고 만세를 부르니 백관이 또 화답하였다. 나는 돌아와 서서, 악이 그치자 사배하고, 백관도 따랐으며, 악을 연주하였다. 폐하께서 내전으로 환어하시고, 악이 그치자 백관이 순서대로 퇴청하였다.

칙.

아아, 덕이 없는 내가 겸하여 備位에 있으면서, 잠자리를 물어보고 수라를 받드는 예가 때마다 미치지 못함을 늘 마음에 품었더니, 군국의 대사를 대신 듣게 하라는 명이 천만 꿈밖에 갑자기 내렸다.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만 혈성으로 간절히 사양하여 꾸짖음 받기를 바라고 여러 차례 머리 숙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어 전위의 처분이 내려졌다. 더욱 두려움이 커져 즉시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천의는 돌릴 수 없고, 인심은 의혹과 두려움이 있기에 부득이 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부탁이 지중하여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아, 깊이 생각하니, 우리 태조 고황제께서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 순하여 업을 세워 전하시어, 우리 억만년 무궁의 기초를 이루셨다. 근로에 권태하여 처음으로 정종대왕에게 내선을 행하게 하셨고, 정종대왕이 이를 받아 태종대왕에게 전하였으며, 태종대왕은 세종대왕에게 전하였다. 세종대왕은 세 성왕을 이어 성덕과 신화가 요순의 천지와 같게 하였다.

예악·문물은 찬연히 구비되었고, 군자는 그 어진 이를 어진 이라 하고 그 친한 이를 친히하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기고 그 이익을 이롭게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가의 아름다운 예가 진실로 이와 같다. 성인의 일에는 늘 미묘한 뜻이 있으나, 그 행함은 무리가 참으로 알지 못한다. 하물며 나와 같은 무능한 자의 행함을 무리가 어찌 알겠는가. 도에는 상승과 하강이 있고, 운에는 불태(否泰)가 있다. 근래 십수 년간 우리 가가 다난을 만나, 황제가 성덕지인으로 용서하고 우근하였으나, 장차 그러려는 즈음에 태(泰)로 돌릴 수 없었다. 어찌 내 소박한 재주로 하고도 뒤에 머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오래 곤난을 생각하니, 임금만이 곤난한 것이 아니라 신하도 또한 곤난하다. 《서》에 이르되 "복신이 바르면 그 일이 바르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스스로 성하여도 임금의 덕은 또한 신하에 의지하고, 불덕 또한 신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완용—너는 총리니, 동료를 독려하고 부서를 바르게 이끌라. 임선준—너는 지방을 관리하니, 수령을 신중히 택하여 여민을 편안케 하라. 고영희—너는 재부를 맡으니, 국계를 넉넉히 하라. 이병무—군을 다스리되 정밀함을 귀하게 하라. 조중응—능히 인휼을 베풀되 중도를 써서 민에게 적용하라. 이재곤—재목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급무다. 송병준—농사를 가르치고 재를 늘리며, 유통을 통해 상업을 이롭게 하라. 너희 일곱은 오늘이 어떠한 날이며,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물러날 것을 물리치고, 성취할 공을 북돋아라. 너희의 마음은 어떠한가. 사심을 경계하라. 천하의 일은 공으로 이루어지고 사로 패하는 법이 없다. 국가를 위해 집을 잊고, 공을 위해 사를 잊으면, 못이룰 일이 없고, 세울 공이 없는 법이 없다. 아아, 다만 선을 행하기를 힘쓸 따름이다. 좋은 계책이 있으면 아뢰라. 너희는 더욱 나 한 사람을 보필하여 전공보다 더 크게 하라.

아아, 우러러 종사를 중하게 여기고, 굽어 백성과 신하의 정을 살피라. 이에 금년 음력 칠월 십구일에 경운궁의 즉조당에서 위에 즉하였고, 원년으로 개원하였으며, 대황제를 존숭하여 태황제로 하고, 순명비 민씨를 추봉하여 황후로, 비 윤씨를 책하여 황후로 삼았다. 아아, 즐거움이 없는 임금이라, 다만 집목(集木)의 두려움을 품고, 의지할 곳은 신하에게 있다. 부하의 임무를 도우라. 십행(十行)을 펼치고, 대사를 추진하며, 시행할 사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역대 제왕의 능이 훼손된 곳이 있으면, 해당 관찰사는 명찰하여 해당 부서에 자세히 보고하여 수리한다.

악진·해독·신실의 기둥이 무너진 곳은, 해당 지방관이 보고하여 수리하고, 정성을 다한다.

부윤·군수·경찰 관리와 아전·역졸 등 가운데, 만일 뇌물을 먹고 법을 어겨 소민을 박탈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면의 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음·무와 조관 칠품 이하에는 각각 한 계급을 더한다.

재능을 감추고 옥을 품은 은일지사 중에 시용에 감당할 자와, 무략이 무리에 뛰어나고 담력이 사람보다 나은 자는, 소속 관찰사가 사실에 의거해 천거하면, 해당 부서가 사핵·징빙하여 발용에 편하도록 한다.

인명은 지중하다. 역대로 삼복주(三覆奏)의 조항이 있으니, 실출의 벌은 실입보다 가볍다. 모든 문관은 고집하지 말고, 뇌탁을 좇지 말며, 실정(情)을 얻기에 힘쓰라.

모반·강도·살인·통간·편재·도(盜) 여섯 범죄를 제외하고는 각기 일등씩 감경하라.

각 도의 고아·질병·잔질·무의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관이 무릇 무휼을 더하여, 그 처지가 없어지지 않게 하라.

천하의 근본은 농을 중히 여김에 있다. 각 주·군에서 실로 경종을 힘쓰고 본무에 진력하는 자가 있으면, 지방관은 곧바로 상을 더하여 권려를 보이라.

내·외교·음·무 각 관직이 공에 말미암아 그르쳐 이미 본관이 파직된 자가 있으면, 해당 부서가 주청하여 징계를 명하라.

각 도에 도로와 교량이 훼손된 곳이 있으면, 제 지방관은 명찰하여 수리하여 행려에 이롭게 하라.

조 안의 각 조항은 해당 지방관이 모두 성심으로 봉행할 것을 요하니, 힘써 은택을 백성에게 미치게 하라. 나의 원원한 지의를 저버리지 말라. 만일 구태에 연습하여 공연히 허문으로 가리려 하고, 관찰사도 이를 잘 살피지 못해 내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일괄하여 규찰하여 중한 대로 처치하라.

오호라, 자식을 낳아 그 해를 길게 하려면 지금의 초복과 같이 해야 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생을 근본으로 삼으려면 우리의 새로운 공을 꾀하여야 한다. 천하에 포고하여 널리 알게 하라.

건저(建儲)의 대계.

소명을 받고 중명전에 나아가, 건저의 대계에 대해 어대하였다. 이에 명을 공경히 받들어 조서를 써 올리고 물러나 책례를 거행하였다. 길일은 9월 7일로, 권정례에 의거해 준비하라는 명을 받들었다.

다시 소명을 받고 입진하였다.

내가 아뢰었다. "종사 대계를 의논하시려 하여 이 소명이 있었습니다. 근일 태황제의 명을 받들어 위에 오르시어 정사를 들으심에 두려움이 날로 깊습니다. 생각하건대 국가의 장원한 계책은 일찍이 국본을 정함에 있습니다. 저는 마흔둘에 가깝고 병이 많아. 계승의 바람이 점차 물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미 태황제께 사백하여, 공손히

처분을 받들고 이제 장차 황태자를 세워 종사의 큰 계책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경들의 뜻은 어떠합니까?"

이완용이 말하였다. "이 성교는 참으로 종사 만억년의 대계에 관한 것입니다. 폐하의 춘추가 바로 무성하고, 곤전의 덕의가 밝게 드러났으며, 린지·충사의 경사가 깊이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갑자기 하달되니, 신들이 대답할 바가 없습니다. 전임 의정에게 물으시면 아마도 좋을 것입니다." 상이 이르시되, "경들의 참뜻은 과연 어떠한가?" 이근명이 말하였다. "어진 이를 미리 택하여 건립하는 것은 역대와 국조에 상고할 바가 많지만, 대개 부득이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수년이 지나 충사의 경사가 있을 듯하니, 신민이 이를 바랄 것입니다. 갑자기 뜻밖의 조를 받들어, 우리가 서로 바라볼 뿐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민영규, 임선준, 신기선 또한 각자 의견을 덧붙였고, 건저의 시기와 전례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다. 신기선은 "건저는 빠를수록 좋으나, 이번은 이례적"이라 하였고, 다른 대신들도 확답을 피했다.

상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헤아렸으니 경들은 꼭 어렵다 하지 말라. 국조의 고사를 살피면 '현현을 택함'이 있다. 이제 친왕 중에서 마땅히 현자를 택하여 건저하라. 경들은 반드시 현자를 택해 아뢰라." 이완용은 "자를 알고 신을 아는 이는 군부만 한 이가 없습니다. 태황제께 아뢰어 선택을 내려 주소서"라 하였고, 이근명은 "성의에 달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태황제가 "영왕은 천성이 기이하고 효우가 일찍 드러났으며, 국인이 모두 바람을 붙인다"며 영친왕을 황태자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시하였다. 이완용과 이근명은 이에 찬성하며 경하하였다. 상은 정종이 태종을 세자로 삼았던 예를 들며 건저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대신들도 이에 따랐다. 결국 이완용이 조서를 작성하고 종한이 이를 반포하였다.

영왕은 조서를 받고 자신의 소회를 아뢰었다. "신은 공손히 친왕의 반열에 있으며, 나이 스무 살도 채 안 되어 이미 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숙하여 시서를 가까이하지 못하였고, 오직 태황제 폐하의 은혜와 황제 폐하의 덕을 우러러 받들어 신하와 자제의도리를 배우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책저의 명을 받들게 되니 놀라고두려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황태자 자리는 종사가 맡기고 민국이 의탁하는자리입니다. 신은 나이가 적고 학문이 미진하여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달명을 어긴 죄를 받을지언정 불분의 자리에 앉을 수 없사오니, 성명을 거두시고 국본을중히 여기시어 미분을 편안케 하옵소서. 신은 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비지: "그 정성을 자세히 보았다. 건저를 서둘러 하는 것은 예로부터 국본을 공고히 하는 대계이다. 하물며 오늘에 있어서이랴. 병환으로 아직 계승의 바람이 더디니, 우리 조정의 고사를 본받아 법으로 삼는다. 다시 사양하지 말고, 나의 뜻을 힘써 받들라."

재차 소(요지): "신은 명 아래 황촉하여 설 곳이 없어, 심정을 토로하여 천청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비지를 받들 때 윤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장육부가 떨려 도모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재비: "그 정성을 자세히 보았다. 여러 방면의 사양이 뜻을 바꿀 수 없다. 이미 대조의 처분을 우러러 받들었다. 현을 택하여 저를 세우는 것은 고사에 많고, 또한 오늘의 국업의 대계에 관계된다. 다시 장을 끊고. 성명을 받들라."

장예원경 이중하가 주청하였다. "이번 황태자 책례의 의절 상, 중화전에 임어하시고, 황태자 전하가 전계 위로 나아가 행례합니다…" 지시: "사를 보내 권정례에 준하여 준비하고, 수책의 의는 내에서 행하라."

또 주청: "음력 7월 30일(요일), 황태자 책례 후 당일에 진하합니다."

태황제 존봉의 식.

이미 칙명에 공경히 따라 태황제의 상호·부호·궁호를 의정하여, 주청하였다. 隆熙 원년 9월 9일, 돈덕전에 나아가 태황제 즉위식을 행하였고, 동시에 성덕을 진술하는 조칙을 흠봉하였다.

내각과 궁내부가 주청하였다. "태황제의 상호는 '수(壽)', 부호는 '승녕(承寧)', 궁호는 '덕수(德壽)'로 의정하여, 함께 지시를 받들어 주청합니다."

隆熙 원년 9월 9일 음선시에, 황제가 돈덕전에 임어하여 자리에 즉하였고, 신황제가 배위에 나아가 북면 사배하였다. 이어 황태자 이하, 종친·문무백관이 사배를 행하였다. 신황제가 꿇어앉고 황태자 이하도 꿇어앉았다. 대지사관이 나아가 굽히며 치사문을 다 읽었다. 신황제가 사배를 행하시고, 황태자 이하도 사배를 마쳤다. 신황제가 굽혀 삼무도(三舞蹈)를 하고 만세를 산호하시니, 황태자 이하가 화답하였다. 신황제가 사배하시고 황태자 이하도 사배한 뒤, 황제가 내전으로 환어하시고 신황제도 환어하셨으며, 황태자 이하가 순서대로 퇴청하였다.

깊이 생각하건대, 우리 태황제 폐하의 성덕 홍공은 워낙 웅탕하여 이름 붙이기 어렵다. 이제 존봉하는 날을 당하여, 소자의 칭술이 진실로 능히 다할 수 없다. 이미 처분을 친승하였으므로, 특별히 '수강(壽康)' 두 자를 대자 위에 더하여 높이고, 만의 일단이라도 그 은택을 도모하길 바란다. 의절은 궁내부에서 처리하라.

창덕궁으로 이어(移御).

황제는 국사를 존중하고 정사를 듣기에 편리케 하려고, 덕수궁에서 동궐의 창덕궁으로 이어하셨다. 전후 조칙에 공경히 따라 차례로 거행하였다.

황제와 태황제 두 폐하가 한 궁에 함께 거처하는 것은 국사상 매우 편치 않다. 이에 대의에 따라 창덕궁으로 분어하셨다. 오늘 당상하여 태묘에 친제하시고, 국시 육개조를 서고, 이어 백성에게 조서를 영포하셨다.

동년 8월 14일 (음).

이어 전 조칙. (동년 음력 7월 초 6일)

"창덕궁으로 이어할 수 있게 되면, 수리의 절차를 궁내부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라."

(동년 음력 11월 17일, 음력 10월 14일)

국시 육개조.

천지의 만물을 덮고 싣는 데는 사시의 변화가 없으면 생·성·공의 완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삼왕의 예가 같지 않았고, 오제의 도가 같지 않았다. 만약 궁하여 변해야 함을 알지 못하면, 하(夏)와 같은 부류가 끊어질 것이다. 우리 연이어 오신이 서로 이어, 거듭 밝고 널리 미치도록 하여, 문치를 닫고 스스로 지켜, 오백 년 동안 백성이 태평을 즐겼음은, 오대주가 아직 통하지 않아 오직 한 모퉁이를 보전하던 때였다. 지금은 뱃길이 사다리처럼 서로 바라보고, 천애가 척척이며, 교제가 빈번하고 사물이 번다하여 다시는 옛날과 같지 않다. 그 옛 규정을 묵수하여 능히 생명을 보전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하물며 쌓인 병폐가 굳어져, 문학은 다만 조박만을 마시고, 법도는 다만 피모만을… [주: 원문 절단/OCR 훼손으로 문장이 미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백 가지 문서 절차뿐, 한 가지의 실사(實事)도 없다. 이와 같은데 어찌 세계에 자립할 수 있겠는가. 민생의 도탄과 나라의 위태로움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는다. 이를 생각하면 어찌 마음이 서늘해지고 뼈가 아프지 않겠는가. 이러한 때에 마침 양위의 명을 받들어, 급히 구오(九五)의 위에 임하였다. 시국이 어수선하여 상처가 눈에 가득하니, 크게 여름철의 팽창처럼 변통의 큰 거사가 없이는 필경 우리 민생을 구하고 우리 방국을 보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신(維新)' 두 글자로 국시를 정하고, 종기에 맹세하여 일심으로 분발하여 치안의 회복을 도모한다. 일당기사.

일당기사 9. [주: 절 제목]

짐은 생각하노니, 너희 대소 백성은 모두 짐의 뜻을 알리라. 또 새로워져, 미혹과 지체와 오해의 견해를 열고, 축적된 완고한 풍속을 버리며, 시난을 관념하여 기풍을 크게 변혁하라. 부지런히 애써 오직 '정덕·이용·후생' 세 가지에 힘쓴다면, 백성은 넉넉해지고 나라는 강해지며 국명은 유신될 수 있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옛것을만 그리워하고 새것을 싫어한다면, 이는 겨울에 우레를 바라고 여름에 얼음을 바라는 것과 같다. 함께 침륜에 빠짐을 면치 못하리라. 이제 평범한 말로 성실히 고하니, 너희는 공경히 들을지어다. 시행할 조목은 아래와 같다.

하나, 상하가 일심이 되어 군신이 서로 믿고, 개국 진취의 대계를 정하게 할 것.

하나, 농상(農商)을 중히 여기고 상공(商工)을 장려하여 널리 국부를 개발하고 입국의 기초를 공고히 할 것. 하나, 기강을 진숙(振肅)하고 누적된 폐단을 교구(矯救)하여, 중흥의 위업을 창성하게 하고 개국의 굉모를 가능케 할 것.

하나, 내정을 개선하여 신민의 행복을 진전시키고, 사법 제도를 확정하여 원통함이 없게 할 것.

하나, 인재를 널리 구하여 알맞은 자리에 등용할 것.

하나, 교육의 꽃을 버리고 실을 취하여, 국가의 긴요한 수요에 응하는 길을 열 것.

동우회의 내습.

광무 11 년 7월 18일, 음력 정미 8일. [주: 일자 표기]

국무 대리 조칙이 내리자, 서울의 민심은 날로 불온을 보였고, 20 일(진하일) 정오에 이르러 반대파의 일종인 동우회의 내습으로, 후의 경성 남대문 밖 약현의 저택이 온전히 화재의 참극을 입었다.

내중 / 임동. [주: 지명 표기]

이때 후는 진하식에 참석하고자 덕수궁에 머물러 있었다.

소요의 각종 상황을 대략 들면, 위 조칙이 내려진 그날부터 서울의 수만 군중이 각자 생업을 버리고 회집하였다. 대한자강회, 동우회, 대한클럽, 국민교육회, 예수교청년회가 주최하여 곳곳에서 비분의 열변을 토하고, 혹은 큰 소리로 호곡하는 등, 참으로 아비규환의 대수라장을 연출하였다. 그들은 두 대로 나뉘어, 한 대는 일진회의 기관신문인 국민신보사를 습격하려 하여 미동의 해당 사옥으로 달려가 가옥과 인쇄 기계를 파괴하고. '매국신문'이라며 매질하였다. 한 대는 경운궁 대한문 앞 거리로 모여. 수천의 군중이 일제히 지상에 꿇어앉고. 그중 대표자 몇 사람이 교대로 일어서서 비장한 목소리로 격렬한 연설을 하였다. 혹자는 "국가 존망의 위기가 조석에 박두했으니, 황제 폐하께서는 단연히 양위하셔야 한다"고 하였고, 혹자는 "현 내각이 일본과 공모하여 오백년 종증(宗證)을 위태롭게 하니. 모조리 국적(國賊)을 주벌하라"고도 하였다. 고함은 조수와 같이 격렬하여 분노의 소리가 극도에 달했다. 궁중으로부터 양위의 설이 전파됨에 따라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고. 대한문에서 종로 일대는 인산인해의 대혼잡을 이뤘다. 형세가 점점 격등하는 가운데. 일본 순사와 한국 헌병이 서로 충돌하여 피차 다수의 중경상을 내었다. 견동 병영에서 수십 명의 병사가 돌출하여 종로의 일본 순사 파출소를 습격, 순사 3 명이 사살되고 부상자도 적지 않았다. 20 일 진하식 당일, 일본군은 남산 왜성대에 몇 문의 야포를 설치하고, 식장이던 경운궁은 1 개 대대의 일본군으로 경비하였으나, 격분한 민중은 몇 곳의 일본 순사 주재소를 격파하고, 남대문 밖 약현에 있는 후의 가옥에도 불을 질렀으니, 곧 동우회가 내습한 것이다.

이때 한국 군대의 일부는 군중과 행동을 같이하려고 갑자기 포를 발사하여 대항하였고, 그 기세가 제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정식으로 군중 진압의 명을 일본군에 위임하였으며, 이후 형세는 점차 진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당시 큰 화를 당한 가족 전원은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도로에 방황하여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토 통감의 간호로 왜성클럽에 잠시 거처하게 되었다.

일당기사. [주: 절 표시]

이때 그 군중은 목적을 이룬 뒤에도 사방에서 그 가족을 대수색하였고, 친구와 이웃들조차 시세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숨겨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집안의 노유남녀는 갈 곳이 없어 길에 흩어졌고, 그 참상은 더 말할 바가 없다. 그 뒤 후가 일생에서 가장 유감으로 여긴 것은, 대대로 조상의 위패를 화염 중에서 구출하지 못하여 조상에게 죄를 얻었다고 한 점이었다. 그는 늘 이를 한탄하였다. 그밖에 세전 서책과 각종 집물도 전부 소실되었고, 가옥과 물품을 합친 손해 총액은 대략 10 만 엔에 달하였다.

이토 통감은 이를 불쌍히 여겨 특별히 구호를 알선하여 왜성클럽을 빌려 주고, 그 가족을 임시로 수용케 하였으며, 전원의 생활비도 통감이 일주일 가량 지급해 주었다고 후의 부인이 말하였다.

동 클럽에서 몇 달을 지낸 뒤. 그해 9월에 장교—

장교. [주: 지명 표시]

—소재 백씨 댁으로 가족 대부분이 함께 옮겨 살고, 이듬해 1 월에 황면 전 남녕위, 미···정(不詳) 10 번지에서 비로소 전 가족을 안치할 수 있었다. [주: 지명·번지 OCR 불분명]

일하협약.

일한협약의 교섭은 내정의 개선을 목적한 것으로, 이토 통감의 요구 또는 설명에 따라 임시 각의를 거쳐 곧바로 안으로 알리고 사유를 상주한 결과, 마침내 용허의 명을 받들어 이를 약정하였다.

광무 11 년 7 월 23 일 오전 8 시, 이토 통감은 후를 관사로 부르고 협약의 요구안을 제시하여, 한국의 내정을 혁신하고 시국의 이해를 정돈하려면, 선진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을 설명하였다. 후는 이튿날 24 일 오후 8 시부터 11 시까지 3 시간에 걸쳐 임시 각의를 거친 뒤 곧바로 신황제 폐하께 진주하여 뜻을 우러러 받고, 이에 후와 통감이 아래의 약관에 조인하였다.

일당기사. 협약. 일당기사. [주: 절 표시]

제 1 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 2 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 3 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제 4 조 한국의 고등 관리는 통감의 동의로 임면할 것.

제 5 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동국 관료로 임명할 것.

제 6 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료로 고용하지 않을 것.

제 7 조 명치 37 년 8 월 22 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 1 항은 이를 폐지한다.

우리는 각기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광무 11 년 7월 24일.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치 40 년 7 월 24 일.

대일본제국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동 협약의 유래와 장래의 영향.

제 1 조는 통감이 스스로 나아가 한국 정부를 지도할 권능을 명확히 하고, 제 2 조이하에서는 법령의 제정은 물론 내치·외교 일체의 일에 관하여 통감이 모두 그가부(可否)를 줄 권리를 가지며, 또한 제 5 조에서 일본인을 관료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장차 일본인이 내각대신의 의자에 앉게 되는 것도 또한 당연하게된다. 따라서 1904 년 8 월 22 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 1 항의 고문 제도는 더는 불요할뿐만 아니라, 그 공존은 도리어 다른 분잡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또 외국 고문을 초빙하는 건도 전 협약에서는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이번에는 새로이통감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였다. 이에 한국 정치의 실권은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전부 통감의 손아귀로 돌아갔다. 이 협약으로써 한국 한일병합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 병합의 경과는 한 걸음 해놓을 수 없는 기초를 더듬어 온 것이라 하겠다. 이 일한 신협약에 관하여 하야시 외상은 설명하였다.

"이번의 교섭 담판은 단지 헤이그에서의 밀사 파견 한 조목만을 따지기 위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다. 세상의 근시안적 인사가 오직 이 일 하나로 크게 문제 삼는 듯하니, 당국의 의견과는 다소 다르다.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작년 이래로 일본의 시책에 반하여 은밀히 기획한 바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으며, 39년 말의 협약에 대하여도 일본이 당시의 대신을 협박하여 조인케 하였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라 하였으며, 끝내 이번과 같은 계획을 행한 것은 상식을 잃고 그 행위가 아동의 장난에 비슷한 것이다. 이토 통감의 열성스런 충언과 고간도 드디어 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신협약을 제창할수밖에 없음을 느끼고 교섭을 열었다. 이 취지는 담판의 시초에도 거듭 설시하였고, 공식 제안에도 이를 부기하였다. 나를 한경에 특과한 것은, 위의 제안에 관한 천황 폐하의 뜻과 일본 정부의 결정을 통감에게 가져가 관철하게 하는 사명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토 통감은 처음부터 통감으로서 한국의 사정에 능통하였으므로, 정부의조건은 다만 통감이 생각하여 보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취사·절충 등은 전적으로 통감에게 일임한다는 칙어가 있었으므로, 통감의 위임은 전권 중의 전권이요 그 책임은지국히 중대하였다. 정부의 제안과 통감의 의견은 대동소이하여 거의 일치하였으므로,체결의 결과는 물론 폐하를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각이 함께 경사로 여길 바이며,국민도 크나큰 불만이 없으리라 믿는다.

"협약 조항을 점검하면 모두 개괄적이고 표면상 온건하여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그수여되는 권의는 넓고 크다. 제 1 조의 '지도'는 포츠머스 조약 제 2 조와 영일동맹제 3 조에 명기된,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군사·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승인과,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방해·간섭하지 않는다는 '보호(프로텍션), 감독(컨트롤), 지도(가이던스)'에 해당한다. 종래의 협약에서는 단지 충고를 줄 뿐이어서, 따를지 말지는 한국 당국의자유였으나, 이번 신협약에서는 지휘 명령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곧 이니시어티브의 권리이다.

"또 제 2 조는 한국의 입법과 중요 행정 처분이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 것인데, 이는 전조의 동기를 가질 뿐 아니라 비토—즉 한국 정부가 하는 바를 때로 자유로이 승인·불승인할 권리이다. 이 두 조에 의하여 입법·행정상의 권력은 거의 망라되고, 궁중·부중을 막론하고, 문무를 막론하고,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자유롭게 임명할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상의 실권은 거의 거둘 수 없는 바가 없다. 외국인이 이번 협약에 의하여 통감을 '무관의 왕'이라 평하는 것도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 사법 관료의 경우한국에는 전혀 적당한 재판관이 없으므로 당분간 일본인을 임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기타 군사상·재정상의 시설, 경찰 제도의 개혁 따위도 모두 통감의 지도권으로 실행할수 없는 것이 없다. 나는 보호국에 대한 협약으로서는 이보다 완전한 협약이 없으리라 믿는다.

"런던 타임스도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크게 주의할 일이라고 하였으나, 그실권을 이 정도까지 진전시키는 것은 세계 유식자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둘러싼 열국이 똑같이 수긍하는 바이다. 나는 이를 세계의 이론이 없는 완전 원만한 협약이라 하며, 앞으로 영국의 이집트와 같이 보호의 미적(美蹟)을 세계에 인식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만 이는 정부 당국 둘셋이 잘할 수 있는 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 그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일한협약 제 5 조에 의거, 한국 내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통감이토 히로부미가 별도의 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정서.

통감부와 한국 정부는, 명치 40년 7월 24일 체결된 일한협약 제 5조에 의거 임명된 한국 경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재한 일본 신민에 대한 경찰 사무를 집행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隆熙 원년 10월 29일, 내무대신 이완용.

명치 40 년 10 월 29 일,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군대의 산해(散解).

국방 준비는 반드시 오늘의 용병 형식을 쇄신하여 장차 징병의 양규를 양성해야 하니, 유신의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에 이를 갖추어 상주하였고, 마침내 군대 쇄신의 조칙이 있어, 다만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해산을 시행하였다.

생각하건대, 러일전쟁 이래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은 그대로 주요 부대를 계속 주둔케하여, 공수동맹의 명의로 한국 국방의 임무를 맡았다. 일본 무관의 훈련 아래 있는 군대는 의무병이 아니라 용병 제도였고, 상하 사졸의 양성은 전적으로 외국의 차관액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경제적 문제에도 다소의 이유가 생기고 또한 불가피한 형세였다. 이토 통감은 일찍이 후에게 그 해산을 권고하였고, 후가 마침 이를 생각하던 즈음, 광무 11 년 7월 18일 황실의 양위로 인해 경성 시내 형세가 불온해져, 나날이 민중의 격앙과 광폭이 나타났다. 19일 오후에 이르러 한국 병사의 한 단 약40여명—즉 견동 병영—이 민중과 합세하여, 혹은 종로 순사 파출소를 습격하고, 혹은 도로 경계에 종사하던 경찰관을 사살하는 등 매우 난폭을 극했으며, 일한 군경 간에 수차의 충돌이 있었다.

황제 폐하는 이를 근려하시어, 당일 밤 폭동의 제지 및 진압을 통감에게 위임하셨다. 일본 군대·헌병 및 경찰은 협력하여 성내외의 질서 회복에 노력한 결과, 민심은 점차 침정되었다. 또한 각 기관 행동의 통일이 필요하므로, 일본 측에서는 통감부 경무총장, 경성 이사관 및 경무고문이, 한국 측에서는 군부 협변, 시위 혼성여단장, 헌병 사령관, 경무사, 당시 일시 서울 위수사령관이던 제 13 사단장이 지시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신문지의 취체를 엄히 하고, 또 총포·화약을 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질서 유지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8 월 1 일 군대 해산에 이를 때까지 경성은 비교적 무사하였다. 한국 군대가 해산을 면치 못할 기운은 그 나옴이 멀었으나, 이번 의외의 난폭은 자연적 동기에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난폭이 도리어 그 해산을 촉진한 운명은 아니었겠는가.

광무 11 년 7 월 31 일 밤, 다음의 조칙이 내려졌다.

일당기사. 일당기사. 칙. 시종무관부. [주: 표제]

짐은 생각하노니, 국사가 다난한 가을을 맞아 지극히 잉비(冗費)를 절약하여 이용후생의 사업에 응용하는 것이 오늘의 급무이다. 사사로이 생각하건대, 우리 현재의 군대는 용병으로 조직되었으므로, 오히려 상하가 일치하더라도 국가의 완전한 방위를 이루기에 부족하다. 이제 군제의 쇄신을 도모하여 장차 장병 양성에 전력하고, 훗날 징병법을 반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갖추려 한다. 이에 유사에게 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선치(選置)하고, 그 밖에는 일시에 해산시킨다. 너희 장졸의 오랫동안 쌓인 노고를 헤아려, 특별히 그 계급에 따라 은급을 나눠 준다. 너희 장졸은 능히 짐의 뜻을 이해하여 각자 그 업에 나아가도록 하라.

서울의 각 관서 및 각 부대… [주: 이하 부대 편제·숫자 표는 OCR 훼손으로 대부분 식별 불가]

[총사령부, 헌병사령부, 학도·병학교, 병기창, 시위 혼성여단, 보병 연대·대대, 병참, 지방 진위대 및 분견소 등의 일람.] [주: 원문 표 훼손]

위 조칙에 따라 이토 통감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통지하여 소요의 진압을 의뢰하였다.

군대를 해산할 때 만일의 민심 동요를 예방하고, 조칙을 어기고 폭동하는 자를 진압케하려고, 다음의 조칙을 내렸다.

칙.

군대 해산 때 민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비하고, 혹 칙에 어겨 폭동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진압할 일을 통감에게 의뢰한다.

일당기사… [주: 표시]

위 조지에 따라 이토 통감에게 정식으로 문서를 통지하였다. 정부의 일반 재안 문서는 한일병합 때 전부 통감부 문서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사조회기할 수 없고, 그 통지에 관해서는 『병합기념사』 제 2 편 제 5 장 제 4 절을 참고하라.

해산 당시의 상황을 개관하면, 8월 1일 오전 8시, 경성에 있는 각 부대의 해산식을 훈련원에서 거행하였다. 이에 앞서 주경 일본군 사령부장관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교섭하여 일본 병력으로 만일에 대비케 하였고, 사졸의 병기는 사졸들이 아직 해산을 예상치 못하기 전에 손쉽게 수거하였으므로, 손에 한 치의 쇳조각도 없이 쓸쓸히 훈련원에 회집하였다. 수백의 일본 병사의 검전(劍銃) 감시 아래, 공권 적수(空拳赤手)의 중사들은 망연실색할 뿐이었다.

한편 남대문 안 시위대 제 1 연대 제 1 대대장 박승환의 분사는, 그 대대 병사에게 무언의 명령을 내린 것과 같았다. 병사들은 곧 무기고를 습격하여 수거된 병기를 꺼내 반항하였고, 인접한 시위 제 2 연대의 병사들도 궐기하여 그 1 대대와 합세하고, 남대문 부근에서 일본군과 한바탕 단병접전을 벌였다.

그들은 교전하였다. 일본군은 남대문 누상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수시간에 걸쳐 난사하였으며, 고전 끝에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각 지방 군대의 해산에 있어서도 곳곳에 폭란이 일어나 일일이 들 수 없다. 해산 당일마다 각 지방을 메웠다.

8월 3일 개성·청주, 4일 대구, 5일 안성, 6일 공주·해주·평양, 7일 안주, 8일 수원, 9일 광주·의주, 10일 홍주·원주, 11일 강화·문경, 13일 강릉·진남, 14일 전주, 16일 안동, 17일 울산·강진, 19일 북한·경주, 23일 강계, 24일 함흥, 9월 3일 북청 등. 이가운데 해산에 즈음하여 반항전을 한 곳은 원주·강화·충주·제천·여주의 각 군이었다.

일당기사 117.

일당기사 118. [주: 절 표기]

군대의 해산이 이처럼 종결을 고했으나, 돌연 실직한 비애와 시국에 대한 분개로 가득찬 그들은 각지로 흩어져, 있는 곳마다 불평 많고 혈기왕성한 자들을 선동하고, 이른바의병의 기치를 들어 곳곳을 횡행하며 폭동하였다. 이에 일본군도 이를 토벌하기 위해역시 지방 각처에 출몰하니, 민생의 불안은 날로 심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디오합지졸인데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으므로, 맨손으로 아무리 분투해도 다만 애석한희생만을 내었을 따름이었다.

지방 민심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병 보조원 제도를 시행하고, 조칙을 공경히 받아 각 도에 선유하였다.

후는 일찍이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지금 각대 군인들이 지방 여러 곳에 흩어져 우민을 선동하고 소요를 합세하여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일본군으로 진압하게 하면 민심은 더욱 격앙되어 분노가 더할 것이다. 이를 염려하여 본국인을 써서 헌병 보조원을 모집·사용한다면, 이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것과 같고, 아울러 당분간 충분히 화해적 수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맹자 소위 '지금 물을 격동하면 둑을 넘게 할 수 있다'—경계할 일이다." 하였다. [주: 인용문 「今夫水激之、可使過籟」는 '물을 휘저으면 둑을 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임.]

칙.

과문하여 큰 기초를 받들지 못했고, 은택이 박하였다. 태황제의 부탁의 무거움을 저버릴까 두려워, 밤낮으로 근심하여 쉴 겨를이 없다. 나라 다스림의 도는 다만 때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는 데 있으므로, 짐이 즉위한 이래 대조(大朝)의 처분을 받들어, 묵은 적폐를 아프게 고치고 새 제도를 펴 왔으니, 한결같은 한 뜻은 진실로 나라를 편안케 하고 백성에게 편익을 주려 함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갱장(更張)의 때에 전례 없는 일이 많아, 우민들이 오해하고 서로 유언을 선동하며, 웅덩이에서 병기를 희롱하고 곳곳에서 소요하니, 그 화가 무고한 이들에게 미치고 그 해가 이웃 상인에게까지 미쳤다. 유리분찬의 고통과 울부짖는 참상은 차마 떠올리기 어렵다. 그 까닭을 고요히 생각해 보니, 즉위한 날이 얕아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뜻이 아직 통달하지 못하여 원통함이 상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니, 허물은 참으로 짐에게 있다. 어찌 너희 백성을 벌하겠는가.

이에 사신을 나누어 각 도에 보내어 선유하게 한다. 생각하건대, 너희 만민은 반드시환히 깨달아 그 미혹된 견해를 버리고, 병기를 풀어 집으로 돌아가, 오법(五法)에 어기지 말며, 부모 처자와 함께 태평의 복을 누려야 한다. 지금 곡식이 들판을 덮어수확할 때인데, 안정되지 못하면, 화살촉을 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겨울의 추위를 면치 못하리라.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듯하다. 이제 심복과 간장을 펼쳐 만민에게 평이하게 고한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황태자-대륙·일본 유학.

황태자 교육에 관하여, 태자태사는 이토 히로부미로, 태자소사는 후(侯)로 명하고, 특히 그 보도(輔導)의 의를 상세히 밝힌 칙론을 공경히 받들었다. 이에 황태자 어전에서 상견례의식을 거행하였다.

隆熙 원년 11월 19일(음) 태자태사 이토 히로부미에게 내린 조칙에 이르기를:

"옛날 황태자를 교육함에는 반드시 효제하고 박문하며 도술이 있는 자를 골라 사전(師傳)의 자리에 두었고, 그런 뒤에 예덕이 성취되어 만방을 바로잡았다. 천하의 대세와 국가의 장구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이제 문명 교육을 저축군(儲君)에게 베풀고자 한다. 사전의 임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우므로, 내외에 널리 구하여, 대훈(大勳)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를 특별히 천거하여 태자태사로 삼고 보도의 임을 맡긴다. 이토 통감은 덕이 높고 공이 융성하며, 학문이 고금에 통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참으로 하늘을 떠받친 공로가 있다. 내가 평소 공경히 중히 여긴 바이다. 이제 관작으로 구속한다 하더라도, 예우는 마땅히 특별하여, 특히 친왕의 예로 대접하고, 백료의 위에 두라. 아. 이토 태사는 공손히 이를 받들어 사양하지 말라." 같은 달 23일, 황태자에게 명하여 태자태사와의 상견례식을 행하였다.

같은 달 22 일, 태자소사 이완용에게 내린 조칙에 이르기를, "저축군에게 교육을 베풀고자 하여 이미 태사를 선임하였으니, 보전(保傳)의 의를 헤아려 보좌하는 이가 없을 수 없다. 총리대신 대훈 이완용을 특별히 천거하여 소사로 삼는다." 하였다. 같은 달 23 일, 황태자에게 명하여 태자소사와의 상견례식을 행하였다.

隆熙 원년 12월 5일, 황태자가 유학을 위하여 일본국 도쿄로 행차함에, 좌의 조칙을 공경히 받들어 신민에게 선유하였다:

"생각하건대, 저축(儲副)은 나라의 근본이고, 저축을 기르는 것은 일찍이 하는 것이 근본이다. 가르침은 고금에 차이가 있으니, 현재 세계 교통이 날로 더해지는 때에 지식을 개발하고 문무를 겸비케 하려면, 다만 동궁·연강의 쌍좌의 강대만으로 될 바가 아니다. 반드시 원유박학의 공에 의지한 뒤에라야 덕이 성취되고 치도가 밝아질 것이다. 서양 제국의 태자도 대개 유년에 외국을 유력하고, 심지어 군적에 나아가는 자도 있다. 생각하건대, 우리 황태자는 영예가 일찍 드러나 실로 원량의 덕이 있으니, 마땅히 일찍이 유학해야 하고, 긴문(禁門)에 깊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태자태사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하여 일본에 호종케 하여 보도하고 훈계케 하며, 대개 교육의도에 관계되는 것은 크게 일본 천황에게 의지하여 그 성취를 기약한다. 이는 참으로우리 대한이 처음으로 있는 성거이며, 우리 대한의 무궁한 휴명을 여는 시초다. 장차우리 국가가 발흥하고 우리 방명이 유신하며 우리 경운이 개발되기를 바라는 소망은오늘 이 거사로 말미암아 시작된다. 너희 신민은 다 이 뜻을 자세히 알라."

본국에서의 봉송 상황:

내각대신, 각 부·원 칙임관 이상, 통감부 칙임관 이상, 군사령부 군인 수십 명이 한결같이 인천항까지 배행하고, 군함(완주마루)에서 작별하였다. 각 관아·회사·학교와 기타 수만 신민은 남대문 역 앞에서 봉송하였으니, 당시의 성대한 상황은 헤아릴 수 없다.

일본에서의 봉영 상황:

일당기사. 일당기사 124. [주: 절 표기]

한국 황태자 은 친왕 전하께서 유년이심에도 불구하고 총명하심은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감격을 금치 못한 바였다. 명치 40 년 12 월 15 일, 전하의 내학(來學)에 우리 국민은 만강의 열성으로 봉영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한국 황태자 은 친왕의 유학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권유에 따라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다. 이날 오후 2 시 15 분. 은 친왕은 이토 태사와 함께 신바시 정거장에 도착하였다(이토는 황태자의 태사로서 한국 친왕의 예우를 받았다). 맞이한 이는 아리스가와노미야 타케히토 친왕을 비롯하여 사이온지 수상, 오야마·노즈 원수, 가쓰라·노기·이토·구로키·도고의 제 장군, 오자키 시장, 기타 주임관, 문관, 해·육군 군인 수십 명, 이와쿠라 공작 부인, 오야마 원수 부인 등이었다. 황태자는 미소를 띠고 이토와 함께 하차하여. 이유용·송병준 이하 수행원을 거느리고 봉영자 일동을 향해 거수례를 하였다. 플랫폼을 걸어가자, 우메자와 육군 소장이 지휘하는 근위보병 제 3·제 4 연대, 야포병 제 14 연대, 근위 군악대, 기병 제 1 연대, 수송병 제 1 대대가 정렬하여 신바시 정거장에서 시바 이궁 사이를 경위하였다. 또 히비야 공원에서는 근위 야포병 연대에서 문 4 문의 포로 편성한 1 개 중대를 배치하여 20 발의 조례포를 발사, 경의를 표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황태자 전하(일본)는 예전에 한국 시찰 때 친선을 맺은 관계도 있어 특별히 신바시 정거장에 행차하여 은 친왕에게 매우 친절한 말씀을 하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친히 악수의 예를 나누셨다. 그밖에 은 친왕은 맞이한 주요 인사들과 악수하거나 인사를 나누고. 이내 이토 태사와 고례 식부장의 배승으로 여관 시바 이궁에 들었다. 정렬한 근위 군악대는 일제히 봉영의 음악을 연주하고, 수많은 군중은 환호로 화답하였다. 동 친왕은 그 후 아자부 도리즈카의 저택에 머물렀고, 이어 하일병합에 이르렀다.

도쿄까지 배행한 인원:

대자대사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궁내부대신 이윤용, 농상공부대신 송병준, 배종무관장 조동윤, 궁내부 특진관 엄주익, 시강원 잠사 고희경, 궁내부 비서관 윤세용, 배종무관 김응선, 수학원 교관 엄주일, 농상공부 서기관 이범익, 표훈원 서기관 정동식, 궁내부 서기랑 고희중, 학동 조대호·서병갑 등.

그중 상주 배종자는 조동윤·고희경·김응선·엄주일 등.

어학 중 상황:

궁내부대신의 전보에 따르면, 전하는 평안하시고, 교사는 사쿠라이 후사키를 초빙하여(음력 12월)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황태자는 예서 수폭을 황제 폐하께 진정하였다.

이토 태사는 그해 4월 17일(음) 도쿄로부터 귀임하여, 전하의 학업이 이미 성대한 일을 칭송하고, 이에 한문·일문 예서 몇 폭을 내보였다. 후는 이를 공람하고 진정하였다.

사무관 고희경의 전보에 따르면, 일본 천황 폐하가 이토 대사를 우리 황태자 전하 유학중의 보육 감독에 임명하였다고 하였고(隆熙 3 년 7 월 27 일, 음력 기유 6 월 11 일), 또오늘 이와쿠라 궁내대신이 와서 천황의 명을 받들어 감독 임명은 당분간 발령하지 않고, 본 대신이 철재(撤裁) 사무를 행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였고, 스에마쓰 자작은 오늘교양계 직을 발령받았다고 하였다. 때마침 이토 태사가 하얼빈에서 피살됨에 따라감독의 이동이 있었다.

내부 관제 개정의 원인:

내각에 관한 일시적 비상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유를 갖추어 상주하고, 또한 이토 통감과 협의하여, 隆熙 2년 6월 6일 조칙을 받들어 내각대신의 신조직을 행하였다.

일당기사 7.

일당기사 8. [주: 절 표기]

隆熙 2 년 6 월 3 일(음), 후는 잠시 내각에 등청한 뒤 오후 1 시경 물러나 알현을 받아, 당시 내각에 관한 특별 사정을 약 3 시간에 걸쳐 상주하였다. 5 일 오후 7 시, 약속에 따라 이토 공을 관저에서 방문하여 장시간 논의하였다. 이튿날 6 일 새벽, 각 관원이 출근하기 전에 비서관을 거쳐 분주히 내각으로 달려가니, 서기관장 한창수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후는 곧 입내하여 조칙을 받들고,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 즉시 이를 반포케 하였다.

칙: 내부대신 임선준을 탁지부대신에, 농상공부대신 송병준을 내부대신에, 법부대신 조중응을 농상공부대신에, 탁지부대신 고영희를 법부대신에 임명한다.

또 미리 준비해 둔 위 각원의 친임관 임명장을 비서가 지종원 내직소에 가져가 어보를 받아 오게 하고, 지종원경 민병인을 시켜 전화로 신임 각 대신의 친임식 거행 시간을 확정하게 하였으며, 또한 전화로 신임 대신들을 속히 입내케 하였다. 같은 날 11 시에 후는 각원을 거느리고 뵙고, 고르게 친임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므로, 각 대신조차 모두 까닭을 알지 못하고 서로 바라볼 뿐이었다.

상기 이른바 비상 사정은 각 대신의 친임식 이후 점차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기회로 13일 내각례회에서 내각의 청의로 각부 관제 통칙 중 개정 칙령안, 지방관제 중 개정 칙령안 및 군수임용령 칙령안을 제출하여 모두 표제로 가결하였고, 절차를 차례로 마쳐당일 반포하였다.

각부 관제 통칙 개정은 곧 내부 관제를 고치는 것이고, 지방관제 개정은 곧 지방관 임용령에 관한 것이었다. 즉 관찰사는 내각대신의 천거에 따라 담당대신이 이를 내각회의에 제출하여 표결 가결을 요하며, 군수는 해당 관찰사가 수·부 쌍망을 내부대신에게 천보(薦報)하고, 내부대신은 이를 내각회의에 제출하여 표결 가결을 요하도록 한 것이다.

일당기사 9.

일당기사. [주: 절 표기]

내각에 관한 일시적 비상 사건.

130. [주: 표기]

당시 일진회가 어떤 의견을 주창했는지는 이제 새삼 장황히 논변하지 않겠다. 다만 개략하면, 이완용은 국정을 농락하여 오로지 자기 가족·랑당으로 조직을 꾸리는 수단을 부린 자이므로, 우리 국민의 혈기 있는 자들은 수수방관하여 나라를 이 내각에 일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내각을 전복할 목적으로 회원들이 밤낮으로 휘집했고, 비상한 공격은 불같이 맹렬하여 10 여 일에 걸쳤다. 후는 이를 진정시킬 방침이 있어, 내부대신을 송병준으로 전임시키고, 대략 일주일 관망하면 자연히 그 효과를 볼 것이라 믿었는데, 과연 이달 6 일 동씨 전임 후 점차 침정되었다. 이는 잠시 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에 아울러 예비해 둔 관제 개정은 13 일 반포되었고, 따라서 내상의 지방 권한은 다시는 문득 옛날과 같이 되지 않게 되었다.

칙.

황제가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 지방에 순행하시려는 뜻이 있자, 이에 조칙을 공경히 받들어 국내외에 반포하였다.

황제 선위식 이후 지방 소요의 여파가 오히려 늦게 안정되었으므로, 이를 방억하고 이를 무마하여 민심을 현 정치에 귀부케 하는 것도 또한 방침의 한 방안임이 분명하였다. 이토 공의 여영에 따르면, 명치 42년 원단에 공은 통감으로서 경성에 주재하여 신춘 축하를 마치고, 2일 이른 아침 이 총리(완용)에게 지방 순행 건을 제의하였고, 4일 이를 세상에 발표했다고 한다.

짐은 생각하노니, 민은 나라의 본이다. 본이 굳지 않으면 나라가 편안치 않다. 덕이 부족한 몸으로 태황제의 명을 받들어 대위에 오른 뒤, 밤낮 한 뜻으로 국세의 위급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도탄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다. 곧 시정 개선의 큰 결심으로 원년에 종기에 서고, 떨리고 두려워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방 소요가 안정이더디고, 여민의 곤수는 덜지 않았다. 이를 생각하면 심상(心傷)하다. 하물며 한한(寒寒)의 철을 맞이하여, 민의 궁핍이 더욱 심할 것이 눈에 보인다. 어찌 한 순간이라도 참아 홀로 금옥에 편안히 있겠는가. 이에 측연 분발하여 확고히 결단하고, 이제 새해부터는 유사 제신을 통솔하여 친히 국내를 순행하고, 지방의 형편을 시찰하며, 적자들의 고통을 친히 묻고자 한다. 태자태사 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몸소 짐을 보도하였다. 전에는 한여름 성염의 때에도 우리 동궁의 학식을 넓히기 위하여 노령 병구를 아끼지 않고 일본 각지를 배순한 노고가

있어, 나는 항시 깊이 감한다. 이번 행차에도 특별히 배호를 명하여 지방 급무를 익찬케하여, 근본을 굳히고 나라를 편안케 하며, 서쪽의 어려움을 구제할 것을 기한다. 너희 대소 신민은 모두 자세히 알라.

남순. 隆熙 3년 1월 7일.

가차(駕)를 배호하여 대구·부산 및 마산에 기일에 따라 왕복하였다. (음) 22 일 귀환. 연로의 제반 응접·주선은 사례에 따라 차례로 거행하였다.

왕복 대략 열흘 동안, 경외를 막론하고 관민의 배송·영접이 전례 없는 성황이었으나, 다기록하지 않고, 다만 공사 간에 참고가 될 사항만 개술한다.

각 부·원 배종자:

궁내부—대신 이윤용 외 39 인.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외 6 인.

내부—대신 송병준 외 6 인.

탁지—대신 임선준 외 3 인.

군부—대신 이병무 외 8 인.

탁지[중복]—대신 고영희 외.

학부—대신 이재곤 외 2 인.

상공부—대신 조중응 외 4 인.

중추원-의장 김윤식 외 3 인.

통감부—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외 12 인. [주: 목록 압축]

어가가 이르는 곳마다 내려진 16 자의 조어:

"화려함을 버리고 실질을 힘쓰며, 바른 풍속을 도우고, 유용을 써 후생을 도모하여, 이로써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라."

경성-대구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이 신하들은 절개가 곧고 충성이 뛰어나 늘 나를 깊이 감동케 했다. 가차가 이 길을 지나며 유사를 바라보니, 지방관을 보내 '교렬공 박태보'의 사판에 제사하게 하라."

"이 네 재상은 당시 정권을 잡아 사직이 의지하여 안정되었으니, 가차가 이 땅을 지나 옛 자취를 바라보며 그 충의를 마음에 새기면 가슴이 아프다. '충헌공 김창집, 충문공이이명, 충익공 조태래, 충민공 이건명'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아, 우리 목릉 중흥의 때에 정충을 다하여 큰 공훈을 세웠으니, 천재토록 어찌 잊겠는가. 가차가 호를 지나 큰 나무를 바라보며 광감(曠感)을 금할 수 없다. 충무공 이순신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정학을 부식하고 대의를 확고히 하여, 영릉의 어수지교가 백세에 감동을 일으킨다. 가차가 호향을 지나 유풍을 사모하라. 문정공 송시열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학문을 밝히고 의리를 세우며 난에 임해 나라에 순절하였으니, 그 위충과 경절은 오늘까지도 늠연하다. 그 고향을 지나 감흥이 일어난다. 문열공 조헌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학문이 순수하여 한 시대의 사표였다. 선조의 예우를 회상하면 비길 바 없는 감흥이 있다. 이제 이 고을을 지나 옛 사를 가리키니, 교정공 송준길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일당기사 5.

일당기사. [주: 표기]

"도덕은 순수하고 근원은 바르다. 백세 아래 높은 산과 같이 경앙된다. 그 고향을 지나면 광감이 더욱 절절하다. 교원공 김장생과 문경공 김집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이토 공의 배종 때문에, 일반 민간에는 폐하를 일본으로 납치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남향의 양반 유생 등은 혹 철도 연선에 엎드려 어가를 우러러보거나, 혹 상소하거나 호곡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구에 이르러 유생들의 상서가 접수되었다. 이에 대해 후의 설론이 있었으나 따로 서술한다. 대구-부산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학문이 순후하고 조리가 곧으며, 백세의 유풍은 사림이 우러르는 바이다. 가차가 반향을 지나 더욱 흥감한다. 문경공 김홍필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고명한 자태와 정미한 학문—유풍이 남아 없어지지 않으니 믿을 바가 있다. 고개를 지나며 깊고 간절히 흥갂한다. 문헌공 정여창의 편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학문에는 근원이 있고 경전을 여는 문이 있다. 백세 아래 공이 스문(斯文)에 있다. 남교를 지나며 감흥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문원공 이언지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도덕이 순정하고 능히 스문의 적통을 이었다. 높은 산처럼 경행(景行)하여 사람들이 흠앙한다. 반향을 지나 비온 뒤 맑음을 보는 듯하니 광감의 회포를 억누르지 못한다. 순흥 안동의 퇴계 이황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라대(羅代)의 구업을 회상하니, 오히려 천재의 광감이 아득하다. 마침 옛 도성을 지나보답의 의리를 행해야 한다. 신라 왕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고도의 유업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니, 이시(異時)의 광감이 절절하다. 보답의 의리에 있어 헌유의 거사가 있어야 한다. 수로왕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라대를 회상하면 위인이 있으니, 풍공과 탁적은 천재의 광감이다. 신라 각간 김유신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일당기사.

일당기사 238. [주: 표기]

"나라에 순절한 외로운 충성은 별과 해처럼 밝고, 영혼은 천재에 살아 있는 듯하다. 이 반향을 지나 특히 흥감한다. 충렬공 송상현과 충장공 곽재우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부산에서 받은 일본 천황 폐하의 친전보:

"폐하께서 이와 같은 한설 속에 민정 시찰을 위하여 한남 지방에 행차하심을 통감의 주에 따라 알았다. 이 성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이미 함대를 명하여 '가토리' '아즈마' 두 함을 부산으로 재항케 하였다. 만약 바다가 평온하고 풍랑의 염려가 없으면, 항내에서 기함에 임행하시어 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다. 멀리서 폐하에 대한 경애의 뜻을 표한다."

황제 폐하의 답친전보:

"이번 지방 순행에 즈음하여, 뜻밖에도 폐하의 심후한 친전을 공경히 받들었고, 아울러 귀 함대를 명하심에, 충심으로 영감이 지극하다. 폐하의 친절한 뜻에 부응하여, 내일의 천기를 논하지 않고 기함에 친히 임하겠다. 이번 순행에 귀 통감께서 한한을 돌보지 않고 지극히 호종하심을 다감(多感)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아울러 멀리서 폐하의 건강을 기원한다."

대구-경성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효창원에 예관을 보내 제향하고 돌아오게 하라."

"영회원에 지방관을 보내 제향하고 돌아오게 하라."

"정빈의 묘, 연령군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살피고 제향하게 하라."

지덕과 청렴한 권위가 팔백 세에 우러름을 받으니, 양녕대군의 사당에 예관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라.

효령대군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서순(西巡). 동 27 일, 어가를 배호하여 개성·평양·의주에 기한대로 왕복하였다. 음력 2월 3일, 환가(還駕). 일당기사 239. 일당기사 140. [주: 절/쪽 표기] 연로에서의 제반 응접과 주선은 사례에 따라 차례로 거행하였다. 왕복 약 8 일 동안 경내외를 막론하고 관민의 배송·영접이 전례 없는 성황이었으나, 모두 기록할 수 없어 공사 간에 참고가 될 사항만 개술한다. 각 부·원 배종원:

궁내부대신 이윤용 외 37 인.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외, 부서 합계 154 인.

통감부—통감 공작 이토 히로부미 외 28 인.

어가가 이른 곳마다 내린 16 자의 조어:

"화려함을 버리고 실질을 힘쓰며, 바른 풍속을 도우고, 유용을 써 후생을 도모하여, 이로써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라."

경성-평양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효릉·순릉·영릉·장릉에 시종을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흥원에 파주군수를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변경을 물리치고 공훈을 돌에 새겼으니, 공적이 탁월하다. 어가가 서쪽을 가리키니 송백이 눈에 들어온다. 고려 시중 윤관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우리 동방의 공자,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읊조린다. 어가가 임진을 지나 화석에 드니, '광풍제월'의 모습이 마치 친히 보는 듯하다. 문성공 이이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그 도를 밟음이 순후하여 백세의 유종(儒宗)이니, 어가가 고반향을 지날 때 광감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문간공 성혼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제릉과 후릉에는 경기도 관찰사를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세월이 이미 오래고 성쇠는 달랐으나, 우주를 화합시킨 공덕이 우리 백성에게 있는 이들은, 반드시 보답의 의례가 있어야 한다." 숭의전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고려 현릉 이하에 지방관을 보내 살피게 하고, 각각 수리하라. "승국의 옛 도읍을 지나며 위인을 헤아리니, 대사 강감찬은 사나운 적을 꺾어 왕업을 안정시키고, 시중최충은 학교를 진흥하여 국력을 배양하였다. 그 풍공과 탁월한 업적은—"

일당기사 142.

"—천재의 광감이다. 그 묘역을 방문·수리하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제사하게 하라."

"성학을 높이고 유풍을 떨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나고 단정하다. 누가 그 공을 긴요치 않다 하리오. 어로(御路)에서 멀리 바라보니 당우(堂宇)가 엄연히 서 있다. 문성공 안유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정기가 모인 바요, 이학(理學)이 왕성하다. 영혼이 편안한 곳에 여러 현인이 엄연히 배향되어 있다." 숭양서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예를 밟고 도를 이루었으며, 명철하고 돈후하니, 유림이 경앙하는 바이다. 어가가 평산을 지나니 묘목이 눈에 들어온다. 순박공 박세채의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평양-신의주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외로운 성이 뜻밖의 난을 당하니, 여러 신하가 적에 분격하여 용맹을 떨치고, 누대의 견고함에 힘을 다하여 몸을 바쳤다. 이 전장을 지나니 마음이 흥감한다. 충민사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토적이 강퍅하여 열강이 풍미되던 때, 여기 충의로운 신하들이 있어 의를 떨치고 나라에 순절하였다. 이곳을 지나며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표절사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신의주-의주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위화도 주필했던 옛 자리에는 지방관을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어가가 용만을 지나니 목릉의 중흥의 위적을 되새겨, 감모를 이기지 못하겠다. 취승당은 곧 임어소(臨御所)요, 그 뒤에 영묘의 어필을 모셨다. 규장각 경을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영기가 한 세대를 덮고 의열이 천하에 들렸다. 이제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을 상상한다." 충민공 임경업의 사판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난에 임하여 절개에 순절하였으니, 모두 감회가 간절하다." 충민공 이완, 충의공 최몽량의 묘에 각각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뜻을 같이하여 의에 순절하였으니, 그 절개가 참으로 고되고 그 자취가 참으로 기이하다." 충렬공 황호. 충장공 최효일의 사판에 각각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일당기사 143.

[사후 증직 칙령:]

참판 차예량, 참판 안극성, 참의 차충량, 참의 차원철, 참의 차맹윤, 장후건에게 모두 가회(加膺)의 전례를 시행하라.

증직 내용: 규장각 대제학 차예량은 종 2 품 가선대부로, 규장각 대제학 안극성은 종 2 품 가선대부로, 규장각 대제학 차충량은 종 2 품 가선대부로, 규장각 대제학 차원철은 종 2 품 가선대부로, 규장각 대제학 차맹윤은 종 2 품 가선대부로, 규장각 대제학 장후나는 종 2 품 가선대부로 각각 추서한다.

의주-평양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동방이 낳은 으뜸 성인이시다! 묘상이 근엄하다." 숭녕전에 평안도 관찰사를 보내 제사하게 하라.

"의복 덮은 훌륭한 무덤이 강동 지역에 있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단군릉이라 일컫지만, 잡초에 묻혀 다스려지지 못하고, 특히 숭봉의 예가 빠져 있다. 이제부터 봉식(封植)·수호의 절차를 준비하여 시행하라."

"인현(仁賢)의 팔조의 도가 사람 사이의 교화를 열어 만세토록 의지할 바가 되었다." 숭인전에 평안남도 관찰사를 보내 제사하게 하라.

기자의 능에는 시종을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동명왕의 능에는 지방관을 보내 살펴 보고 올리게 하라.

"여기는 고구려의 옛 강역이다. 되새겨 보건대, 을지문덕은 웅대한 모략으로 적을 꺾고 국위를 떨쳤다. 천재가 멀다 하나 영기는 줄지 않았다. 그 묘역을 방문·수리하고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사승이 이미 바르고 학문이 더욱 심오하여, 관서 사림이 본받는 바이다." 포정(判書) 선우—시호 문간(文簡)—[주: 찬양문 일부 훼손·생략]—특히 '절혜(節惠)의 전례'를 베풀라.

"경을 궁구하고 행실을 돈독히 함은 근래 인사의 모범이다."고 집의 박문일, 고 군수 박문오에게 함께 추은(追恩)을 베풀라.

박문일을 정 3 품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으로 추증한다.

박문오를 정 3 품 통정대부 홍문관 제학으로 추증한다.

"양의공 김경서, 양무공 정봉수는 충용이 곧고 굳세어 산서(西) 지방의 희망이었다." 각그 묘에 지방관을 보내 제사하게 하라.

개성-경성 간 연로에서 받든 성지:

묵청전에 장례원경을 보내 살피고 돌아오게 하라.

일당기사 145.

일당기사 146.

칙. 주(奏).

환가 다음 날 아침, 내외국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 인정전에 나아가 황제 폐하께 하례를 진달하고, 칙어에 대해 몇 마디 아뢰었다.

"이번 순행에 종참한 여러 신하들의 근로는 매우 가상하다. 각기 집에 돌아가 피곤을 쉬고 조용히 요양하라."

이번 어가의 남·서 순행은 전후 2주 이상에 걸쳤으나, 천시가 한랭한 때에도 기후가 매우 온화하였으니, 이는 상천이 내린 감응이라 믿는다. 또 수일간의 주행에도 불구하고 옥체가 건강하시어, 걸으실 때에도 부축을 물리치셨으니, 이는 민국의 경행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동양의 큰 복이라 하겠다.

기양클럽 및 개성 한일 관민 환영회에서의 후의 연설.

아울러 참조.

사법 및 감옥 사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소네 통감은 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할 것을 후에게 권고하였고, 후는 이를 각의에 제출하여 내부에 통지하고, 이유를 갖추어 상주하여, 마침내 그 안이 약정되었다.

隆熙 3 년 7 월 10 일 오후 3 시, 후는 통감부 원유회에서 이토 공의 송별회를 배석하였다. 연회가 끝난 뒤, 별도로 소네 통감의 청에 따라 관저를 방문하니, 통감은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여, 인민의 생명·재산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날 11 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임시로 어동 황금정 본저에서 각 대신을 회동하여 그 안을 제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마침 내가 곁에 있어 직접 보고 들었으므로, 그 요지를 아래에 약기한다.

먼저 탁지부대신 임선준이 말하였다. "우리나라가 500 여 년 동안 자유로이 행사하던 법권을 하루아침에 이웃 나라에 위탁한다면, 이로부터 이후로는 나라라 할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나라의 전멸의 가을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소위 국무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미 국민을 안정된 지위에 두지 못하였거니와, 끝내우리 스스로 몰아 그물을 치운다면, 어떤 책임과 어떤 면목으로 세상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에 대해서는 단연코 시행하지 않고, 차라리 총사직을 제출하고 물러남을 제일의 양책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대신 이재곤이 말하였다. "탁지부대신의 논의가 절당합니다. 나의 뜻도 또한 그러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총사직을 하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대신 박제순이 말하였다. "탁지부대신의 논의를 불가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신 이병무가 말하였다. "나는 중의(衆議)를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부대신 고영희가 말하였다. "다른 대신들의 언설의 가부를 들을 겨를도 없이, 홀로 결단하여 사직 자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각건대 내가 법부 장관의 자리에 있어, 내 손으로 법권을 남에게 양도한다면, 그 죄는 다른 대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나는 먼저 단독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회의실을 나서서 나를 불러 근래 각 대신이 사직할 때 총리대신에게 제출하는 청원서의 서식을 베껴주길 청하고. 내일 이곳에 다시 모일 때 비전해 주길 부탁하였으며, 나는 이에 응낙하였다.

다음으로 농상대신 조중응이 말하였다. "각 대신의 논의는 이치가 있는 듯하나 시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사직한 뒤에 후임 내각은 반드시 오늘 우리와 같은 취지로 이 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행되기에 이른다면, 차라리지금 우리 내각에서 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 내각은 수년이래 민정을 숙찰하고 조치 방법을 강구해 왔으므로, 오늘 이 안을 시행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양해를 얻을 길이 있지만, 후임 내각에서는 우리가 이미 강구한 바와 같은 교섭 방침이 없을 것이니 반드시 실책의 탄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향들을 고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후는 가부의 언설을 달리 하지 않았고, 이날 밤 오쿠보 대장의 만찬—이토 공의 송별—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의안은 내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산회하였다.

다음날 12일, 다시 회의하였으나 논의가 같지 않았다. 끝내 탁지대신의 제의에 따라 총사직으로 결정하고, 내일 아침에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오후 1 시경 파하고, 후는 곧 법부대신 고영희를 대동하여 내부에 통지하였다. 이튿날 13일 새벽, 나는 후의 명을 받고 어동으로 왔다. 후는 법부대신과 농상대신 두 곳을 제외하고, 다른 각 대신의 댁에 전화하여 "모 의안은 이미 귀결되었으니, 올 필요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게 하였다. 어제 고·법대에서 부탁받은 청원서를 제공할 가부를 묻자, 후는 "사건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 또한 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안을 전면 거절한 자는 임·탁대, 이·학대, 고·법대 세 사람뿐이었으나,

각서.

그날 산회 후, 고·법대는 그 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임·탁대·이·학대 두 사람 외에는 모두 동의하게 되었다. 과반수의 결과로 후는 이를 채택하였다.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개선하여 한국 신민 및 재한 외국 신민과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확실히 하고,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히 할목적에서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 일본 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에 임용한다.

제 3 조 재한 일본 재판소는 조약 또는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 신민에 대하여는 한국 법규를 적용한다.

제 4 조 한국 지방관청 및 공리는 각 그 직무에 응하여 사법 및 감옥 사무에 관해 재한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또는 그 보조를 한다.

제 5 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 각기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각서 한일 양본 2 통을 작성하여 이를 교환하고, 장래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 조인한다.

隆熙 3 년 7 월 12 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명치 42 년 7 월 12 일

통감 자작 소네 아라스케.

최근 시행한 법률은 주로 '형법대전'을 준용한 것이나, 방대하여 여기에 게재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법령의 총목만 아래에 개록한다.

현행 제 법령:

법원조직법(…개정), 지방재판소, 민·형사 재판, 한성부 및 각 개항시장 재판소(한성·인천·부산·원산·경흥·무안·삼화·창원·성진·옥구·룡천·의주), 순회재판소(월 3 회 개정), 상소·항소 절차, 평이원 개칭 고등재판소, 법관·검사·주사·서리, 재판용어, 평의 및 선고, 검사의 직제·권한, 형사소송, 법원처무 규정, 지방재판소 처무세칙, 순회재판소 세칙, 신문지법, 보안법, 감옥 규칙 및 세칙(감방 비품·위생·사망·접견·자백·징벌 등). [주: 손상된 목록의 충실한 요지 번역.]

동년 10월 21일, 내각례회 후 내부에 통지하고, 탁지부대신 및 학부대신의 임면 건을 칙수하였으며, 이로써 신임 각원의 친임식을 거행하였다.

위와 같이 단연 총사직을 약속하였던 임·탁대, 이·학대 두 사람은, 그 문제의 귀결이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의의 바람에 따라 출사할 수 없었다. 처음의 언설을 이행하고 거듭 사직을 제출한 결과, 마침내 오늘 새로운 조직이행해지게 되었다.

일당기사 161.

칙. 일당기사 162.

칙: 탁지부대신 임선준, 학부대신 이재곤은 청원에 따라 본관을 면한다.

법부대신 고영희는 탁지부대신에 임명한다.

정 2 품 이용식은 학부대신에 임명한다.

탁지부대신 고영희는 법부대신을 겸임하여 임시로 사무를 서리한다.

대련만(大連灣)으로 조문 행차.

공작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변을 당했다는 보고를 접하자, 각처에 조전(弔電)을 발송하고, 또 정부 대표로 조위를 위하여 경성을 떠나 대련만으로 향하였다.

隆熙 3 년 10 월 26 일 오전 9 시, 인천항 정박 중인 광제호 선장의 초청에 응하여 갔는데, 이토 공이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견하던 당일 변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곧바로 상경하여 통감 관저에 가 조의를 표하고, 각처에 조전을 발송하였다.

대련 전보.

"이토 공 일행은 26 일 오전 9 시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러시아 재무대신이 열차 내로 내방하였다. 약 20 분간 담화한 뒤,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 무라카미 씨의 인도로 일행이 하차하였다. 노청(露清) 양국 군대 및 각국 외교단, 노청 양국의 문무관과 기타환영 제 단체가 정렬해 있는 앞을 걸었고, 양국 대관 및 각국 단체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일본인 단체가 정렬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순간, 러시아 군대가 정렬한쪽에서 갑자기 폭죽을 터뜨리는 듯한 폭성이 났다. 일순간 탄환 세 발이 공의 오른쪽복부와 배부에 명중하였다. 남만철도 총재 나카무라 씨가 즉시 이토 공을 안아일으켰고, 러시아 관헌의 구조 아래 열차로 돌아갔다. 고야마 의사가 준비한 붕대로 동여매고, 환영차 온 일본인 의사 두 명과 함께 러시아 병원으로 가, 그 병원 의사들과함께 응급처치를 했으나, 30 분 후 마침내 절명하였다. 공은 임종 직전에 '흉행을 한자가 누구인가'라고 묻고, 다시 한번 물었다."

이후의 소문(所聞):

"흉행한 자는 20 세 가량의 조선 청년으로, 소지한 흉기는 7 연발 권총이었다. 첫 번째 총격은 이토 공을, 두 번째는 그곳 주재 일본 영사 무라카미 씨의 오른팔과 가슴을, 세 번째는 비서관 모리 씨의 오른팔과 뺨을, 마지막에는 만철 이사 다나카 씨의 오른발을 맞혔다. 그 흉행자는 '조선인이 이토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한하여 보복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의 유해는 26 일 오전 11 시 하얼빈을 출발하여, 그날 오후 5 시 장춘에 도착하고, 6 시에 다시 출발하여 27 일 오전 9 시 대련에 도착하였다."

"흉행자의 경력: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25 일 오후 9 시 하얼빈에 도착했다고 자백하였다. 복색은 양복을 입어 언뜻 보기엔 일본인 같았고, 체포 및 심문 시 태도는 태연자약하였다. 러시아 관헌의 엄중한 심문 후 일본에 인도될 것이라고 한다." 하얼빈에 체류 중이던 이토 공의 비서관 후루야 히사츠나와, 아들 박국(博邦)에게 조위를 표하는 전보를 보냈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의 조문 전보. [주: 표제]

이튿날 27일, 칙사 일행과 함께 오전 8시 40분 남대문발 열차로 9시 43분 인천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소형선으로 광제호가 정박한 곳으로 향하여 10시 10분 승선하였다. 동승한 인원은, 대황제 폐하의 칙사로는 시종원경 윤덕영, 태황제 폐하의 칙사로는 승녕부 총관 조민희, 통감부에서는 외무부장 나베시마 게이자부로, 통역관 도리이

타데요시·소노키 스에키, 경성지방재판소 검사장 나카가와, 통감대리 소네 간지 등이었다.

같은 날 오전 11 시 출항, 시속 12 노트로 곧장 여순구로 향했다.

일당기사 166-168.

다음날 28 일 오전 8 시, 대련만에서 칙사 일행이 탑승한 광제호를 영접하고 경위를 맡기 위해 특별 파견된 일본 수뢰정 4 척(아오타카·하토·와시·카리)을 만났다. '아오타카'에서 신호하여, 이토 공작의 영구는 대련만에서 일본 군함 아키쓰시마에 탑재되어 오전 11 시에 출항하니, 대련으로 회항하여 급속히 항해하지 않으면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광제호는 귀정의 신호에 따라 즉시 대련만으로 회항하며, 귀정은 먼저 쾌속으로 입항하고, 칙사 일행은 본선으로 이제 막 항진 중이라 만일 출항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잠시 귀함의 출항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뢰정이 이를 허락하자, 광제호는 더욱 속력을 내어 오전 11 시 대련만에 도착하였다. 이에 나베시마 외무부장은 군함 아키쓰시마에 전행(前往)하여, 군함 출항 후 해상에서 칙사 일행을 영접할 절차를 교섭하였고, 그렇게 결정되었다. 이토 공 변후, 영구가 대련만에 도착한 뒤, 대련 거류 일본인들의 분격 소요하는 정황이 드러나…

사건 사태가 변없이 지나가리라 담보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광제호는 감히 항구어귀로 나아가지 않았다. 군함 아키츠시마가 출항하기를 기다렸고, 오전 11 시에이르러 아키츠시마가 서서히 출항하여 광제호가 정박하려 하던 전면으로 나아가정지하였다.

이미 공작의 붕어 공고가 반포되었음을 알고, 칙사 일행은 모두 상장을 달고 소형정에 올라 정지한 군함으로 나아가, 우현에서 차례로 승함하였다. 군함에서는 함장을 비롯한 장교·수병 등 전 승조원이 도열하여 칙사 일행을 예로써 맞이하였고, 일행은 이토 공의 유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유구는 선미의 함장 공실에 봉안되어 있었고, 비서관 후루야 히사쓰나는 조문을 받았다. 윤 칙사와 조 칙사는 차례로 조의의 칙어를 전달하였다. 이어 나는 정부 대표로서 조문사를 낭독하였고, 다음으로 한성부민회장 유길담도

한성부민을 대표하여 조문사를 하였다. 그 뒤 모두 유구를 정면으로 향해 경례하고 하선하였다.

[일당기사 - 칙]

칙사 일행이 하선한 뒤, 군함 아키츠시마는 곧 항진하였고, 우리 배에서 멀리 송별을 고한 때가 정오 12 시였다. 일행은 같은 날 오후 1 시경 광제호로 귀한의 길에 올랐다.

나는 대련에서 입경하자마자 내알현을 올려 은전 조칙을 삼가 받들어 거행하였고, 황태자 이왕 은의 복제 거행을 주청하였으며, 또 내각에 명하여 성내에 조의를 표시하게 하였다. 10월 29일 대련에서 한성으로 환착하자 곧바로 내알현을 마치고, 황태자 전하께서 동 공을 위하여 입을 복제의 예규를 주청하였으며, 또한 내각에 명하여 성내 각처에 조의 표지를 보이게 하였다.

현자를 꺼리지 않으셨던 황태자 태사 이토 히로부미는 영령의 기운을 품고, 구제의 책략을 갖추어, 시운을 만회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자기 몸으로 책임졌으며, 우뚝 동양의 지주가 되었노라. 일찍이 평화의 대국면을 주로 삼고, 한일 관계에 지극히 간절히 힘썼다. 일찍이 우리 나라에 왕래하여 위급을 구제하고, 오로지 큰 도모에 의지하였다. 근래 통감으로서 상주하여 수시로 뵙고, 간곡히 성심으로 교도하였다. 곧이어 태사의 임무를 맡아 우리 동궁을 보도하여 예학을 진전시키되, 다함이 없었다. 연령이 늘고 여정이 길었어도 시찰에 따랐고, 노곤이 채 풀리지 않은 뒤에도 또 요만(요동·만주)의 행차가 있었으니, 날로 의지할 바였다. 어찌 뜻밖의 변고가 생길줄이야! 악보가 갑자기 이르니, 진동하고 통애함이 그칠 바가 없었다. 고로 이토 태사의 상을 당하여, 특별히 의친왕 강을 파견하여 제사를 드리고 조우케 하노라. 장례의 필요는 내무부로 하여금 수송하게 하노라. 덕행과 문장은 일문일한에 능하였고, 나라를 헤아려 이를 충이라 하였으니, 이를 합자(합동 기록)에 기재하라.

[주: '하(下)'는 일본에 비해 조선을 '아래'로 지칭한 용례; '의친왕 강'은 의친왕.]

황태자 전하는 황태자 태사 이토 공작의 상에 대하여, 금월 28 일부터 석 달 동안 사제(師弟)의 예로 복제 정례를 시행하시도록 하였다.

이토 공의 붕어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3 일간 한성 내의 음악과 가곡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융희 3 년 11 월, 일본 도쿄에서 동 공작의 국장(國葬)이 거행되었다.

[일당기사]

이 날 일본국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동 공작의 국장이 거행되었고, 정부 대표로 조중응 농상을 파견하여 조문케 하였다. 본국에서는 같은 날 장충단에서 정부 대표로서 내가 추도제를 거행하였고, 당일 정부는 10 만 엔을 보냈으니, 명의는 은사금이었다.

종현 가톨릭 교당 앞에서의 피습.

융희 3 년 12 월 22 일(기유), 오전. 한성부 남부 종현(현 명…)에서.

[불국(프랑스)]

…(명동) 가톨릭 교당…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 세의 추도식에 참례하고, 귀로에 같은 교당 앞에서 불의의 난을 만났다. 때는 같은 날 11 시 30 분경이었다.

그 시각 예식을 마치고 관저로 돌아가려 하여, 교당을 나와 동측 비탈길에서 인력거로 막 출발하려는 참에, 양복 차림에 단발한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품에 든 칼을 번쩍들고 인력거 뒤에서 쫓아와 먼저 왼쪽 어깨를 찔렀다. 내가 이를 피하려고 몸을 돌려하차하였더니 또 오른편 요부를 찔렀다. 나는 그대로 혼절하여 곁으로 쓰러졌고, 그 뒤의 일은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때 인력거꾼 박원문이 가까이 내 곁에 있었기에, 흉한이 범행할 때 중간에서 저지했기 때문인지 어깨를 찔렸고, 흉한이 몸을 솟구쳐 나를 추격하려던 순간, 한인 보호 순사이한철이 뒤에서 그를 붙잡았으며, 이어 일본인 보호 순사들이 달려와 흉한의 넓적다리를 칼로 찔러 체포하였다.

나는 내빈들의 인력거꾼 보호에 의지하여 급히 어동의 본저로 들려졌고, 인력거꾼 박원문은 특허국 진열소 앞에 이르러 쓰러져 숨졌다.

1. 좌측 견갑골 상부 연조직 자창 1 곳.

[의학 기록]

깊이 약 10cm 로, 폐를 손상시켰으나 크지 않음.

우측 신장 부위 자창 1 곳.

요부 자창 1 곳. 단, 이 두 곳은 서로 통해 있었다.

이상의 상처는 모두 심창으로 출혈이 많았고, 체온은 35 도 이하로 내려가며, 맥박은 요동하여 빈사 상태였다. 그러나 긴급 보고로 한성병원의 쓰루타 의사와, 총독의 명으로 기쿠치 원장이 왔다.

…그리고 안동 원장이 와서 진찰하였고. 대략 30분 후 대한국병원 부…

···고카이(高階) 부원장과 스즈키 의원 등이 간호사 두 명을 거느리고 와서 응급 치료를 시행한 결과, 점차 위급한 경계를 벗어났다. 전의 박종환, 안상호는 쾌유까지 칙명을 받고 날마다 내진하였다.

같은 날 오후 3 시 30 분 이후 증상 변동: 체온 36.2℃ 내외, 맥박 36 내외, 호흡 110 내외.

입원에서 퇴원까지 대략 53 일 동안의 최고·최저 수치:

체온 최고 38.5℃, 최저 36.2℃; 맥박 최고 118, 최저 60; 호흡 최고 110 내외, 최저 20. 일일 식사: 우유, 미음 등 음료.

[일당기사]

금후 내각 정례회의의 결재 표제는 내부대신에게, 집행 사무는 서기관장에게 위임하고, 비서관은 각의 일 외에는 관저의 일체 응접을 맡는다. 내각회의는 원래 매주 월·목 두 차례로 정하였으나, 금일부터 쾌유에 이르기까지 각 정례회에서 각 부의 청의안 가부 결재는 내부대신 박제순에게 위임하고, 날인은 나의 신장을 계속 사용한다. 내각의 일체 집행 사무는 서기관장 한창원에게 위임하되, 중대안의 서명·서경은 나의 명의를 계속 사용한다. 비서관은 때로 문서과장을 겸하였으므로, 각의일에만 출근하고 그 외에는 관저에 있어 응접을 맡았다.

기쿠치 원장의 권고로, 익일 23일 정오, 헌병 및 경찰의 호위 아래 입원하였고, 오후 3시에 수술을 시도하여, 6시경 회복하였다.

액운을 넘기고 평정하여 때때로 수면을 취했고, 맥박은 다소 충실하였다. 기쿠치 원장은 가택 치료는 기계·사람의 편의가 없을 뿐 아니라 군중이 혼잡하여 불결의 혐의가 있다 하여—

―입회자―

어동 본저를 떠나 오후 1 시경 대한병원에 도착, 교화당 5 호실에 입원하였다. 원장의 말에 따라, 수술하지 않으면 치유가 어렵다는 뜻이어서, 백씨 남작이 이 뜻을 내게 전하고, 나는 다만 한마디 "나 또한 그러하다"라 하고, 또 나의 신장을 사용하되 타인의 보증은 요구할 필요 없다고 하였다. 이에 그 말대로 절차를 마치고, 3 시 50 분부터 다른 방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원장이 친히 집도하고, 부원장은 한 손에 시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환자의 맥을 짚었으며, 박사 한 명이 원장을 도왔고, 간호사 한 명이 약솜 등을 다루었다. 이 밖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실내는 수증기로 덥혔다. 입증인들은 맞은편 협실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수술실을 바라보며 시종 입회하였다.

조카(비서). 조카딸…; 백씨…

오후 4 시 40 분 수술을 끝내고 원 치료실로 돌아왔으나, 나는 연고를 끊은 듯 혼수상태로 침상에 누웠다. 머리 좌우에는 한일 양국 비서관이 나뉘어 앉았고, 실내 한쪽에는 가족과 원장·부원장 및 다른 박사·간호사들이 일렬로 앉아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지극히 고요한 태세로 그저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오후 6시 15분경 처음으로 미약하게 눈을 떴고, 다시 대략 30분 후 또 눈을 떠 동자를 굴리며 인면을 훑어보았다. 그때 백씨가 내게 마주 서서 "나는 누구인가?" 시험하니, 나는 미소하며 "그대에게 무슨 일인가?"라고 답하였다. 이에 내가 회생했음이 의심없이 확연하였다. 두 비서관과 가족 일동이 기립하여 정식으로 원장 등 제씨에게 감사의 예를 행하였고, 일반의 환희는 붓으로 다할 수 없었다.

원장이 말하기를 "오늘 밤 간호하시는 분들은 모름지기 정숙을 지키시오. 내일 정오가 되면 자연히 음식을 찾을 것이니, 음료를 소량씩 주시오."라 하였고, 과연 그 말과 같이 되어 누구든 그 정묘한 술기에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한 박사가 말하기를 "첫 자창은 폐부에 가깝지만, 다행히 가로 지나가 폐경을 상하지 않았다. 둘째 자창은 신경(腎莖) 부위에 가깝지만, 다행히 칼끝이 신경 사이를 스쳐 지나갔을 뿐이니 큰 우려는 없다. 그러나 뜻밖에 상처가 깊으므로 현재의 경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일 뒤 비로소 원장의 직접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오른쪽 어깨의 칼끝이 좌폐를 관통하였다. 관통공을 검사해보니 호흡할 때마다 공기가 새어 나와 폐기종이 생길 우려가 보였으며, 이 관통이 치명상이었다. 더 나아가—

[기록]

— 요부의 상처를 검사하니, 다행히 신장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상창이 뜻밖에 깊고 크므로, 가령 폐부 손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치명상에 해당할 만하였다. 수술 경과는 오히려 양호하여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었다. 내가 시시각각 변태를 우려하였다. 수술은 출혈과 오염을 모두 제거하고 충분한 처치를 시행했으나, 이러한 중상으로 인해 오늘·내일은 헤아릴 수 없는 위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설령 다행히 예후가 양호하여 우려할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려면 적어도 30 일의 경과가 필요하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나 피섞인 가래가 다소 줄었고, 붕대를 교체할 때도 특별한 동통을 느끼지 않았으며, 화농의 징후도 보이지 않아, 주치의도 차차 경계를 늦추게 되었다.

음료는 매 시간 조금씩 들었고, 5 분 또는 10 분씩 선잠을 자곤 했으며, 때로는 낮에도 오랜 단잠을 이루었다. 때때로 머리를 돌리며 점차 정신이 예전 같아졌고, 말을 또렷이 하여 소완(완쾌)의 희망이 확실해졌다.

용희 4 년 1 월 18 일부터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병상에서 앉을 수 있었고, 27 일에는 실외 보행을 하였으며, 29 일에는 정원을 산책할 수 있었다.

융희 4 년 2 월 14 일 오후 1 시에 퇴원하였다. 간호사들에게 몇 마디 감사의 뜻을 표하고, 헌병 및 경찰의 호위를 받아 어동 본저로 돌아왔다.

간호사에게 한 감사의 말: "짐은 입원 이래 빈사한 병으로 수삭 동안, 제군의 간호에 진력해 주신 결과,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퇴원의 성적을 보게 되었소. 짐의 신상에 관한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제군에게 대한 심대한 감사의 뜻도 잠시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소."

[일당기사]

종사 및 간호를 종시 담당한 자:

대한병원장 기쿠치 조사부로; 부원장 …; 의원 모리 야스렌키치; 조수 …; 스즈키 겐노스케; 무라카미 …; 사무관; 간호부; 한성병원장 …; 의원 다나카 시게…, 이시오 …, 고지마 다카사토…, 안 도이치로; …; 내각 비서관 가미무라 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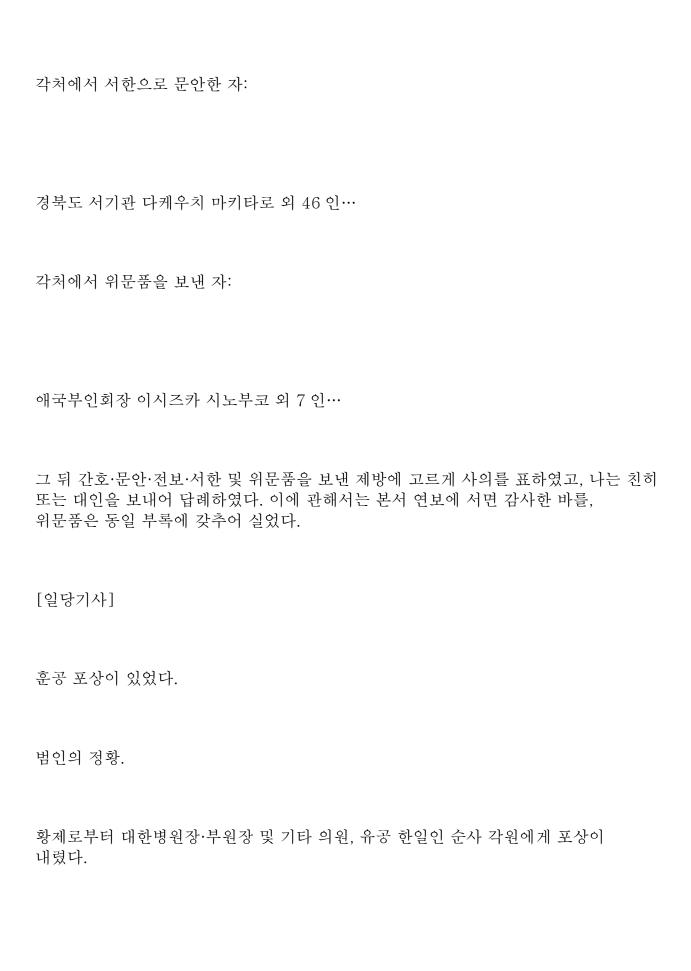
각처에서 친히 문안한 자:

황제 폐하의 칙사—시종 김황진, 입원부터 퇴원까지; 각 시종 매일 1회; 시중대부 윤응선 상…; 황후 폐하의 사자; 태황제 폐하의 칙사; 경선궁 전하의 파견원; 의친왕 전하의 파견원; (전) 통감의 파견원; 오쿠보 대장의 파견원; 통감부 총무장관 이하; 황족…

…각 부 대신 제씨; 내각 서기관장 이하 일동; 각 부·부·원·청 문무 친칙·주임관 일동; 헌병대·경찰서 고등관 이상 일동; 일본국 가쓰라 총리대신의 파견원—감찰 사타케 요시준; 한성 주재 영·미·지·불·독·의·로 각국 총영사 일동; 각 단체 회원.

각처에서 전보로 문안한 자:

벨기에 국왕; 외부대신 오하라 …; 황태자 전하 관방; 도쿄 유학 중인 이왕 은 전하; 도쿄 황태자 부속 직원; 기타 다수—일일이 들 수 없음; 함흥·대구 지방재판소장 이하 일동; 용산 민단장 이하; 평양 민단장 이하; 해주 지방재판소장 및 검사장; 군장 구라타, 오카; 인천·원산 이사; 충남 내무부장 누마즈 시치로; 수원 한성은행 지점; 각 도 관찰사; 전 재무부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 등.



범인은 현지에서 체포되자 곧바로 어동저의 보호 순사실로 인치되었다. 골격이 건장하고 피부가 희었으며, 평양 출신 이재명이라 칭했는데, 나이 스물셋이었다. 오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류하였고, 기독교를 내세워 늘 한일의 친선을 저해하는 데 전력하고 반일 운동에 극력하다가, 일진회의 합방 제의를 듣고 결연히 귀국하였다 한다.

또 자백하여 말하길, 처음에 일진회의 성명서를 보고 동 회장 이용구를 자결(刺殺)할 결심을 하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조급하던 중, 내각에서 '5 조'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고(전에 고도지대신이 일본에 갔을 때 5 조를 체결했다는 풍설), 이 수상을 자살(刺殺)할 생각을 하여 마침내 이번 범행을 연출한 것이니, 결코 사사로운 원한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범행에 쓸 단도는 길이 9 촌 5 분 남짓, 전장은 9 촌 남짓으로 매우 예리하였고, 한일 양국에서는 그와 같은 종류를 보기 어려우며, 러시아제인 듯하다고 한다.

범인은 당일 오후 2 시경 어동저 보호 순사실에서 경시청으로 압송되었다. 경시청에 인치된 뒤 곧바로 사진 촬영을 하려 하니, 그는 흐트러진 머리를 두 손으로 다듬고, 흰 개건을 단정히 다시 매고, 검은 상의의 깃을 열어 양복 상의를 약간 드러내고, 응득한 태도로 촬영대에 앉았다 한다.

22 일 종현 분서에서 미녀 두 명을 체포하였는데, 한 사람은 백소사, 한 사람은 오인성이라 칭하였다. 백소사는 범인의 정부(妓)의 생모이고, 오인성은 동 범인의 처였다. 평양 사람으로 융희 3 년 5 월경 상경하여 서부 야조현의 양심여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업에 전심하여 성적이 우수하여 고등과 반장이었다.

[일당기사]

그의 친구 한분삼, 이국필, 김교진 등 세 명이 23 일 밤 종현 분서에서 체포되었다.

판사.

범인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예심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조사 종료 후 곧바로 공판에 부쳐졌고, 공판을 맡을 법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재판장 쓰카하라 유타로; … 정 ○○; 검사 이토 도쿠준.

융희 4년 3월 13일 이재명에 대한 기소는 아래와 같다.

이전에 이토 검사가 조사 중이던 이 총상에 대한 흉행 범인 이재명 및 연루자 13 명에 관한 공소는 아래와 같이 어제 제기되었다. 한때 같은 범죄 조사 중 혐의를 받았던 임치정, 양한묵, 오상준, 최보현, 이교담, 송종…, 송종원, 안태국, 지린수, 정의도, 송인섭, 이재순, 김용석, 지석규 등 13 명은 불기소되었고, 이재순 이하 2 명은 아직 검거되지 못하였다. 피고 및 기소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23세) 기독교도, 평안남도 평양군 성내…;

김정…(21세) 기독교도, 동군 성내…;

오복원(25세) 천도교도, 대한병원 부속 의학교 학생, 강동군 …;

박태은(19세) 기독교도, 전 일본 메이지대학 중학과 학생, 평양군 홍루… 상인;

··· 목재상 김태선(43 세) 기독교도;

이응삼(29세) 기독교도, 약종상;

김병록, 대한병원 부속 의학교 학생;

김룡문(21세) 기독교도, 남산당(도피 중);

조창호(25세) 농업, 평양군 연면 구룡리;

김병현(22세) 기독교도, 평안북도 정주군 주상(도피 중);

이동수(26세) 기독교 목사, 평양군(도피 중);

이학필(25세) 사립 융흥소학교 교사, 동군 …;

김여걸(27세).

[주: 원문 일부 인명·지명은 판독 불완전.]

기소 사실:

1. 피고 이재명은 수년 전 미국에 건너가 노동에 종사하였다가. 1907 년 10 월경 귀국한 뒤 그때까지 체결된 두 차례의 일한협약이 한국에 불리하다고 오신하여 항상 이를 분개하였다. 1909 년 11 월경에 이르러,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주창하고 가까이 성명서를 공표하여 운동에 착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재명은 두 차례 협약을 체결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이번에 반드시 합방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때 차라리 이완용을 살해함이 계책이라 여겨 이완용 살해 음모를 꾸몄다. 같은 해 11 월 중 한성에서 피고 오복워. 김룡문 두 사람을 권유하여 음모의 동지로 참여케 하여 일체 승낙을 얻었다. 그리고 흉행 실행에 관하여 다른 동지를 모을 필요를 느껴, 같은 해 11월 하순 평양에 가서, 그달 하순부터 12 월 하순까지 그 사이 피고 박태은의 집에 피고 김정…. 이동수. 김태선, 이응삼 등을 초청하여, 이완용을 해할 음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김정…은 미리 일진회장 이용구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이완용을 살해하는 것보다 도리어 한일 합방의 주창자인 이용구를 살해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협의한 결과, 마침내 이와용과 이용구 두 사람을 동시에 협력하여 살해하기로 양측 의견이 일치하였고, 참석자 일동이 이에 찬성하였다. 계속하여 여러 차례 회합을 열었고, 피고 조창호도 이재명, 김정…이 앞서 제시한 음모를 도모하는 일을 알고 동의자로 가담하였다. 실행에 관해서는, 피고 이재명·이동수·김병록 세 사람이 이완용을 살해하는 임무를 맡고, 피고 김정…조창호 두 사람은 이용구를 살해하는 임무를 맡기로 협정하였다. 또 피고 오복원·박태은·이응삼 세 사람에게는 흉행 실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맡기고, 피고 김태선에게는 피고 조창호와 협력하여 타처에서 권총을 빌려

흉행에 쓰게 하고, 경성으로 운반하는 임무를 분담시키기로 정하였다. 이렇게 각자의 배치를 정하고 일체의 준비를 정돈하였으므로, 12월 12~13일경 다시 상경하여 남부 가재이동의 백소사 집에 유숙하고, 피고 김룡문에게도 이완용과 이용구 두 사람을 동시에 살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더니, 그도 곧 이에 찬성하였다.

의 번역

이재명 등의 범죄는 작년 말의 한일 합방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폭행을 정치에 관한 범죄로 인정한다. 이완용에 대한 주범은 이재명, 이용구에 대한 주범은 김정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범으로 정한다. 비록 정치에 관련된 일이라 하나, 두 주범은 본디 관직이 없었고, 이는 서양 이민에 먼저 갔던 자이며, 김은 평양에서 여학교를 설립한 자이니, 정치에 대하여는 몹시 우매하다고 보아야 한다. 본디 지위와 학문이 없고 합방 등의 일을 오해하여 정부 대신과 정당 수령을 살해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용구를 죽이려 하면서도 미끼로 이완용의 이름을 내세워 행살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애석하나 다른 한편으로 극히 악랄하다. 또한 주범을 도운 자는 본범과 다르지 않다. 학생들은 본래 정치에 관계가 없었고, 반일 사상을 품은 행동에서 나온 것이니, 그 경중에 따라 율에 비추어 처단함이 옳다.

이후 재판장은 압수한 흉기—탄환 봉함의 권총 2 정, 단도 2 자루, 낭도 1 자루—을 제시하고 피고들에게 물었다.

"흉행에 사용된 물건이 이것이냐."

이재명: "흉행이라니, 나는 '의거'라 이른다."

재판장: "피고들 가운데 변호사에게 변론권을 위임한 자는 차례로 변론하라. 그 밖에 진술할 바가 있으면 곧 진술하라." 김병록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일을 치르려 모의했는데, 이재명에게 모욕을 당했다."

판결 고지

의 번역

동 18 일 오전 10 시, 쓰카하라 재판장이 배석 재판관과 검사와 함께 피고의 성명을 일일이 점호한 뒤 판결문을 선고하였다. 주형은 이재명 사형(교형)이었다.

김 — 금고 5 년.

김병록 — [선고]. (일당기사)

[원문 난독 부분.]

(일당기사)

이동수 — 도주.

조창호 — 도주.

오복원 — 금고 [년].

김태선 — 금고.

김용문 — 금고 7년.

박태현 — 금고.

이응삼 — 금고 5 년.

현 — [—].

김여결 — 동; 동형.

이 — 도주.

[원문 난독 부분.]

이 선고 후 6월 30일, 이재명 이하 연루자들의 항소심 공판이 경성고등법원 제 1 법정에서 열렸고, 심문·응답의 전말은 1심과 다름이 없어 생략한다. 검사의 논고는 1심 판결이 완전무결하므로 그대로 유지함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한일 양국의 併合

융희 4 년 8 월 22 일(음), 황제께서 창덕궁 흥복헌에 나아가 구휼책을 물으시고, 이에 한일 합방의 체약에 관하여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칙을 받들어 거행하게 하셨다.

지난 해 12월 6일, 일진회장 이용구 등이 합방 문제를 제창하여 상주문 1통과 내각대신 앞으로의 장서를 내각에 제출하였으므로, 그다음 날 나는 통감부 회의에 배석한 뒤 내각에 출근하여 전날 접수한 일진회의 상주문과 장서를 해당 회에 반송하였다. 10일에는 중추원 의장의 조회와, 한성부민회장 유길준의 건백서를 접수하였다.

일당기사

상주문(일당기사)

의 번역

"일진회장 신 이용구 등 100 만 회원이 2 천만 신민을 대표하여, 전율하는 마음으로 백배 사배하여 대황제 폐하께 아룁니다. 사람이 막다른 데 이르면 근본으로 돌아가고, 슬픔이 깊으면 부모를 부르며, 병고가 참혹하면 하늘에 호소하지 아니함이 없나이다. 이제 폐하께서는 우리 2 천만 동포의 부모이시며, 우리 3 천리 강토의 하늘이시니, 하늘에 부르짖는 바를 폐하께 아뢰고, 부모를 부르는 바를 폐하께 올리오니, 어찌 감히 폐하께 울부짖겠습니까마는, 다만 바라옵건대 지극한 인자와 자비의 성덕을 굽혀 우리의 불충한 말을 들으시어 끝까지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우리의 괴로움은 실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는 우리만의 더러움이 아니오라, 우리 2 천만 동포가 참으로 죽고자 하나 죽지 못하고, 살고자 하나 살지 못하는 바가 있나이다. 오늘 대한국을 병자에 비유하면, 명맥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하였습니다…."

[상주문은 계속하여, '정의'라면 분명한 칙지로써 사수할 것을 명했어야 했다고 탄식하고, 예와 신의의 상실, 1894-95 년 이래의 화(禍), 외교적 동요를 비판하며, 조선·일본의 동족성·문자·풍속·지리의 근접 등을 들어 '한일합방'이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라 논증합니다.]

[주해: 한문 문장은 인용과 고사, 은유가 많아 연결된 산문으로 풀어 옮겼습니다. 의미상 모호한 곳은 맥락에 따라 일반화했습니다.]

의 번역

[이하 '장서'는 내각에 보낸 일진회의 장문으로, 같은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복함.]

일당기사

의 번역

일진회장 이용구 등이 100 만 회원과 2 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공손히 의견을 이완용 내각총리대신 각하께 올립니다.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대일본제국의 보호 아래 안전을 보전하게 되었사오나, 전후를 헤아리면 앞길이 멀고 근심이 큽니다. 세계의 대세가 변하고 국제경쟁이 격화됨은 필연의 추세입니다. 1894·95 년에 일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은 협약하여 외교·군사·사법의 삼대권을 대일본에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고 태평을 영구히 보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동아의 평화가 깨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군신이 유리하고 사직이 허물어질 우려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밤낮이 근심됩니다. 때와 일, 장래를 두루 살피건대,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길은 오직 한일합방을 실현함에 있는 듯합니다. 그 밖의 계책은 꾀변일 뿐, 시무에 응하고 대도에 합하는 바가 아닙니다. 삼가 논합니다…"

[이 장서는 일본의 '일관된 은혜'를 내세우며, 조선이 먼저 합방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리·민족·역사·종교·문학·풍속·경제·정치의 '합치'를 강조하여 분리는 약함, 합치는 강대라 주장합니다. 합방을 조선의 '자보'이자 일본의 '자위', 동아 안정을 위한 길로 규정합니다.]

이에 동방의 안녕의 근본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여 아시아 정세의 평화를 담보하고, 천하의 대세에 순응하려는 바이다. 이제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이미 정해졌고, 대일본제국의 성신(誠信)은 이미 우리 2 천만 대중의 심중을 감화하였다. 또한 세계 열국이 일한 관계를 용인하였으니, 그 사이에 다시 의논할 바가 결단코 없다. 전례가 없는 굉업을 책모할 시기는 오직 지금일 뿐이다. 삼가 2 천만 대중을 대표하여 의안을 각하께 올리오니, 각하는 백료를 대표하여 이를 천제께 아뢰어 주시기 바란다. 각하 또한 조정의 수반으로서 균형을 잡으시는 바,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이 결단에 있어 반드시 우리 이용구 등의 혈심과 같음을 감독하실 것이다. 이용구 등은 지극한 정성의 무거움을 감당하기 어렵다.

[한문] 隆熙 3 년 12 월 4 일. 일진회장 이용구, 동 일백만인.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각하귀하.

중추워의 조회.

정삼품 이순하의 헌의서를 접수·의결하였기에, 은밀히 그 안을 조사해 보니, 일진회장이용구의 성명서에 대하여 온 나라 신민의 공분이 끓어오를 뿐 아니라, 그 이른바상주의 글은 하늘을 모독하고 일본을 욕설함에 조금도 꺼림이 없다. 이것이 신하가 감히입밖에 낼 수 있는 말이겠는가. 이 문자가 세상에 공포된다면, 이는 그가 스스로 자초한단죄이니, 피를 뿌린 듯한 성토로 더는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 또 엄연히 말하건대, 이미 그 회의 두령이므로 소리와 기운의 화응을 알지 못할 리가 없다. 헌의서에 말한 바또한 지나친 말이 아니다. 죄상이 이와 같은데도 엄연히 본원 고문의 반열에 있다니, 어찌 본원의 치욕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본 헌의서를 첩부·공포함으로써 즉시 고문송병준을 파면하고, 그 외의 자들은 모두 헌의서에 따라 재판·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한문] 隆熙 3 년 12 월 9 일. 일당기사. 일당기사 44. 중추원장 김윤식. 태자소사·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각하.

이순하의 헌의서.

隆熙 3 년 12 월 9 일, 정삼품 이순하의 일진회 성토 의안에 관하여, 찬의 조영희의 발론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래와 같다.

[한문] 의장: 윤식. 장: 이근. 찬의: 홍승목, 김만수(가/미), 남규희(가), 조영희, 이재정(가 가 가)… 박승봉(가), 이학규(가), 박경양(가)… 송영대(미), 이응식—, 하—, 정—, 윤병호—. 일당기사. 정난교, 변정상(가 가), 고영창(가), 유창(가 가)… 미/가… 미진, 가. 일당기사. 정병조(미).

[주] 원문은 명단이 단편적으로 전하며, '가(可)', '미(未)', '미진(未進)' 등의 표기는 원문 그대로 옮겼음.

유길준의 건백서.

[한문] 중추원 인(印).

삼가 아룁니다. 한성부민들은 그 지극히 악대한 일진회의 흉악한 글에 대하여 충의의 분기가 격발하여, 만구가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에 따라 저 일진회를 해산할 것과, 그 흉서를 앞장서 배포한 국민신보사를 폐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며, 이를 시행해 주시기를 우러러 바라는 바, 민원의 바람이 여기에 있기에 이에 건백합니다.

[한문] 隆熙 3 년 12 월 10 일. 태자소사·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각하. 한성부민회장 유길담.

그날 이후, 합방 문제에 관한 시의(是議)·비의(非議)가 있었음을 들은 바를 대략 적으면, 국민대연설회와 대한협회가 협의하여 국민대회를 발기하고, 각 지방 각 사회에 두루 통첩을 발하여 일진회의 행동을 성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며,

국민대연설회에서는 전일 오후 회장 민영소가 참석하여 회무를 처리한 뒤, 임시회의를 열고 간사 1 백 명을 추가 선출하였다 하며.

일진회 부회장 홍긍섭과 총무 윤길병은 이번 회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 동포의 일대 죄인임을 자인하고 곧바로 퇴회하였고, 경향 각처의 일진회원들도 다수 퇴회하였다 하며,

일진회는 성명서를 한성부 내 거주 각 관료·각 사회에 송부하고, 한밤중에 모르게 각 가호에 암투하였으나, 민인들은 이를 찢어 버렸고, 민심이 매우 불온하였다 하였다. 같은 해 8 월 22 일 오후 1 시경, "각 대신을 거느리고 입대하라"는 칙을 받고 양심각에 나아갔더니, "중추원장 김윤식과 시종무관장 이병무도 또한 속히 시하라"는 어명과, 내전에서부터 운현 흥친왕 이희에게도 전화로 소명이 내려졌다.

[한문] 일당기사 248. 칙.

일동이 모이자, 폐하께서 흥복헌에 임어하셨다. 시종 한 사람이 나와 "친왕과 각 대신·의장 모두 함께 입시하라"는 칙을 전하고, 각원이 차례로 전진하니, 궁내부대신 민병석과 시종원경 윤덕영이 먼저 나아가 시립하였고, 구휼책을 하문하는 칙어가 내렸다.

"짐은 선황 폐하로부터 백성의 안녕을 담당하는 대임을 이어받아 이제 4년에 이르도록 침식이 편치 않았다. 작년에 스스로 지방 백성의 형편을 시찰하니 그 어두움과 빈궁함이 천하에 견줄 데가 없고, 짐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도달케 할 수 없다. 천오백만* 백성이 골짜기를 메우는 화가 눈앞에 있다. [주] 원문 숫자는 '천오백만'으로, 당시 전 인구를 가리키는 호칭적 표현으로 이해됨. 이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이와 같은 궁민을 동양의 선진 유덕한 일본 천황에게 위탁하여 위태로움을 돌려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천명에 마땅하다. 짐의 일신을 1천 5백만 백성을 위하여 잠시 희생함을 감수하고, 후일 역사상의 조롱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이미 정하였으므로, 이제 황족 대표와 내각 대신, 좌중 제현에게 반포한다. 제현 가운데 만약 백성을 구휼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듣게 하라. 또한 국본인 백성만을 생각하여 국명의 형식은 구하지 않으니. 경들은 이 절박함을 능히 극복하라."

이에 후공(侯)에게 명하여 일한 양국 병합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니, 이어 흥왕이 아뢰기를, "국세의 위급함은 금일만의 일이 아니며, 오늘의 결과는 불가피한데, 또 태황 폐하 수십 년의 실덕을 말하자면 누가 오늘의 일을 예측하지 못했겠는가" 등이라 하였다. [주] '태황'은 대황제(황태후/고종)에 관한 회고적 질책으로 간접화법으로 전해짐.

후공이 아뢰기를, "만약 백성을 구제할 양책이 있다면 청컨대 듣게 하소서"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달할 말이 과연 없었고, 다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스스로 끌어안고 두려워 떨 뿐이었다. 제 대신은 묵연하여 한 마디의 주청도 없었다. 이에 후공은 전권위임장을 공손히 받들고 곧바로 통감부로 가서,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와서로 협의한 뒤 병합안에 조인하였다.

[한문] 병합조약. 오.

대일본제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한 것이 없다고 확신하여,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데라우치 마사타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 그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오른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하여 다음 조항을 협정하였다.

제 1 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 2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적으로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낙한다.

[한문] 일당기사.

제 3 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한국 황제페하, 태황제페하, 황태자전하 및 그 비·후예로 하여금 각 그 지위에 맞는 존칭·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한다.

제 4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게도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것을 약한다.

제 5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 있는 한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은금을 줄 수 있다.

제 6 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전적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그곳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가하며, 그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제 7 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제국 관료로 등용한다.

제 8 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며,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에 증거로써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한다.

[한문] 隆熙 4 년 8 월 22 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 년 8 월 22 일. 통감 자작데라우치 마사타케.

당일에 공손히 받은 전권위원 임장(任状)은 조인을 마친 뒤 궁내부에 환납하였고, 이에 통치권 양여의 조칙 재가의 건을 통감부에 비밀 통지하였으며, 곧바로 그 동의의 비밀 회신을 접수하였다.

본 안에 관한 내각·통감부 간 왕래 문서는 여기에서 발표하지 않으며, 또 잔무 처리 시에 칙(勅)에 속하는 일체 문서는 통감부에 인계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조칙 및 칙유를 아래에 기재하여 보존한다.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일한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써 피차 합하여 일가를 이루는 것은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바임을 생각한다. 이에 한국의 통치를 거둬 대일본국 황제폐하께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장차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회동하여 상의·협정케하였다. 제신들도 또한 확단한 바를 공경히 알아 집행하라."

"덕이 부족한 채 큰 일을 맡아 즉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유신의 정령에 관하여 급히 도모하고 시험하며 힘을 다하였으나 이르지 못하였다. 예로부터 누적된 약세가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에 달하여, 시일 사이에 반전할 조치의 바람도 없다. 주야로 우려하며 선후책이 막연하였다. 이 임무가 우리 손에 남아 있다면 지리(支離)가 심하여 종국을 수습하지 못할 것에 이를 것이다. 차라리 대임을 타인에게 맡겨 완전한 방법과 혁신의 공효를 거두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심을 경계하고 친히 결단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예부터 친신(親信) 의앙(依仰)해 온 이웃 대일본 황제폐하께 양여하여, 밖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도성 백성의 민생을 보전하고자 한다. 너희 대소민은 국세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피고, 소란을 피하며, 각기 그 업에 편안하라. 일본제국의 밝은 신정(新政)에 복종하고 복락을 함께 받아라. 오늘의이 거동은 너희 유중(有衆)을 잊어서가 아니라, 오직 너희 유중을 구치(救治)하려는 지의(至意)에서 나온 것이다. 신민 등은 이 뜻을 체득하라."

같은 달 29 일, 상기의 조칙·칙유·조약을 아울러 반포하고, 각 부·원·청에 명하여 각 항반포의 건은 같은 날자 관보에 한정하였다.

이날부터 조선총독부 관보가 시작되었으므로, 각 부·원·청의 각 항 반포의 건은 잔무가 종료될 때까지 본국 관보의 오늘 날짜로 소급하여 게재하였다.

금일 총독부 관보에, 폐하의 합방·책왕·우대·대사 등의 조서와 병합에 관한 제법령이 반포되었다.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할 필요를 생각하고, 또한국이 항상 화란의 근원임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하여 한국을 제국의 보호 아래에 두어 그 근원을 막고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후 4 년 남짓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시정 개선에 노력하였고, 또한 볼만한 성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제(現制)는 아직도 치안을 완전히 유지하기에 부족하여, 의구와 두려움이 나라 안에 늘 충만하고, 백성은 그 집에 편안하지 못하다.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현제에 혁신을 더함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문] (표제)

이에 한국 황제폐하와 함께 이 사태를 감안하여, 한국을 들어 일본제국에 병합하여 시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한국을 영구히 제국에 병합하기로 하였다.

한국 황제폐하와 황실 각원은 병합 후라도 상당한 우대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우리의 유화(綏撫) 아래 서서 그 행복을 증진할 것이고, 산업과 무역은 태평 속에 현저한 발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평화는 이에 의하여 그 기초가 더욱 공고해질 것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는다.

특히 조선총독을 두어, 그로 하여금 명을 받들어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 정무를 총괄하게 할 것이다. 백관 유사는 능히 짐의 뜻을 체득하여 사무에 종사하고, 시설의 경중·완급을 그 마땅함에 맞추어, 중서(衆庶)로 하여금 길이 다스림의 경사에 의지하게 하라.

[한문] 한황 책왕 조서.

"천지와 더불어 무궁한 큰 터전을 넓히고, 국가의 비상한 예수를 갖추고자 하여, 전한국 황제를 책하여 왕으로 삼고, 창덕궁 이왕이라 칭하게 한다. 이후 이 융택을 세습하여 그 종묘를 받들게 하며, 황태자와 장래의 세자는 왕세자로 삼고, 태황제는 태왕으로 하여 덕수궁 이태왕이라 칭하게 한다. 각 그 배필을 왕비·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삼고, 모두 황족의 예로 대우하며, 특별히 전하의 경칭을 쓰게 한다. 세가의 준행할 도리에 관하여는 마땅히 별도로 그 궤의를 정하고, 이가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이에 의지하여 복리(福履)를 더하여 길이 휴지를 누리게 하라. 이에 유중(有衆)에게 선시하여, 특별한 전례를 밝힌다."

근친 우대 조서.

"짐은 생각하건대, 이호와 이가는 이왕의 근친으로서 명성이 일찍이 드러나 감(權)역의 바라봄이 되었다. 마땅히 특별한 우대를 더하여 그 의칭을 풍성히 해야 하므로, 특별히 '공'으로 삼고, 그 배필을 '공비'로 삼으며, 아울러 황족의 예로 대우하고, 전하의 경칭을 쓰게 하며, 자손으로 하여금 이 영택을 세습하여 길이 총광을 누리게 하라."

대사 및 면세·감세 조서, 조선귀족령, 조선귀족령,

"통치의 대권이 이제 시작되어 우리 정치가 조선에 시행됨에 있어, 푸른 옷의 백성을 유화하고, 적자를 보살피려는 뜻을 밝힘보다 앞서는 바가 없다. 이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의 구형(舊刑)상 제 죄수 중 사정을 헤아릴 만한 자에게 특별히 대사를 시행하고, 누적된 체납 토지세와 금년의 조세를 감면하여, 짐의 극진한 염려를 알게한다.

또 이가의 근친과 국가에 큰 공로가 있었던 자는 마땅히 우열을 올려 서서(敍書)하여 조선귀족으로 삼아 은택을 베푼다. 그 구덕(舊德)과 전공을 등급하고, 세작의 전례를 정하여 '조선귀족령'으로 이를 재가·공포한다.

제 1 조 본령에 따라 작위를 수여받거나, 작위를 승습한 자를 조선귀족이라 한다. 작위자의 처는 조선귀족의 족칭을 향유한다.

제 2 조 이왕의 현존 혈족으로서 황족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 3 조 공·후·백·자·남의 5 등으로 한다.

제 4 조 작위 수여는 칙지로 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집행한다.

제 5 조 작위자는 화족령에 따른 작위자와 동일한 예우를 향유한다."

대체로 화족령과 큰 차이는 없으나, "상속인이 충순을 결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습작을 칙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또한 예우 정지·폐지 항에도 "충순을 결한 행위가 있는 자"가 있다.

[한문] 조선귀족령 부대(황족령 요령). 일당기사.

조선에 거주하는 귀족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이를 관장한다.

[한문] 서위조례 — 조선귀족의 서위(敍位)에 준용.

화족령 중 개정: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종칙료 심의회의 심의로 개정. 궁내성 관제 개정: 조선귀족을 궁내대신의 관할에 더하고, 작위료를 종칙료로 개정하며, 총재(친임 또는 칙임)와 주사를 두고, 또 심의회를 설치한다. 심의관은 추밀고문관 3 인, 궁내 칙임관 4 인, 유작자 5 인(각 작위 각 1 인)으로 한다.

[한문]

칙령: 한국의 국호를 고쳐, 이제부터 '조선'이라 칭한다.

[한문] 조선총독부 설치(칙령).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둔다.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두어,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 정무를 통괄하게 한다.

[한문] 칙합.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존치하고, 조선총독의 직무는 통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다.

종래 한국정부에 속하던 관서 중 내각과 표훈원을 제외하고,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보아 당분간 존치한다.

전항의 관서에 재직하는 관리에 관하여는 구 한국정부 재직 중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다만 구 한국 법규에 따른 친임관은 친임관의 대우, 주임관은 주임관의 대우, 판임관은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재직 중 채용을 허가받은 자는 메이지 37 년 칙령 제 195 호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헌법 제 8 조에 따라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한문] 칙령 제 324 호. 일당기사 261-262.

제 1 조 조선에 있어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다. 제 2 조 전조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칙재를 청한다.

제 3 조 임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조선총독은 즉시 제 1 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 명령의 공포 후 곧바로 칙재를 청하며, 만약 칙재를 얻지 못하면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공포한다.

제 4 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함을 요하는 것은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 5 조 제 1 조의 명령, 제 4 조에 따라 조선에 시행한 법률, 및 특별히 조선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칙령에 위배할 수 없다.

[한문] 제 6 조 제 1 조의 명령은 '제령(制令)'이라 칭한다. 조선 대사령(칙령).

이제 조선을 통치함의 시작에 은택을 베풀기 위하여, 아래 조항에 따라 특별히 대사를 시행한다.

(조항 생략)

이 대사령에 의해 석방될 죄수는 국사범·정치범 및 관리의 제 범죄로서 구 한국 형법대전에 의해 처분된 자들로, 현재 옥중에서 신음하는 자 약 800 여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하여는 29 일 통감부 사법장관이 각 전옥에 교부한 대사장을 읽어 들려주고, 같은 날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사에 따른 것이므로, 곧바로 복권되어 다시 관공리가 될 자격을 얻게 된다.

[한문] 재정처분(긴급 칙령). 일당기사 263. 일당기사 4.

헌법 제 70 조에 따른 재정상 필요한 처분 및 헌법 제 8 조에 따른 부대 각 건을 아래와 같이 칙령으로 공포한다.

조선으로부터의 이입세.

한국 예산의 습용. 구 한국에 속하는 세입·세출 예산은 당분간 종전 그대로 이를 습용한다. (회계의 경리 및 한국정부에 속한 재산의 관리는 당분간 전례에 따른다.)

은사 공채 발행. 조선에서의 임시 은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3 천만 엔을 한도로 5 분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국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명식으로 하고, 정부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할 수 없다.)

한국 채무의 자담. 종래 대장성 예금부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자담한 채무는 별도 규정이설 때까지 일반회계 자담에 속하게 한다.

[한문] 칙령 제 331 호.

제 1 조 조선에서 내지·대만·樺太로 물품을 옮겨 들일 때에는 수입세와 동일한 세율의 '이입세'를 과하고, 조선에 입항하는 선박에는 톤세를 과한다.

제 2 조 이입세에 관하여는 관세법·관세정률법·보세창고법 및 세관가치장법을, 톤세에 관하여는 톤세법을 준용한다.

제 3 조 조선에서 이입하는 물품 중,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국내세를 과할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준하여 국내세를 과한다.

제 4 조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관하여 국내세를 면제·환급 또는 교부금을 교부하는 규정은, 이를 조선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준용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수입세를 환급하는 규정은, 본령에 따라 이입세를 과한 물품에 준용한다.

제 5 조 국내주정법(內國酒精法) 중 그 법 시행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 지역으로의 물품 이입을 금지한 규정은,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선에 있어서의 관세 및 수출입세.

[한문] 제령 제 3 호.

제 1 조 외국으로부터 조선에 수입하는 물품 및 조선으로부터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따라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제 2 조 내지·대만·樺太에서 이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래의 수입세와 동일한 세율로 이입세를 부과한다. 조선에서 내지·대만·樺太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분간 제 1 조의 수출세와 동일한 세율로 반출세를 부과한다.

제 3 조 외국 및 내지·대만·樺太를 왕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분간 종래의 세율에 따라 톤세를 부과한다.

제 4 조 수출입 및 반출입 물품과 출입 선박의 취급에 관하여는, 당분간 종래 수출입물품 및 선박에 관한 예에 따른다.

지세.

면감세 조서에 의거하여, 데라우치 통감은 제령을 발하여 아래에 게재하는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납입 또는 환납의 의무를 면제하였다.

- 1. 금년분 지세 중 평안남북 및 함경남북 4 도의 제 2 기, 그 외 각 도의 제 1 기에 납부할 금액의 5 분의 1.
- 2. 본령 시행일까지 미납에 속하는 隆熙 2 년분(1908년) 이전의 토지.
- 3. 본령 시행일까지 미납에 속하는 隆熙 3 년(1909 년) 법률 제 14 호 제 1 조에 거론된 결포금(체납금).
- 4. 隆熙 3년 이전의 대부에 관한 환곡미로서, 본령 시행일까지 환납되지 않은 것.

조선에 시행할 법률.

일당기사 267. 일당기사 26.

아래에 게재하는 법률은 이를 조선에 시행하며, 부대령도 함께 공포되었다.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법령의 효력 존속(제령 제 1 호):

조선총독부 설치 시,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할 제국 법령 및 한국 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한 명령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거류지의 행정사무(칙령 제 2 호):

인천 제물포,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포 및 성진의 각국 거류지와, 인천·부산·원산의 청국 거류지에 관한 행정·경찰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

조선의 구훈장(칙령):

구한국의 훈장 및 기장은 당분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구한국 군인의 향후 처리(칙령):

조선총독부 설치 시의 한국 군인에 대한 취급은 육군에 준하며, 그 관등·계급·임면·분한 및 급여 등에 관하여는 당분간 전 규정에 따른다. 전항 군인 중 현직자는 주차군사령부 또는 주차헌병대사령부에 배속한다.

메이지 43 년(1910) 9 월 1 일, 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천황 폐하로부터 내리신 책문을 받들어 창덕궁에 나아가 황제 폐하에게 봉왕식을 거행하고, 또 덕수궁에 나아가 태황제 폐하에게 봉왕식을 거행하였다. 같은 날 도쿄에서는 유학 중이던 황태자 전하에게 왕세자 책봉식을 거행하였다.

황족을 공족으로 고쳐, 이가공·이환공 등을 그렇게 칭하였다. 당시 각원과 신료 중 칙임일등 이상에게는 각 그 공훈에 의하여 작위가 내렸다.

일당기사 9. 일당기사 7.

후작: 이재완, 이재각, 이해창, 박영효, 윤탁영, 이해승.

백작: 이지용, 민영린, 이완용.

자작: 박제순, 조중응, 고영희, 이용식, 임선준, 이재곤, 민영휘, 민영소, 민병석, 이근명, 김승근, 이기용, 이병무, 윤덕영, 김윤식, 조민희, 민영규, 송병준, 이하영, 이근택, 권중현.

남작: 이용태, 남정철, 최석민, 조동윤, 민상호, 장석, 이완용(원문 중 중복 기재로 보임), 이근상, 한창수, 성기운, 박기양, 이윤용, 김사철, 김사담, 이건하, 이재극, 조희연, 이주영, 김병익, 정락용, 민형식, 정한조, 윤웅렬, 박용대, 김가진, 민종묵, 김종한, 이봉의, 김춘희, 민영기, 이용원, 조경희, 이정로, 이종건, 김학진, 김영철.

이때 유길준, 한규설, 홍순형, 민영달, 조경호, 윤용구, 조정구, 김석진 등 여덟 사람은 간(特旨)을 받지 않았다.

종래 궁내성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귀족의 석차는 이번에 일본 화족과 혼동하여 석차를 정하는 것으로, 동년 11월 2일 결정·재가가 있었다.

병합 후 일의 진행을 방해할 자를 습격하면, 조정구는 작위를 물리치고 병합 조칙과 칙유 등의 문서를 찢어 버리며 스스로 자결하려 하였으나, 가인의 제지로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김석진은 작위를 거절하고 자살을 이루었고, 금산군수 홍범식과 학생 이희철 등은 분사하였다.

9월 3일, 동경 각 관청의 공문 접수는 이날을 기한으로 중지한다는 취지를 각부·원·청에 일체 통지하였다.

익일부터는 긴급 중대한 사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일체 접수하지 않고, 다만 총독부로부터의 내문은 이 한계에 속하지 않았다.

같은 달 10 일, 내각총리대신장과 내각인을 총독부에 송부하고, 내각관료에게 은사금 사령서를 교부한 뒤, 몇 마디의 설명을 하고 물러났다.

그 다음 날부터는 각 관 이하 각 관리가 잔무 처리에 일절 관여치 아니하였고, 내각 기타 각 관청의 각 항 안건은 전적으로 각 해당 차관에서 처리하였다. 이튿날 13 일, 내각 렬임관(列任官) 이상 제원에게 총독부에서 접수한 특별 은사금 사령서를 교부하고, 시세가 부득이함으로 퇴관할 뜻을 후(侯)가 설유하였다.

임시 은사금 1,739 만 8 엔은 이를 공채증권으로 각 도·부·군에 발행하였다. 그 규칙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은사금은 천황 폐하의 성의에서 나온 것으로,

첫째, 반족(班族, 양반) 및 유생 중에 항산 없고 직업 없는 자에게 식산의 길을 줄 것,

둘째, 일반 자제에게 교육을 줄 것,

셋째, 흉년에 즈음하여 이를 구휼할 것.

전에 국사로 인연하여 피해를 본 자들에게는 하사금이 있었다.

김만…, 김옥균, 홍영식, 유중…, 김홍집, 안경수, 정병하, 권진…, 서광범, 우범선, 이주회, 박영교, 조… (원문 인명 다수가 탈락·불분명). 일당기사 273, 274. [주] 인명일부가 훼손되어 전하는 바대로 옮김.

이달 5일, 내각서기관들이 각국·과에서 현용하는 문부·서적을 경복궁 강녕전 동행각으로 옮겨 장차의 인계를 준비하였다. 전에는 내각 서적 약 3 만여 책이 강녕전 서행각에 쌓여 있었는데, 이날에 이르러 양자의 전부를 총독부에 인계하였다.

총독부의 통지에 따르면, 내각의 전후 문서를 각 해당 국과에서 각기 처리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총독부와 내각의 양 문서과에서 서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당시 문서과장이던 저자는 총독부 문서과원 가와다 하루이치와 교섭하여 강녕전에서 회동하고, 수일에 걸쳐 조사하여 처리를 종료하였다.

병합은 자연이며 필연의 운명이라, 강대국이 소국을 합하고 그 국민을 보전하여 문명을 보급하는 것은 국제 경쟁 발생 이래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운명으로, 조선 또한 이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다만 미주의 소공화국과 구라파의 이·삼등 국가가 약소국으로서 아직 존립하는 것은, 하나는 강대국 간의 균형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이 강대국과 종족을 같이하고 문명도 같아 스스로 국내 질서를 보전할 능력이 있으므로, 강대국도 그 내정에 간여하지 않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대강국의 균형 밖에 서서 스스로 질서를 보전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있다면, 결국 합유될 운명에 빠짐을 면치 못하고, 그 합유는 야만적 침략·탄식이 아니라 국제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의 의미에서 행하여진다. 구미의 강국은 모두 이런 의미의 합유 경험이 있으므로, 일본의 조선 합유(한일병합)에도 아무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주] 상호 의존의 비유.

그러나 유독 청국에서는 어느 정도 상실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 일본에 합유될 것은 결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포츠머스 조약 체결 당시 이미 정해져 있었다. 외교·군사의 권한은 일본에 수렴되고, 내정도 형식상 황제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는 일본 주한 관리들이 하였으니, 사실상 독립국이 아니었다. 다만 외형상 '한국'이라는 명칭을 남겨 두었기에, 어떤 이들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망각하고 국가적 가명에 얼마간의 안심을 이어왔는지 모르나.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지구 면에서 제거되었으므로. 청국인이 이를 보고 갑자기 입술 잃고 이가 시린 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국의 장래를 신경질적으로 헤아리면 만주의 장래를 걱정할 만하다. 벌써 만주가 없으면 동삼성이 전혀 위태롭고. 이에 이르면 확하 이북은 청국인의 소유가 아니게 된다. 졸지에 눈뜬 청국인의 상상은 아마 이 지경까지 미칠 것이다. 당국의 수완—전 황족의 처분과 조선 분무(分務)의 수완—에 이르러서는 가하다·불가하다 할 것도 없다. 전 황족의 처리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논난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군왕이 영국에 있는 것을 들어 일본 사회에도 하나의 장식을 더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또한 시기라는 것도 수년 뒤로 하든 앞당기든 논의는 논의일 뿐. 결국 우명이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깨달은 때가 바로 그 때"일 따름이다. 실제 통치에 이르러서는 아직 장래의 문제이나, 상국에도 상당한 성산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다만 최선의 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랄 뿐이다(오쿠마 시게노부 백 발언).

독립 소요에 대한 경고. 다이쇼 8년(1919) 3월 1일(음력).

그때 폭동한 독립 소요는 동포의 의무로서 참고 소매를 접고 있었으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므로, 오해를 풀기 위해 세 차례의 경고문을 남기고, 혹은 면담하여 충정을 다하고, 한편 당국자들과 협상하여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동 소요에 대하여 하세가와 총독은 여러 차례 유고(諭告)를 내렸으나 수습되지 않았으므로, 당국은 부득이 엄중한 방침으로 진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지한 인민의 사상은 자연히 피할 수 없었다. 후는 이를 민연히 여겨 좌시할 수 없는 동포의 심정으로 특별히 경고문을 냈다.

아아, 우리 조선의 동포여. 흔히 말하기를 "사중(死中)에 생을 구한다" 하거늘, 이제 조선 인민이 "생중(生中)에 사를 구함"은 어찌된 일인가. 간단히 한마디로 진술하겠다. 부디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음미하라.

조선독립의 선동은 허설이며 망동이다. 이에 대하여 유사 인사가 이미 천언만어를 갖추었으나, 아직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자가 많기에, 이번에 내가 다시 말하더라도 너희 귀에 들리지 않을까 염려한다. 혹 번언을 요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반문하겠다.

조선독립이라는 것은 어제의 말인가, 훗날의 희망인가. 독립이 어제 이미 이루어졌다면, 만세 삼창 뒤에는 각자 제 자리로 돌아가 업에 힘써야 할 것이요. 훗날의 희망이라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세만 외치고 달이 바뀌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에 무지·몰각한 아동들이 망동하고, 그 뒤 각 지방도 풍문을 듣고 또한 움직여 치안을 방해하니, 당국에서 엄중히 진압한들 다른 방책이 없음을 무엇을 한탄하랴. 이를 몰각자의 무리로 여기고 관대한 수단을 써서 한 번 훈계하고 두 번 훈계를 내렸으나. 오히려 자각하지 못한다. 비유컨대 아들·질이 몰각하게 행할 때. 한 번 밝혀 말해도 따르지 않으면 경계하고, 경계하여도 듣지 않으면 필경 벌을 가함은 그 자식·질을 마음으로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는 그 자식·질을 선도하고 둘은 다른 자식·질이 물들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두 번의 훈계에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관청을 침범하여 난폭하게 행하였으므로, 당국에서 엄중히 조치함은 부득이한 바에서 나온 것이다. 요즘 듣자 하니, 모처에서 많은 인민이 사상하였다고 한다. 그 사상자 중에는 혹 주창자도 없지 아니하였겠으나, 그 다수는 남을 따라 외친 자들이라고 나는 믿는다. 농시가 번한 때이니, 안심하고 수업하면 안락이 저절로 올 것이요. 남을 따라 망동하면 사상이 눈앞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생중에 사를 구함"이 아니겠는가. 자신만 생중에 죽을 뿐 아니라, 망동으로 인하여 그 부근 사람들에게 횡액을 끼쳐 치사·치상케 하는 자가 많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눈으로 보기에도. 귀로 듣기에도 차마 못하겠으니. 저절로 눈물이 떨어짐을 느낀다. 안심·진정이 한때 늦어지면 한때의 해가 있고. 하루 늦어지면 하루의 해가 있다. 아아 동포여, 나의 말을 분명히 듣고 훗날 후회하지 말라. 나의 말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자는 한 번 나와 면회하여 흉금을 터놓기를 바란다.

또 천도교 주임 손병희·정광조와 면회하여, 간절한 설화로 장차 불리한 형세를 일깨웠더니, 그들은 깊이 청복하여 누차 교섭에 심혈을 다하였다. 경고문을 낸 뒤에 시사에 관해 서면으로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사리의 이해득실로써 답변하고, 면회를 원하면 곧 권면하여 성심으로 남김없이 타이랬다. 어떤 이가 헤아려 말하기를 "위험이 이러한데 방심할 수 없으니 어찌 대중에게 접근하겠느냐"하니, 후가 웃으며 "나는 다만 대중의 목숨을 돌아볼 뿐, 나의 한 목숨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는 늘 동포가 처한 바를 차마 못 보아, 다시 관대의 의견을 총독에게 권고하였으나, 총독은 "이는 국법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여, 또 한층 엄중을 더하였다. '조선 소요 진압의 건'을 이유로 군대 증파안이 육군성에서 공표되었으므로, 후는 "반구제기(反求諸己), 우자구다편(又自求多編)"의 뜻에 따라 다시 경고문을 발하였다.

내가 동포 제군에게 경고한 목적은 오로지 인민의 사상을 막기 위함이었다. 경고문을 열람한 제군의 답신 가운데, 혹 시세를 논하는 말이 있고, 혹 시비를 묻지 않고 다만

"매국적의 말이니 이목을 더럽힌다"고 하고, 혹 위협의 말이 있으며, 혹 경고의 뜻이 있다 인정하는 자도 있었다. 바라는 바는, 나의 성심에서 경고한 것을 제군이 받아들여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의 말을 다시 잇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나의 경고에 대하여 어떤 논설이든 서신이 나에게 직접 오면 마음에서 활연히 받아들인다. 소요 당초에는 당국에도 관대한 수단을 쓰는 방책으로, 다만 조선인 측에서 인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조처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진정하였으나, 이미 월여가지난 오늘에는 또한 당국에 간여할 여지가 없다. 근일 각 신문지상에서 제군이 이미알다시피, 각처의 논조가 더욱 엄중하다. 나도 조선인이다. 책임상으로나 인정상으로나그 위험이 눈앞에 박두한 것을 아는 이상 다시 한마디 아니할 수 없다. "매국노의경고"라 하여 자신 안위에 관한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천만인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이치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경고의 효과가 적지않다. 내가 바라는 바는 일반 동포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여 안심·진정하고, 사상의 화를 피하게 하려는 진심일 뿐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하니, 제군이 감동할때까지 위협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경고한다.

두 번째 경고문을 각 방곡에 첩부하였더니, 민중은 그 문의를 불문하고, 다만 후의 성명만 보면 곧바로 찢어 파기하고 모욕이 끝이 없었다. 이에 대하여 후는 더욱 딱히 여겨, 그 각오할 때가 오도록 힘쓰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경고문을 발하였다.

내 경고의 문장을 보지도 않고 찢어 버리는 자가 있다 하니, 또한 유치하다고 하겠다. 아무 것도 논하지 않고 반대측의 언론을 상세히 들으면 자신 목적에 유리한 점이 있음을 궁구하지 않고, 영합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유치하지 않고 무엇이라. 나는 전일 망동한 사람들과 의견이 같지 않음을 알지만, 전후의 경고를 음미해 주기를 바란다.

근시 각처의 소식을 들으니, 소요가 점차 안정된 것은 군대 증파의 위력에 인한 것이라 말하는 자도 있으나, 이는 왕으로서 제군의 진심에 의해 "작비금시(昨非今是)"를 자각한 데 인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충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소요 당시에 나의 두 차례 경고는 다만 "조선독립설은 허망하므로 망동하여 스스로 생명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급히 구제하려 한 설득이었다. 오늘날 제군이 전과(前過)를 추회함에 이르렀으므로, 나는 다시 한 마디를 진술하려 한다. 그것은 독립설이 허망함을 제군으로 하여금 확신·각득케 하고, 우리 조선 민족의 장래의 행복을 계도·안전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번 조선독립설은 유럽대전의 한 여파라 할 수 있다. 최근 외래된 소위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이 제군을 동요케 한 원인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민족자결주의가 조선에 부적당한 논설임은 내가 다시 번언을 늘어놓을 바가 아니다. 원체 조선과 일본이 상고 이래 동종·동족·동근임은 역사에 남아 있다. 한일병합으로 말미암아, 당시 국내로는 구한국의 형세, 국외로는 국제 관계에서 천사만량을 하더라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조선 민족의 유일 활로라고 단정되었다. 또한 지리상으로 보아도, 일한 공동의 이해와 공동 존립을 위해서도 "순치보차(唇齒輔車)"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국이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것은 이성으로도, 정신으로도 단행될 바이다. 그러므로 세계에 어떤 신주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양자가 분리하여 자멸을 초래하는 바와 같은 것은 이리(理)가 허락하지 않는다. 제군은 이 점을 충분히 각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아, 우리 조선은 국제 경쟁이 과격하지 않던 때에도 일국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제군이 아는 바다. 하물며 오늘날과 같이 유럽 대전에 말미암아 전 세계를 개조하려는 시대에 이르러, 우리들은 불과 일만여 천만리의 강토와 모든 정도가 부족한 천여백만의 인구로 독립을 고창하는 것은, 진실로 허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군이 세계 대세를 통해 알지 못하고, 다만 평일의 감정을 쌓아 풍문에 따라 일시에 돌출한 데 지나지 않는다. 나는 제군의 그 정신을 충분히 양해한다. 그러나 제군이여, 다시 냉정한 두뇌로 우리 조선 민족의 장래와 동양 평화의 영원을 위한 대계를 깊이 헤아려 숙고하고, 현금 우리의 경과와 실력 및 세계의 진운(進運)을 거슬리지 말라. 만약 여전히 이해득실을 밝히지 않고 경거망동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는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 평화를 파괴하려는 우리의 적으로 보아야 한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내지 사람들은 항상 "대화(大和) 민족의 마지막 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동양 평화의 영원한 대계를 변치 않는다. 일국의 존망을 걸고 진력 교전한 갑오·갑진 양역의 의미가 전부 동양 평화를 위한 데 있다"고 말한다. 제군은 일체의 감정을 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야 한다.

우리 조선인이 동양 평화를 위해 언제 어떠한 공력이 있었는가. 동양 평화에 대하여 노력한 공적은 제쳐두더라도, 자국의 보유조차 항상 타력에 의존하여 마침내 동양 평화의 교란을 야기할 소지를 만든 역사를 짓지 않았는가. 제군이여, 이는 우리가 기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경고문 중에 "어찌하여 생중에 사를 구하는가"라고 한 것은, 실로 동양 평화의 대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부지리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움직이는 무지·무모한 무리를 경계한 뜻이었다. 내지와 조선 사이에는 천의에 따른 공동 존립과 공동 이해가 있어, 결단코 양자의 분립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한일 합병의 의의와 그 정신이 유효하게 실현될 방면을 향해 힘쓰는 것은, 우리의 장래 행복을 도모하는 최선의 양책임을 깊이 믿어야 한다. 병합 이래 거의 10 년에 가까운 총독 정치의 성적을 보면, 인민이 향유한 복지의 막대함은 외국인도함께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침이 일정불변하였으므로, 제군의 민도가 일진하고 그 시종일관의 방침에 대하여 제국신민으로서 요구할 점이 반드시 많다 하겠다. 곧 제군이 항상 논하는 지방자치 문제, 참정권, 병역, 교육, 집회·언론 등의 여러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군의

생활과 지식 정도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한다면, 점차 동정을 얻는 데 이를 것이다. 내가 믿는 바를 꺼리지 않고 밝히면, 실은 당국에서도 수년래 고구(考究) 중인 안건이 있으며, 다만 그 시행 시기에 빠르고 늦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차마 당국을 위해 변호하려는 자가 아니다. 제군의 요구 이전에, 각 신문과 잡지에서 해마다 내지 사람들이 갖가지 논설을 하여, 속히 조선인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될 제 점을 창도해 온 것은 제군이 잘 알 것이다.

혹자는 "조선인이 이번 소요를 일으켜 곤란을 자초하였으니, 내지인이 이로 말미암아 조선인에 대해 반감(反憾)을 품을 것"이라 하나, 이는 자기의 전과(前過)를 개오(

2. 본 영 시행일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는 隆熙 2 년분(1908 년)까지의 토지세. 3) 隆熙 3 년 법률 제 14 호 제 1 조에 게기된 결포금으로서 본 영 시행일 현재 미납에 속하는 것. 4) 隆熙 3 년 이전의 대부에 관한 환곡미로서 본 영 시행일 현재 미환납에 속하는 것.

조선에 시행할 법률

아래에 게재한 법률은 조선에 시행하며, 부대령도 함께 공포하였다.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법령의 효력 존속(제령 제 1 호): 조선총독부 설치 시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될 제국 법령 및 한국 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한 명령으로서 그 효력을 계속 가진다.

거류지의 행정 사무(칙령 제 2 호): 인천(제물포)·진남포·목포·군산·마산포·성진의 각국 거류지 및 인천·부산·원산의 청국 거류지에 관한 행정·경찰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전례에 따른다.

조선의 구훈장(칙령): 구한국의 훈장 및 기장은 당분간 이를 패용할 수 있다.

구한국 군인의 향후 취급(칙령): 조선총독부 설치 시의 한국 군인의 취급은 육군의 예에 준하며, 그 관등·계급·임면·분한 및 급여 등에 관하여는 당분간 전 규정에 따른다. 전항의 군인 중 현직자는 주차군 사령부 부속 또는 주차 헌병대 사령부 부속으로 한다.

메이지 43 년(1910) 9 월 1 일, 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천황 폐하로부터 받은 책문을 받들고 창덕궁에 나아가 황제 폐하에게 책왕식을 거행하고, 또 덕수궁에 나아가 태황제 폐하에게도 책왕식을 거행하였다. 같은 날 도쿄에서는 유학 중이던 황태자전하에게 왕세자 책봉식을 행하였다.

황족을 '공족'으로 개편하여, 이과 공·이환 공 등을 두고, 당시 각료 및 신료 중 칙임 1 등 이상자에게는 공적에 따라 작위와 은금을 내렸다.

후작: 이재완·이재각·이해창·박영효·윤택영·이해승. 백작: 이지용·민영린·이완용. 자작: 박제순·조중응·고영기·이용식·임선준·이재곤·민영휘·민영소·민병석·이근명·김성근·이기용·이병무·윤덕영·김윤식·조민희·민영규·송병준·이하영·이근택·권중현. 남작: 이용태·남정철·최석민·조동윤·민상호·장석·이완용(李完用)·이근상·한창수·성기운·박기양·이윤용·김사철·김사담·이건하·이재극·조희연·이주영·김병익·정락용·민형식·정한조·윤웅렬·박용대·김가진·민종묵·김종한·이봉의·김춘희·민영기·이용원·조경희·이정로·이종건·김학진·김영철 등. 이때 유길준·한규설·홍순형·민영달·조경호·윤용구·조정구·김석진 등 8 인은 간을 받지 않았다.

궁내성이 조사해 온 조선 귀족의 석차는, 같은 해 11 월 2 일에 일본 화족과 혼합하여 공동 석차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재가되었다.

병합 후 방해를 꾀한 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어, 조정구는 작위를 삭탈당하고 병합 조칙 및 칙유 등의 문서를 찢어 자결을 기도했으나 가족의 제지로 이루지 못하였다. 김석진은 작위를 거절하고 자살하였고, 금산군수 홍범식, 학생 이희철 등은 분사하였다.

9월 3일, (구)내각의 공문 접수는 이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통지가 각 부·부·원·청에 내려졌다. 익일부터는 긴급 중요 서류일지라도 일체 접수하지 않고, 다만 총독부로부터의 내문만 예외로 하였다. 10 일 이내에 내각총리대신장과 내각인을 총독부로 송부하고, 내각 관청에서 은사금 사령서를 교부한 뒤, 몇 마디 설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이후 각 판 이하의 관리는 잔무 처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내각 및 기타 각 관청의 각종 안건은 전적으로 각 차관이 처리하였다. 13 일, 내각의 령임관 이상 제원에게 총독부로부터 접수된 특별 은사금 사령서를 교부하고, 시세의 부득이함으로 퇴관함을 설명하였다. 임시 은사금 17,390,008 원은 공채증권으로 각 도·부·군에 발행되었으며, 대략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환족 및 유생 중에 항산과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업의 길을 열어 줄 것. (2) 일반 자제에게 교육을 줄 것. (3) 흉년에 구휼할 것. 또한 국사로 손해를 입은 자들에게도 은금을 내렸다(명단은 원문 약기).

5 일에는 경복궁 강녕전 서행각에 적치되어 있던 내각 서적 약 3 만여 책 가운데, 현용 문부·서적을 동행각으로 모아 이관 준비를 하고, 8·10 일에 양부를 총독부에 인계하였다. 총독부와 내각의 문서과가 서로 처리하기로 하여, 저자(당시 내각 문서과장)는 총독부 문서과원 가와다 하루이치와 강녕전에서 회동하여 수일에 걸쳐 조사·처리를 마쳤다.

한일병합은 국제 경쟁 이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운명이라, 강대국이 소국을 합하여 그국민을 보전하고 문명을 보급하는 것이라 하였다. 미주·유럽의 소국들만이 강대국의 균형이나 자국 사회의 질서 유지 능력으로 예외적일 뿐이고, 그 밖의 소국은 끝내병합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야만적 침탈이 아니라 국제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논변이다. 청국만은 위기를 느낄 것이나, 이미 보호조약 시기에 실질은 정해졌고, 이제 명칭까지 사라지니 불안이 클 것이라고 하였다. 전 황실의 처리와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으나, 결국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가 그시기였을 뿐이고, 통치의 실제는 장래의 문제로서 최선의 정치를 바라본다고하였다(오쿠마 시게노부 백 발언).

대정 8년(1919) 음력 3월 1일의 '독립 소요'에 대하여, 방관할 수 없다는 동포의 의리에서 오해를 풀고자 경고문을 내고, 면대하여 충정을尽하고, 한편 당국과 협상하여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하세가와 총독이 여러 차례 유고(諭告)를 내렸으나 소요가 멎지 않자, 부득이 엄중책으로 진압하였고, 무지한 인민의 사상은 자연히 면하기 어려웠다. 후(侯)는 이를 민련(불쌍히 여김)하여, 좌시 못 하는 동포의 심정으로 특별 경고문을 냈다. "아! 우리 조선 동포여, '사중구생'이라 하나, 어찌하여 지금은 '생중구사'하려 하는가. 조선 독립 선동은 허설이요 망동이라…(요지)". 자녀를 훈계하듯 두 차례 유고에도 따르지 않고 관서를 침범하여 난폭히 굴면 엄중 처분은 불가피하니, 농시의 번망한 때에는 각자 생업에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생중구사'가 된다는 취지였다.

또 천도교 수장 손병희, 정광조와 만나 장래의 불리함을 간곡히 설득하였고, 이들은 깊이 청복하여 교섭하였다. 이후 서신 질의에는 이해득실로 답변하고, 면회를 청하는 자는 즉시 권면하였다. 총독에게 관용을 또 권하였으나, 총독은 국법상의 중대 사건이라 관대할 수 없다고 하고, 군대 증파안까지 공표되자, 후는 "반구저기"의 뜻으로 재차 경고문을 냈다. "나의 경고 목적은 인명 피해 방지뿐이었다… 신문 논설이 갈수록 엄중하니, 한국인인 나로서도 위험이 임박함을 알고 침묵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내말의 이치를 인정하는 자가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

두 번째 경고문을 방곡에 첩부하였으나, 민중은 이름만 보아도 찢고 모욕하였고, 그럼에도 다시 세 번째 경고문을 내어, 최근의 안정은 증파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동포의 각오와 자각 덕이라 믿는다고 하였다. 그는 유럽전쟁 후의 '민족자결'은 조선에 부적당한 오용이며, 역사·혈통·지리상으로 일본과 동일 종적이라 병합만이 동양 평화와 조선 민족의 활로였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국토와 역량으로 독립을 고창하는 것은 허망하니, 지방자치·참정권·병역·교육·집회·언론 등의 문제를 생계와 정도에 맞는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하여 점차 동정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당국도 수년 전부터 검토 중인 안건이 있고, 일본 내 여론도 조선인에게 줄 사안들을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소요의 근인: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유럽 정리의 일환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제기한 것을, 일부 조선 사민과 미·만의 부랑 청년들이 전 세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대통령에게 연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국내와 밀통하여 격문을 살포, 조선과 만주에서 동시에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천도교는 기독교와 합동을 도모하여, 천도교는 최린, 기독교는 이인환·성태영을 대표로 세우고 여러 차례 협의하여, 대정 8 년 3 월 1 일 오후 2 시에 독립선언을 하기로 정하고, 국장(李太王) 전날의 군중을 이용해 시위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손병희 등은 탑동공원에 모여 선언서를 낭독하고 인쇄물을 서울 시내와 각 지방에 배포, 같은 시각에 만세를 부르게 하였으며, 조선총독부·귀중양원에는 천도교가, 미국 대통령 및 열국 강화위원에게는 기독교가 문서를 제출하고, 양측에서 수명을 연명자로 선정, 후에 불교 단체도 참가시켰다.

같은 시각, 김원벽·강기덕의 선동으로 서울의 중등 학생 3-4 천 명이 종로통에서 탑동공원으로 모여, 일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일부는 우편국 앞에서, 일부는 창덕궁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일부는 조선보병대 영문에 들어가려다 제지되었고, 일부는 총독부로 갔다가 본정 경찰에게 저지되었으며, 수괴로 볼 만한 130 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른바 선언서와 인쇄물은 경찰서에서 일제히 압수되었다.

이후 백의 민중의 상호 호창이 삼천리 강산을 진동시켰고, 국내외에서 운동·선전·교섭·탄원·충돌·습격 등 여러 활동이 최대 노력과 큰 희생으로 전개되어, 유사 이래의 대운동을 가능 한도까지 다하였다. 그러나 의도한 독립은 유유로 돌아갔고, 이미 폭발한 운동은 쉽게 수습되지 못해 들불같이 번져, 4 월 중순까지 전 조선을 일주하였다. 도별로 보면 경기·황해·경북·경남이 가장 격렬하였다. 개략 수치: 단체 시위 618 개소, 참가 인원 50 만여 명, 그 중 사망 553 명·중경상 1,409 명(계 1,962 명). 관헌 측 사망 8 명·부상 158 명(계 166 명). 재류 내지인 사상 29 명. 관공서 파괴 또는 소각 49 개소. 기소 총 9,441 명, 제 1 심 유죄 8,471 명(여자 153 명 포함), 제 3 심 유죄 7.816 명(여자 129 명 포함). 유죄자 종교별: 기독교 2,772 명, 천도교 2,268 명, 유교 346 명, 불교 222 명, 천주교 54 명, 시천교 14 명, 기타 무종교, 손병희 일파로서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에 부쳐진 중요 인물 47 명에는 손병희(60, 청주, 천도교 수장). 권동진(59, 천도교 도사), 오세창(56), 최린(천도교 장로), 이종…(경성), 홍병기(여주), 이종훈, 홍기조, 나용환, 양한묵, 박예환 등과, 신홍식·신석구·박동완(신보 기자)·박숭도(중앙기독교)·이갑성(세브란스 병원 직원)·한용운(불교 중앙학림 교사)·백룡성(금강산 장안사 승) 등, 그리고 최남선(선언서·청원서 기초; 광교회 주)·윤익선(독립신문 발행; 보성전문학교장) 같은 문인들이 포함되었다.

대정 9년(1920) 10월 30일 오전 10시 49분, 경성 복심법원 정동 공실(재판장 쓰카하라)에서 개정,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심 및 당심에서 변호인의 공소기각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피고 손병희·최린·권동진·오세창·이종일·이인환·함태영·한용운에게 각 징역 3년, 피고 최남선·이갑성·김창준·오화영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 임례환·라인협·홍기조·김완규·나용환·이종훈·홍병기·박준승·권병덕·양전백·이명룡·박희도·최성복·신홍식·이필주·박동완·신석구·유여대·강기덕·김원벽에게 각 징역 2년, 피고 이경섭·정춘수·백상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유죄 37명에 대하여 미결구류 36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박인호·노헌용·송진우·····안세환·김지환·김세환 등은 무죄. 압수물 중 영 제 282호의 선언서 7매는 몰수하고, 나머지는 소유자에게 환부하다. 이상은 모두 내란죄로 결정한다.

(『일당기사』 상권 끝. 하권은 시문·잡록으로 이어짐.)